

인 문 사 회 연 구 회

연도연구총서 2001-05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이 우 영(통 일 연 구 원)

손 기 웅(")

임 순 희(")

통 일 연 구 원

본 보고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1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산하 7개 국책연구기관과 2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문제제기	1
II. 사회·문화교류와 평화정착	4
1. 이론적 검토	4
2. 독일사례 연구	8
가. 동서독간 교류·협력의 전반적 발전과정	11
나. 신동방정책하 동서독 사회·문화분야별 교류·협력 정책 및 실태	15
다. 독일사례의 시사점	45
III. 정상회담과 사회문화 교류	52
1. 정상회담 이전 사회문화교류의 흐름	52
가. 현황과 주요 동향	53
나. 사회문화 교류의 한계와 문제점	60
2. 정상회담 이후 사회문화 교류의 특성	63
IV. 최근 남북한 문화의 변화	67
1. 정상회담 이후 남한문화의 변화	67
2. 정상회담 이후 북한문화 변화	71
V. 사회문화 교류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	76
1.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의의와 중요성	76
2. 사회문화 교류의 저해 요소	77

가. 제도적 문제	77
나. 사회·문화체제의 문제	81
3.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	83
가. 기본 방향	83
나. 세부 추진 방안	85
4.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정책 방안	88
가. 관련 법 및 제도 개선	88
나. 분단 및 냉전문화 극복	92
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 재정립	95
VI.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 프로그램	98
1.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단계별 사회문화 교류 방안	98
2. 분야별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프로그램	104
VII. 맺음말	110
[부 록]	112
참 고 문 헌	120

표 차례

<표 1> 전쟁에서 평화로의 스펙트럼	6
<표 2>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관련 법적 개념 규정	10
<표 3>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관련 동서독 기본조약 (1972.12.21) 및 추가의정서	19
<표 4> 동서독 문화협정 (1986.5.6)	20
<표 5> 1998년도 DAAD가 지원한 동서독 학술교류	24
<표 6> 동서독 과학·기술협정 (1987.9.8)	27
<표 7> 서독정부 지원에 의한 서독 청소년·학생의 동독수학여행 현황	30
<표 8> 동독이주민들이 평가한 서독텔레비전 방송의 정보 신뢰도	35
<표 9> 동서독 체육협정 (1974.5.8)	38
<표 10> 동서독 체육교류 현황	40
<표 11> 전략물자 관련 사업의 반출에 관한 관계법령	52
<표 12>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사회문화 교류	105

그림 차례

<그림 1> 남북관계 진전구도	6
------------------------	---

I. 문제제기

정상회담을 개최로 남북한 간에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고양되고 있으나, 반세기에 걸친 분단구조와 여기에서 비롯된 남북한의 냉전문화 및 냉전의식은 여전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분단구조를 타파하고, 화해협력 및 평화공존의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회에 남아 있는 냉전 문화 및 의식을 일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냉전 문화 및 의식을 극복하고 통일문화를 형성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첫째, 사회문화 교류를 통하여 적대적 대결의식을 약화할 수 있으며, 둘째, 체제 및 주민들에 대한 상호이해를 확대할 수 있으며, 셋째, 다른 교류과정에서 각종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으며, 넷째, 통일 추진의 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반세기만의 일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상회담으로 그 동안 지속되어왔던 적대적인 남북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지만, 이 외에도 정상회담이 남북한 체제 자체에 주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분단구조가 단순히 남북관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한 체제 내부에도 분단의 흔적이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¹⁾ 즉, 남북한 각 체제가 분단구조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분단구조의 변혁은 자연스럽게 체제 내부의 변화로 이어진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폐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보안법의 경우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정상회담 그리고 이후 남북한간 교류 확대는 불가피하게 보안법

1) 분단은 일반인의 사회심리적 특성으로부터 체제의 성격, 사회발전 전략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백낙청,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참조. 단순히 분단상황이라는 구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분단의 한 축인 북한이 어떤 정책을 취하는가에 따라 남한체제가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고, 이것은 북한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잠수함 침투와 공안정국의 조성, 팀스피리트 기간의 북한의 동원체제 작동 등이 작은 예가 될 것이며, 1970년대 남한의 유신헌법과 북한의 헌법개정은 보다 큰 예가 될 수 있다.

2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의 사문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보안법의 개폐는 남북한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남한 내의 민주화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²⁾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모기장’을 치듯이 사상통제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남북한간 접촉의 확대는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을 동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 인민들의 의식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사실 엄격하게 따져보면 그 동안 남북한은 적대적 대치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에게 일정한 영향을 끼쳐왔다고 볼 수 있다. 체제경쟁시기에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한편으로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체제의 발전을 일정한 방향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호영향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교류가 확대되고 접촉이 확대될수록 체제 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사회문화체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적대적 대치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에는 때로는 적대적인 문화구조를 구축하면서, 때로는 민족문화의 정통성 확보를 경쟁하면서 남북한 사회문화체제가 상호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극단적으로 사회주의에 배타적 이었던 남한의 사회문화구조와 마찬가지로 수준에서 자본주의를 완강히 거부하였던 북한 사회문화구조의 형성과정에서, 그리고 유신시대 이후 전통문화 보존을 강조하였던 남한이나 유일지배체제 성립 이후 민족문화에 적극적이었던 북한 모두 상대 사회문화를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교류의 확대 특히 6·15선언에서 천명된 문화교류의 확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남북한 문화간 상호영향의 정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류의 확대와 상호영향의 확대가 아니다. 교류나 접촉의 확대가 남북한 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상호영향 확대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흔히 사회문화교류의 확대가 상호이해 증진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평화공존과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2) 그동안 남한내에서 보안법이 단순히 ‘대공사범’에만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노조활동이나 학생운동 등을 제약하는 데 보안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지나치게 단순하고 순진한 사고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독자적으로 구조화된 문화들이 만나서 공존하는 경우보다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생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대되는 문화교류와 문화적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어떤 효과를 양 문화체제에 미칠 것인가를 따져 보는 것이고, 바람직한 문화적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각종 제도적·사회적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요소들을 개혁하는 동시에 사회문화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남북한 체제내 변화와 남북한 관계 변화라는 맥락에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공존을 정착시키기 위한 남북한 사회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차례로 진행될 것이다. 첫째, 사회문화교류와 평화정착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독일을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분석할 것이다. 둘째, 그 동안 이루어진 사회문화교류 흐름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문화체제의 현황을 검토하고, 넷째, 사회문화교류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검토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고, 여섯째, 이를 토대로 실현가능한 사회문화교류의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이다.

II. 사회·문화교류와 평화정착

1. 이론적 검토

최근까지의 남북관계는 남북이 이념,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대결하였던 ‘적대적 대결’(antagonistische Konfrontation)의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서로간에 체제비난과 유형적, 무형적인 적대성이 표출되었던 반면, 교류나 협력은 철저히 단절되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정경분리원칙 아래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북관계는 이념적, 정치·군사적으로는 적대적인 대립의 상태를 지속하면서도 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는 부분적인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는 ‘적대적 협력’(antagonistische Kooperation)의 ‘초입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잠수정의 침투, 서해에서의 무력충돌과 같은 적대적인 대립이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서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같은 남북한 경험이 추진될 뿐만 아니라, 예술단이나 체육·종교단체의 방북이 실현되는 등 사회·문화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다.

만약 이러한 적대적 협력이 서로간의 이해에 의해 확대되고 심화될 경우에는 이념적으로는 체제의 성격을 달리하더라도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도 부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평화공존’의 시대가 남북관계에 도래할 수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이념적으로는 상이하더라도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상호간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물론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도 남북한이 부분적으로 합의하여 당국간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군사적으로도 긴장이 완화되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상황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

나아가 평화공존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남북간에 커다란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염원하는 민족통일의 궁극적 형태인 ‘1민족 1국가 1체제’로 향하는 도정에 놓여 있는 ‘1민족 2국가 2체제’ 형식의 ‘남북연합’이 가시화되어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이념

적으로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기는 하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 영역에서 통합의 수준이 서서히 높아짐으로써 민족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이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남북관계의 진전구도에 더하여 국제적 차원이 고려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평화체제 구축은 전쟁상태를 청산하는 ‘평화의 회복’(소극적 평화)과 평화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평화의 유지’ 두 가지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적극적 평화)이다.³⁾ 따라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평화의 회복에 중점을 두어 남북관계를 ‘적대적 협력’단계에서 ‘평화공존’ 단계로 진입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적극적 평화의 개념으로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포함함은 물론 평화의 유지를 향구화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평화공존’단계에서 ‘남북연합’단계로 진전시키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⁴⁾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대는 <그림 1>과 같이 도식화 할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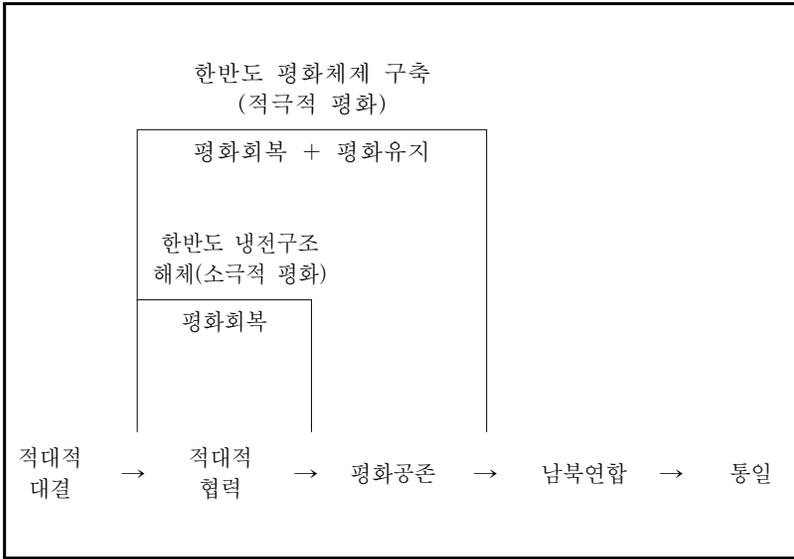
3) ‘평화’의 개념은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무력적 충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소극적 개념’과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무력적 충돌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력적 충돌의 원인이 되는 분쟁요소가 해소되고, 새로운 분쟁의 발생 시 무력적 충돌로 표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상태”의 ‘적극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4) 전쟁에서 평화로의 다양한 단계를 <표 1>과 같이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때 분쟁이란 “엇클어져 다투는 것”으로 정의되며 전쟁, 승부다툼, 논쟁을 포괄한다. 전쟁은 “무력에 의한 국가와 국가간의 투쟁”으로서 가장 강도가 강한 상태의 분쟁이며, 승부다툼은 합리적인 통제를 전제로 하는 분쟁이다. 논쟁은 어떤 쟁점을 두고 상대방을 비판·공격하고 논리적으로 공박하며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분쟁이다. 이렇게 볼 때 최근까지 한반도는 (국지적·제한적) 전쟁, 승부다툼, 논쟁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 분쟁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평화’의 내용은 무력적 충돌 즉 (국지적·제한적) 전쟁이 존재하지 않는 ‘평화의 회복’(restoration of peace)이란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전쟁상태에서 승부다툼상태로, 승부다툼상태에서 논쟁상태로, 논쟁상태에서 분쟁이 해소되고 평화가 유지·관리되는 ‘평화의 회복 + 평화의 유지’(maintenance of peace)란 적극적 평화의 개념이다. 여기에 더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는 민족분단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민족의 통일을 지향하고 기여할 수 있는 체제여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은 ① 한반도 평화의 회복을 위한 체제구성방안, ② 한반도 평화의 유지를 위한 체제구성방안, ③ 민족통일에 기여하는 체제구성방안 등을 포괄한다.

6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그림 1> 남북관계 진전구도



따라서 적대적 협력이 막 움트기 시작한 지금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힘을 기울여야 할 과제는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히고 심화시켜 신뢰감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도 남북한이 협력하는 ‘평화공존’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있어서 냉전구조가 지속되는 한 적대적 협력이 진정한 평화공존으로 진전되기에는 대내·외적 차원에서 한계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

<표 3> 전쟁에서 평화로의 스펙트럼

분쟁(Conflict)			평화 (Peace)
전쟁 (fights)	승부다툼 (games)	논쟁 (debates)	
소극적 평화의 대상			
← 적극적 평화의 대상 →			

5) 손기웅, “베를린선언의 의의와 과제,” 통일연구원, 『베를린선언과 남북관계』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p. 8~12 참조.

결국 남북한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는 다른 한편으로 국내·외적 수준에서, 남북한관계 및 다자적 차원에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위한 작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이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라는 포괄적 구도 내에서 적대적 협력의 심화가 명실상부한 평화공존으로 진전되어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도 단계적인 전략을 통해 남북한 교류·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남북한 교류·협력의 폭과 규모를 더욱 심화, 활성화시켜 나가는 국가적 노력 가운데 특히 남북한간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공동체 형성이라는 장기적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⁶⁾ 정치적 통합이 주로 권력 배분이나 정치체제의 조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사회·문화적 통합은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가느냐 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해 가는 과정이다. 사회·문화적 통합은 “분단상태로부터의 통일”이라는 결과적 측면보다는 “분단상태의 극복과 해소”라는 과정적 측면을 중요시한다.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은 정치·경제 등 다른 분야들에 비해 당사자끼리의 논의가 가능하여 저변으로부터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⁷⁾

따라서 평화공존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그 기반을 닦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
- 6) 현재 남과 북의 문화는 다르다. 그것은 다른 체제 하에서 서로 다른 외국문화의 영향을 받은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남한문화에 비해 북한문화가 혹은 북한문화에 비해 남한문화가 어떤 기준에 비추어 더 이질화되었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통일은 분단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이 아니다. 단순한 재결합이 아니라, 새로운 한민족(韓民族)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질화된 문화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명제는 자칫 동질적 문화라는 절대기준을 정해 놓고 서로 다른 문화의 융합이 가져올 역동성을 부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 단계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이질성의 확인이 우선이다. 그런 후에 융합을 거쳐 새로운 통일된 문화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남북의 통일은 궁극적으로 문화의 통일에서, 즉 통일된 남북이 하나의 국가단위를 이루고 그 바탕 위에서 형성되는 통일문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된다.
- 7) 통일은 설사 제도적 통합(체제 통합)을 이룬다고 해도 이념적으로 같은 반열(이념 통합)에 서있지 않으면 겉모양만의 통일이기 쉬우며, 통일이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의 생활차이 극복(생활 통합)은 물론 사회심리적 간극의 극복(가치 통합)까지 두루 포괄해야 의미를 가지게 된다.

관한 규정』(1998.5.12)의 제3조는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을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 북한 또는 제3국에서” 행하는 일련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독일사례 연구

현 단계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의 의미, 구체적으로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 가지는 민족적·역사적 의미를 깊이 자각하는 바탕위에 이 장에서는 서독이 신동방정책의 구도 아래 추진하였던 대동독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공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남북한간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응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과 한반도는 역사적·사회적·국제적 맥락에서 상이성과 분단상황의 측면에서 유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경험을 한반도에 적용시키려 할 때는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양 지역 상황의 차이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독일의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의 대북정책이 남북한 화해·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 인적 교류를 포함하는 남북한 교류·협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독일사례가 시사하는 점을 찾는 것은 유의미하다. 특히 어떠한 여건하에서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또 이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요구되는지, 교류·협력이 동서독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사례에서 중점적으로 분석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독과 동독의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입장이다. 서독과 동독은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가졌으며, 정책의 추진은 어떠한 것인가, 신동방정책의 구도 아래 서독은 대동독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에 대하여 어떻게 입장을 재정립하였으

며, 정책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이에 대한 동독의 대응입장과 정책은 어떻게 정립되었는가 등을 분석한다.

둘째, 서독의 대동독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관련 협정이다. 서독의 대동독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은 동독과 맺은 관련 협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신동방정책 추진 이후 서독이 동독과 체결한 「우편협정」(1970), 「베를린협정」(1971), 「통행협정」(1972), 「기본조약」(1972), 「체육·보건협정」(1974), 「문화협정」(1986), 「과학·기술협정」(1987), 「방송협정」(1987) 등과 관련하여 각 협정 체결시 서독과 동독의 입장, 협정의 내용, 협정이 동서독 교류·협력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한다.

셋째, 동서독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현황이다. 동서독이 추진했던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현황을 신동방정책 추진 전후의 특징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넷째, 동서독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이다. 신동방정책 아래 동서독이 추진하였던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 전반적인 교류·협력, 동서독간 전반적 관계, 통일대비 등에 미친 공과를 평가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편 이 글에서는 동서독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을 문화·학술, 청소년, 언론·방송, 체육, 종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 글의 의도가 동서독간 교류·협력을 분석, 남북한간에 창조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음을 고려하여 현재 남북한관계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회·문화분야의 개념에 충실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남북한관계의 전반을 규율하고 교류·협력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남북기본합의서」 가운데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16조는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⁸⁾ 한편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약속한 내용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가 채택한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제9조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6

8) 통일원, 「통일백서 1997」, (서울: 통일원, 1997), p. 385.

조에 포함되었던 ‘과학·기술’과 ‘환경’이 그 성격상 경제분야에 포함되므로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 부문으로 이관시켰다(<표 2> 참조). 따라서 이 글에서도 과학·기술과 환경 부문은 제외하기로 한다. 다만 기본합의서 제16조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부문을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임을 고려하고, 동서독간에 중요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현재 남북한관계에서도 중요성이 큰 ‘종교’부문을 여기에 추가하여 함께 다루었다.⁹⁾

이 글에서 사용하는 ‘교류·협력’의 개념은 동서독주민과 남북한주민간의 접촉, 왕래, 협력사업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접촉은 쌍방간에 특정내용의 의사가 교환되는 것을, 왕래는 상대방의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협력사업은 해당분야에서 상대방지역이나 제3국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행하는 일련의 연속성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¹⁰⁾

<표 2>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관련 법적 개념 규정

남북기본합의서 (’91.12.31)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남북 교류협력 부속합의서 (’92.9.17)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남북사회 문화협력 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98.5.12)	제3조: 이 규정에서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 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처리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개정전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은 제3조에서 “이 규정에서 ‘사

- 9) 『사회문화공동위수첩』 (서울: 남북회담사무국, 1995)은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교류추진사례를 열거하면서 주요 분야로 출판·보도, 학술, 예술, 종교, 체육분야를,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서울: 통일원, 1996)도 사회·문화분야로 학술, 문화·예술, 종교, 체육, 언론·출판분야를 열거하면서 종교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 10)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참조.

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의 '협력사업' 중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 출판, 보도 등에 관한 제반 비영리적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당사자간의 합의 및 계약에 따르는 계획, 준비·실시 및 사후처리 등의 계속성을 지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①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분야를 구체적이고 폭넓게 정의하였으며, ② 협력사업을 비영리적 활동에 국한하였다.

가. 동서독간 교류·협력의 전반적 발전과정

분단에서 통일에 이르는 전 기간에 걸친 양독간의 교류·협력에는 동서독의 정치·경제·사회적 동향, 양독관계, 그리고 동·서블록관계가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 양독관계의 변화과정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졌던 교류·협력의 전개과정은 1961년 베를린장벽의 설치 전후,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1982년 서독 기민당(CDU)정권의 출범과 함께 이루어진 동서독관계의 확대를 기준으로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베를린장벽 설치 이전의 동서독간 교류·협력은 냉전의 도래와 분단의 고착화과정을 반영하였다. 서독정부는 서독의 전독일단독대표성을 주장하면서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동서독간 정부차원의 공식접촉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었다. 다만 경제관계 및 인도적 차원의 교류는 서독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최소한 유지될 수 있었다. 특히 경제교류의 중요성에 비추어 양독정부는 1951년 예외적으로 「경제 및 무역에 관한 베를린협정」을 체결했다. 한편 분단의 고착화에도 불구하고 당시 불명확했던 베를린의 법적 지위로 인해 베를린을 통한 양독주민의 왕래가능성은 열려 있었다.

교류·협력에 대한 동독정부의 기본정책은 이중적이었다. 서독주민의 동독방문은 제한적이거나 허용한 반면, 동독주민의 서독방문은 탈출을 우려하여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공무상의 여행을 제외한 서독방문은 거의 불가능했다. 서독방문에 대한 통제는 1953년 6월 17일 노동규정 강화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동독노동자들의 폭동, 이른바 '6월 항쟁'(Juni-Aufstand)을 계기로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¹¹⁾

둘째, 1960년대 동서독간 교류·협력은 베를린장벽의 설치로 인하여 극

도로 위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독정부는 독일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무엇보다 동서독간의 적대적 관계는 결국 동독주민의 고통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독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동독주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차원의 관계발전을 적극 추진했다. 이 맥락에서 서독정부는 동독에 대한 경제지원 용의를 적극 밝혔고, 그 결과 1963년부터 교류·협력이 재개될 수 있었다. 1965년 4월 서독이 동독회사에 최초로 장기유자를 제공한 이래 196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동독은 양독관계의 개선을 경제적 혜택의 수단으로 더욱 활용하기 시작했다.

양독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서독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은 상호간에 제도적인 합의가 뒤따르지 못함으로써 동독방문 서독주민의 신변보장문제, 동독의 서독방문객에 대한 포섭공작 등을 포함하여 적지 않은 문제점을 수반했다. 1960년대 말 동서독관계의 정상화를 전제로 하는, 브란트(Willy Brandt) 수상을 중심으로 사민당(SPD) 정부가 추진한 ‘신동방정책’(Neue Ostpolitik)은 양독간 교류·협력의 문제점과 한계가 근본적으로 양독정부의 공식적 접촉과 제도적 합의의 부재에 기인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고, 따라서 양독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되었다.¹²⁾

셋째, 1970년대 초 미·영·불·소 4대 전승국간의 베를린협정¹³⁾, 양독

11) Ernst Nolte, *Deutschland und der Kalte Krieg* (München/Zürich, 1974) 참조.

12) Werner Weidenfeld·Karl-Rudolf Korte (eds.), *Handwörter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1) 참조.

13) 동서독간 협정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협정내용의 서베를린에 대한 효력 여부에 있었다. 동독은 서베를린이 전승4국의 점령지역이기 때문에 협정의 효력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 반면, 서독은 서베를린만을 협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전승4국은 베를린협정(1971.9.3)에서 “서베를린은 서독의 구성부분은 아니나, 현재의 (서독과 서베를린간) 결합관계는 유지·발전되어야 한다”고 합의함으로써 양독간에 체결되는 협정대상에 서베를린이 포함됨을 확인하였다. 그 외 베를린협정은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동독영토를 통과하는 민간인 및 민간물자의 신속한 왕래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양독간 붙여졌던 서독과 서베를린간 통행문제가 해결되었다. Wolfgang

간의 통행조약, 기본조약 등의 체결은 정치적 관계의 정상화는 물론이고 양독관계 전반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바탕위에 교류·협력도 제도적 기틀을 확립할 수 있었다. 양독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를 표명한 서독 SPD 정부의 신동방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¹⁴⁾ 특히 슈미트(Helmut Schmidt) 총리의 현실주의적 독일정책, 즉 통일을 향한 전제조건이 양 독일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통일논의보다는 통일여건의 조성차원에서 양독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 독일정책이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는 매우 컸다.¹⁵⁾

동독정권은 양독 교류·협력에 응하기는 하였지만 교류·협력의 증가가 동독 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대서독 ‘차단정책’(Abgrenzungspolitik)을 동시에 추진했다. 동독정권의 차단은 정치적·이념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는 문화분야에서의 양독간 교류·협력에의 소극성에서 잘 나타나 1973년에 시작된 문화분야의 협상은 1986년에 비로소 결실을 맺었다.

넷째, 1980년대는 「문화협정」(1986)과 「과학·기술협정」(1987)의 체결로 상징되는 양독관계의 발전으로 교류·협력이 확대되었다.¹⁶⁾ 여기에는 특히 교류·협력을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이해에 대한 동독측의 관심이 반영되었다.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서독의 대동독 경제원조는 1980년대 초 침체상황에 빠졌던 동독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따라서 동독정권은 양독간 교류·협력에 내재한 서독의 정치적 의도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양독관계의 확대를 거부할 수 없었다.¹⁷⁾

Seiffert, *Das Ganze Deutschland* (München/Zürich, 1986), pp. 115~143 참조.

14) Egon Bahr, *Sicherheit für und vor Deutschland* (München, 1991), pp. 11~17 참조.

15) Willy Brandt, *Begegnungen und Einsichten. Die Jahre 1960~1975* (Hamburg, 1976); W. Griffith, *The Ostpolitik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ambridge, 1978); Peter Bender, *Die Neue Ostpolitik und ihre Folgen. Vom Mauerbau bis zur Vereinigung* (München, 1995) 참조.

16)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ed.), *Verträge zur deutschen Einheit* (Bonn, 1991) 참조.

한편 동독정권이 교류·협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배경에는 주민들의 체제불만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도 내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독정권이 개혁을 거부하는 한 그러한 조치만으로 동독주민의 불만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는 없었다. 동독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과 동구 사회주의권에 불어닥친 개혁의 여파는 1989년 여름 동독주민의 대규모 서독탈출과 평화시위를 유발했고, 마침내 동독체제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로 이어졌다.¹⁸⁾

-
- 17)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Innerdeutsche Beziehungen. 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80~1986: Eine Dokumentation* (Bonn, 1986), pp. 5~16 참조.
- 18) 김학성,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동·서독 인적 교류 실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참조.

나. 신동방정책하 동서독 사회·문화분야별 교류·협력 정책 및 실태¹⁹⁾

(1) 문화분야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의 설치와 더불어 그 동안 간헐적으로 지속되던 문화교류는 거의 단절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동독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서독 문화교류 차단정책을 1950년대부터 시작하였는데 이는 서독주민과 분단 이전 공통의 문화와 문화의식을 가졌던 동독주민이 교류를 통해 서독측의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서독문화의 침투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고수하는 데 크게 역작용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동독측의 주요 제한수단은 문화인들의 출·입국 허가였다. 서독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동독 문화교류 제한정책은 취해지지 않았지만, 냉전기간 동안 동독으로부터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문화유입에 대해서 조심스런 자세를 취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서독출판사에 의한 동독작가 작품의 서독출간은 공개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독의 대서독 문화교류 차단정책에는 이데올로기적인 이유가 추가되었다. 동독은 서독이 주장하는 ‘공동의 민족문화’

19) 동서독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전반적 실태에 관하여는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n Beziehungen, *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icht und Dokumentation* (Bonn, 1973);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n Beziehungen, *Zehn Jahre Deutschlandpolitik. 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69~1979: Bericht und Dokumentation* (Bonn, 1980); Ernst Martin, *Zwischenbilanz. Deutschlandpolitik der 80er Jahre* (Stuttgart, 1986); Joachim Nawrocki, *Die Beziehungen zwischen den beiden Staaten in Deutschland. Entwicklungen, Möglichkeiten und Grenzen* (Berlin, 1988); 통일원, 「10년간의 독일정책: 1969~1979년간 동서독관계발전 중심」 (서울: 통일원, 1992); 통일원, 「동서독관계발전에 관한 보고 및 문서」 (서울: 통일원, 1992);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서울: 통일원, 1993);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독일의 분야별 실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등을 주로 참고하였다.

를 거부하고, 서독의 문화를 ‘제국주의적 문화’로 비난하면서 자국의 이른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동독공산당(SED)의 견해에 따르면 동서독 문화는 전혀 공통성이 없으며, 독일 전통문화유산 중 동독측에 의해 승계될 가치가 있는 ‘진정한 문화적, 인간적인 독일 전통’만이 동독의 문화라고 하였다. 동독은 서독과의 문화교류를 외국과의 문화교류로 간주했으며, 이러한 문화교류는 사회주의적 동맹체제의 결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제국주의와의 이념투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 1995년 1월 1일부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로 개칭 - 의 『헬싱키 최종의정서』(1975)에 규정된 서명국들간의 문화교류 이행과 관련하여 동독은 서독과의 문화교류 불이행을 비난받곤 하였으나, 동독은 국가적 차원에서 서독과 문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구실 삼아 변명하였다.

동독 문화정책의 전략적 목표는 동독공산당 제9차 당대회의 결정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① 문화정책의 객관적 원칙인 정치·경제·문화의 단일한 사고방식 형성, ② 문화정책을 통해 동독이라는 발전된 사회주의국가의 형성, ③ 공산주의에로의 점진적 이행을 위한 원칙적인 전제조건 조성, ④ 소련과 기타 사회주의국가와 친선·협력의 지속적 강화, 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격렬한 계급투쟁의 필요성 강화 등이었다.²⁰⁾

반면 서독은 동서독 간에 존재하는 인위적인 국경을 초월하는 ‘하나의 문화민족’(eine Kulturnation) 개념으로부터 양독간의 문화교류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1973년 1월 18일 브란트 수상은 “분단에도 불구하고 언어, 예술, 문화, 일상생활과 정신문화유산의 공통성에 기초한 민족은 영원하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서독정부의 독일정책은 이러한 전제에 기초하였다. 1982년 10월 13일 헬무트 콜(Helmut Kohl) 수상이 “독일인의 민족국가는 분열되었지만 독일민족은 계속 유지되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놓인 것이다.

이러한 견해차이로 동서독은 기본조약 제7조와 이에 관한 추가의정서

20) Klaus-Eberhard Murawski, “Die Kulturbeziehungen zwischen der BRD und DDR”, Erika Lieser-Triebnigg (ed.), *Kultur im geteilten Deutschland* (Berlin, 1984), pp. 45~58 참조.

7항(<표 3> 참조)에서 문화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분야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협상은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기본조약의 후속협상으로 1973년 11월 27일 개시된 문화협상은 13년이 지난 1986년 5월 6일에야 비로소 결실을 보았다. 문화협정(<표 4> 참조)의 체결이 다른 분야 후속협정 체결에 비하여 늦어졌던 이유는 동독이 서독문화의 침투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데 크게 역작용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동서독간에 체결된 협정을 일별해 보면 이러한 동독지도부의 의도를 잘 알 수 있다. 가장 체제에 부담이 적고 유익한 경제교류를 1948년부터 시작한 이래 우편(1970년), 통행(1972), 체육·보건(1974)을 거쳐 1986년에야 문화교류를 국가적 차원에서 합의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서독이 동독과 문화협정을 추진한 것은 그것이 독일정책 추진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양독주민간의 문화적 공통성을 유지·보존시키고, 문화적 측면에서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문화협정을 통해 문화분야 공동협력을 계기로 상대편 체제의 사회·문화생활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서로 다른 군사동맹체제에 소속되어 있고 상이한 정치·경제적인 구조하에서 살고 있더라도 양독주민간에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시키자는 것이다.²¹⁾

서독이 주장하는 문화의 공통성을 부인하며 사회주의문화의 독창성을 내세웠던 동독이 문화협정을 체결했던 주요 동기는 세계적 문화수준을 가진 서독과의 협정체결을 통해 국제적으로 동독의 문화수준을 과시하고 문화수준면에서 서독과 대등한 관계임을 알리려는 데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동독내에서 문화분야 종사자, 이른바 ‘문화창조일꾼’들이 외부세계, 특히 같은 언어권인 서독과의 접촉제한으로 고립감과 정신적인 소외감이 증대되어 이들의 불만이 체제유지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문화협정을 통한 서독과의 문화교류 증대를 이를 해소시켜주는 배출기능(Ventilfunktion)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1) 이장희, “통독정책으로서 동서독간 문화협정”, 『국제법학회논총』, 33권 2호 (1988), pp. 91~98; 최정호, 「분단국의 통일과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인의 통합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1) 참조.

다양성과 자유분방함을 속성으로 하는 문화의 본질상, 중앙집권적인 통제사회하의 동독 문화수준과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서독 문화수준 간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동독은 문화인들의 불만을 제한적인 접촉허용으로 해소하려 하였다. 즉 동독은 문화협정 체결시 문화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국가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접촉에 한정하려 했던 반면에, 서독은 문화활동을 전적으로 개인적인 소관으로 주장하여 누구나 접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었다. 상호 문화행사 개최 회수도 서독은 많을수록 좋다는 입장이었으나, 동독은 일정한 회수의 접촉만을 원하였다.

신동방정책의 산물인 기본조약 체결 때부터 문화협정 체결 이전까지 동서독 간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문화교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극과 오케스트라 방문공연은 양독간 문화교류 중 가장 활발했던 분야였다. 기본조약 체결 이후 1973년부터 점차 늘기 시작한 상호방문 공연은 주로 동독에 의한 서독지역에서의 공연 형태로 이루어졌다. 동독은 서독에서의 문화행사 개최를 정치적인 선전의 일환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의 대부분은 국제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성격을 가졌다. 반면 서독의 동독지역 공연의 성사는 동독의 기관으로부터 출·입국 허가를 획득하는 여부에 달려 있었다. 따라서 교류에 있어서 상호성의 원칙은 무시되었다. 특히 서독의 유명한 극단, 오케스트라, 발레단의 공연은 매우 제한을 당해 베를린 필하모니는 불과 두 번(1978, 1981)밖에 동독을 방문할 수 없었다.

그 외 1975년에 처음으로 동독 조형미술협회의 작품이 함부르크에 전시되었으며, 1977년에 역시 처음으로 동서독 출판사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 독일예술 및 문화유적 안내에 관한 책자가 동독에서 저술·인쇄·판매되는 동시에 서독에서도 판매되었다. 또한 이 해에 처음으로 7명의 동독 미술가가 서독을 방문하였고, 동베를린에서는 서독의 『과학과 기술에 관한 사진전』이 최초의 공식적인 전시회로 개최되었다. 1980년에는 양독 도시 간에 『영화주간』이 개최되었다.²²⁾

22) Manfred Jäger, Kultur und Politik in der DDR (Köln, 1982); Gesamtdeutsches Institut (ed.), *Merkblatt 21: Ausfuhr von*

<표 3>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관련 동서독 기본조약 (1972.12.21) 및 추가의정서

조 항	조 문
기본조약 전 문	<p>조약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그들의 책임에 유념하고, 유럽에서의 긴장완화와 안정보장에 기여하려는 노력에서 현 유럽의 국경내의 모든 국가에 대한 불가침, 영토보전, 그리고 주권존중이 평화를 위한 기본 조건임을 인식하며, 따라서 양독일국가는 그들의 상호기관에서 무력행사나 위협을 억제해야 함을 인정하고,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민족문제를 포함한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양독일국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p>
제7조	<p>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그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이고 인도적 문제를 논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한다. 쌍방은 본 조약의 원칙에 입각해서 상호 이익을 위하여 경제, 학술, 기술, 교통, 사법, 우편, 진진업무, 보건, 문화, 스포츠, 환경보호 등의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세부사항은 추가의정서에 규정한다.</p>
추가 의정서 II. 제7조에 대하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교역은 기존협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개된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경제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지금까지의 규제를 조정하고 교역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적 협정을 체결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경제와 기술분야에서 쌍방의 이익을 위하여 협력을 촉진하고 이에 요구되는 조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한다. 3. 1972년 5월 26일자 조약과 더불어 시작된 교통분야에서의 협력은 확대, 강화된다. 4.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법적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민법과 형법분야의 법률공조관계를 가능한 한 간소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조약상 규제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한다. 5.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만국우편연맹 및 국제전신조약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편 및 전신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다. 쌍방은 동 협정을 만국우편연맹(UPU)과 국제통신연맹(UIT)에 통고한다. 동 협정에는 현존의 합의사항과 쌍방에게 유리한 절차가 포함된다. 6.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보건분야에서 협조할 것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다. 쌍방은 조약에 의거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의약품과 특수병원 및 진료소의 치료방법의 교류에 대해서도 규제할 것에 합의한다. 7.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문화분야에서의 협조를 발전시킬 의사를 표명한다. 이 목적을 위해 쌍방은 정부간의 협정체결에 관한 협상을 시작한다. 8.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이 조약이 서명된 후 체육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협정을 통해 체육관계기관을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한다. 9. 환경보호 분야에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상호간의 손해와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10.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서적, 잡지,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제작물의 상호간 구입을 확대할 목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11.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비상업성 지불 및 청산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쌍방은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관점에서 최단 기간내에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Kunstwerken, Dokumenten und Antiquitäten ("Kulturgut") aus der DDR (Bonn, 1989) 참조.

<표 4> 동서독 문화협정 (1986.5.6)

<p>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1972년 12월 21일에 체결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사이의 관계에 관한 조약의 토대 위에서, -상호간에 문화적·사회적 생활에 관한 인식을 심화시키고 보다 나은 상호이해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그럼으로써 평화정착과 긴장완화에 기여한다는 인식 속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합의된 규정들을 마드리드에서 합의된 사항들과 관련시켜, 적절하게 고려함으로써 실행한다는 결심하여, -문화협력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려는 희망에 따라 이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보았다.</p> <p>제1조 협정당사국들은 그들의 가능한 테두리 내에서 양측의 이해에 기초하여 문화, 예술, 교양, 학문분야에서의 협력이나 이것들과 연관된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협력이 해당기관이나 관청, 단체들 사이에서, 또한(이 협력이 그때 그때마다 자국의 법률서에 상응하고 조약의 실현을 위한 것과 관계되며) 각 조직체들, 연합체들 및 문화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협력은 그때 그때마다 자국의 법률규정과 조화시켜서, 또한 쌍방이나 여러 측면의 법률규정과 조화시켜서, 특히 이 협정에서 거론된 협정당사국들의 의무에 관한 전문(前文)에서 완성된다. 협정당사국들은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협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전제조건들을 승인한다.</p> <p>제2조 협정당사국들은 학교교육, 직업교육, 성인교육 및 고등교육, 전문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분야나, 학문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다음의 내용을 장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험의 교환, 학문상 정보, 회의나 회담에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학자들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한다. 2. 강연, 연구 및 학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학자들을 교환한다. 3. 학생들의 교환, 특히 대학원생들이나 학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젊은 학자들을 교환한다. 4. 전문문헌, 강의자료, 전시자료 및 교수도구 등을 교환한다. <p>제2호 및 제3호에서 제기된 활동들의 실천을 위해서는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다.</p> <p>제3조 협정당사국들은 조형미술, 연극, 영화, 음악, 문학, 언어발달, 박물관 및 기념물보호 등의 분야나 이와 인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다음의 내용들을 장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 예술 등 상이한 영역에 있어서 여러 동기에 따라, 예술가들 및 문화창조자들로 구성된 대표단들이 서로 접촉하고 교류한다. 2. 문화나 예술 분야에 있어 양측의 행사준비 및 다양한 행사개최에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3. 문화단체나 예술단체들 사이에 있어 출판물이나 정보자료들을 교환한다. 4. 갖가지 종류의 행사개최를 통한 예술활동 및 문화활동의 교류 5. 영화상영, 중요한 영화제나 국제적인 영화제에의 참가, 이런 맥락에서의 영화제작에의 참여, 또한 영화잡지분야에서 해당기관들 사이의 협조 등, 이런 활동들을 포함하여 영화분야에 있어서 각 단체들, 기업 및 조직체들 사이의 협력과 교류 6. 박물관분야에서의 협력, 전시회의 교류 및 유물(대여)의 허용 7. 고고학적인 기념물보호를 포함한 기념물보호 단체들 사이의 협력 <p>제4조 협정당사국들은 그들의 가능한 테두리 내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예술가들 및 악단들의 상업적인 초청공연을 장려하고 그들의 가능한 테두리 내에서 영화부문에서의 상업적 협력 및 제작활동을 포함하여 예술과 문화의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상업적 관계를 촉진시킨다.</p>
--

<p>제5조 협정당사국들은 그들의 가능한 테두리 내에서 출판분야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다음의 내용들을 장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업적인 문헌교류의 테두리 내에서 출판물 보급 및 수입 확대 2. 어느 한쪽이나, 쌍방간에 있어 중요한 정보상의 이익 및 학문상의 이익이 되는 출판물의 간행 3. 인가에 대한 양측의 위탁 확대 4. 서적권본시장 개척에의 참여 <p>제6조 협정당사국들은 도서관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킨다.</p> <p>협정당사국은 이점에 있어서 다음 내용들에 대한 가능성을 시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적인 출판물 교류의 확대 2. 다양한 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독일어권 국가들을 위해 문헌목록을 작성하는 규칙을 세우고 또 그것을 개정하는 데 대한 협력 확대 <p>협정당사국들은 다음의 내용들을 통한 협력을 촉진시킨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출교류의 확대 2. 참고서지 및 그밖의 정보자료들의 교환 3. 도서관분야에 있어서 비상업적 전시회의 교류 4. 정보자료교류, 특히 국제관계의 전문회의에 참여 <p>제7조 협정당사국들의 문서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키며 다음 사항들을 장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국의 법률규정에 근거한 공개적인 문서자료의 교류 2. 문서담당 행정기관을 통한 문서복사물의 교류 3. 전문문헌의 교류와 문서자료에 관해 알리는 것에 대한 승인 4. 우선적으로 복사물의 형태로, 기록문서의 준비를 통한 전시 5. 정보교류, 특히 국제관계의 중요한 전문회의에 참여 <p>제8조 협정당사국들의 해당 국가기관들은 중요한 회의나 회담, 토론회, 축제, 기념행사(기념축제행사) 및 학술회의 등에 대해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며 기존의 이해에 기초하여 학자들, 예술창조자들,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종류의 행사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p> <p>제9조 협정당사국들은 라디오나 텔레비전부분에서 협력을 촉진하고 해당기관들에 대해 이러한 목적의 협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p> <p>제10조 협정당사국들은 체육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킨다.</p> <p>제11조 협정당사국들은 그들의 가능한 테두리 내에서 성인이나 학생들을 포함한 청년들의 교류발전을 장려한다.</p> <p>제12조 협정당사국들은 협정의 이행을 위해서 재정적인 규정들을 포함하여 그때 그때마다 2년 동안의 사업계획에 합의를 본다.</p> <p>그러나 협정의 목표에는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문화사업계획속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조치들에 대한 장려가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다.</p> <p>제13조 1971년 9월 3일의 4대국협정에 대응하여, 문화협정은 결정된 처리규정에 합의함으로써 서베를린까지 연장, 적용된다.</p> <p>제14조 이 협정은 5년 동안 유효하다. 협정당사국들중 어느 한 쪽이라도 최소한 협정만기 6개월 전에 문서로 통고하지 않으면 이 협정의 유효성은 그때마다 3년씩 연장된다.</p> <p>제15조 협정을 합의하는 시점에 대해 상호통첩의 교환이 있어야 한다는 내각간의 전제가 있는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p>
--

문화협정의 주요 내용과 각 조항에 대한 쌍방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동서독은 문화협정 체결시 ‘문화’(Kultur)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지 않고 연극, 문학, 음악, 미술 분야를 포함하여 교육, 학문, 출판, 도서관, 역사적인 문서, 대중매체, 체육, 청소년 분야에까지 확대하여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취급하였다. 동독은 문화협정의 의의가 기술된 전문의 삽입을 통해 문화협정이 다른 양독조약과 구별되는 독창성을 강조하려 한 반면, 서독은 기본조약의 후속협정으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CSCE의 제 규정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문화협정이 체결됨을 언급하였다. 문화협력의 주체를 언급한 제1조에서는 서독측의 주장으로 국가기관, 문화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 분야에 종사하는 각 개인들의 활동도 포함시켰다. 협력 분야와 관련하여 대학과 대학인들간의 교류(제2조), 문학·예술·영화·박물관 분야의 교류(제3조), 방문공연과 서적 교류 등 상업적 활동으로서의 문화교류(제4, 5조), 도서관 분야 및 역사적 기록문서 교류(제6, 7조), 학술·문화행사(제8조), 그리고 서독이 강력히 요구하였던 라디오와 텔레비전 분야의 협력 및 해당기관간 협정체결문제 (제9조), 그 외 체육 분야(제10조) 및 학생·청소년 교류(제11조)가 규정되었으며, 제12조에서는 문화협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2년간의 사업계획(Arbeitsplan)을 양독이 작성하기로 하였다. 즉 양측이 각각 50개씩 100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2년 동안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²³⁾

특히 동독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통해 동독이 경제적 실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4조에 협력당사자는 가능한 한 예술가와 연주가들의 상업적 초청공연분야에서도 장려조치를 하고, 또한 가능한 한 문화·예술·영화제작 분야에서도 상업적 관계조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한 것은 눈여겨 볼 만하다.

문화협정에 따라 1986~87년도 첫 동서독 공동 협력사업으로 22개의 프로젝트가 합의되었으나, 초기임을 감안하여 상호 부담이 적은 전시회나 방문공연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1988~89년도의 두번째 사업계획

23)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Das Kulturabkommen* (Bonn, 1990), pp. 35~40 참조.

에는 동서독 양측의 학자와 학술당국의 지대한 관심에 힘입어 학술분야에서 광범위하게 교류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사업계획에 따른 행사개최시 비용처리는 각 지역에서 발생한 비용을 해당지역에서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서독은 동독과의 교류사업 선정시 동독측의 재정부담과 동독정부 혹은 동독주민의 우선적인 관심분야를 고려하였다. 서독은 동독예술인이 서독을 방문하였을 경우 이들에게 일비를 지불하였고, 교류에 따른 재정부담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50%씩 담당하였다.

문화협정을 통해 가장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던 분야는 동서독 대학간의 자매결연이었다. 1986~87년도 첫 사업계획에 서독 자아라브뤼켄대학과 동독의 칼-맑스대학간에, 1988년에는 뮌헨대학과 칼-맑스대학, 아아헨공대와 드레스덴공대, 그리고 슈투트가르트대학과 칼-맑스대학 간에 자매결연이 맺어졌다.²⁴⁾

문화협정을 바탕으로 양독간 학술교류·협력은 확대되었다. 강사 초빙 또는 학술회의 참가 등의 형태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연방차원의 지원없이 관련 민간단체·기구들의 재정부담 아래 수많은 교류가 이루어졌다. 또한 국제행사를 통해 맺어진 양독간 교류활동이 점차적으로 동서독간의 협력사안으로 발전된 경우도 있었다. 동독은 수백여개의 학술분야 국제민간단체에, 그리고 유엔기구 등 국제기구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이들 단체·기구들을 통해서 쌍방간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편 전쟁 전에 추진된, 심지어는 19세기에 최초로 시작되었던 일부 편집사업들이 부활되어 이른바 ‘공동체계획’(Gemeinschaftsvorhaben)이라는 이름하에 통일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그림 독일어사전』(Grimms Deutsches Wörterbuch) 편찬으로, 이것은 분단된 독일이 함께 일구어낸 대표적 학술활동이란 점에서 뿐만 아니라 언어 및 문화보전 작업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타 협력사업의 모범이 되었다.

동독과 학술분야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서독정부는 문화협정의 체결 이전부터 연방내독관계성을 중심으로 재정 및 행정지원을 추진하였다.

24) 동독의 대학 수가 서독에 비해 현저하게 적었기 때문에 자매결연에 있어서 동독의 몇몇 대학이 서독의 많은 대학과 접촉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문화협정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재정지원의 경우 ① 학술접촉을 위한 직접 지원, ② 양측의 합의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 ③ 독일학술교류재단(DAAD)이 관장하는 대학생·학자의 교환과 동독행 연구여행 및 자료수집여행 지원 등으로 분류되었다.²⁵⁾ 연방내독관계성의 자료에 따르면 1988년중 약 400명의 서독학자들이 동독여행시, 약 250명의 동독학자들이 서독여행시에 재정지원을 받았다. 사업계획에 포함된 동서독 대학생 및 소장학자의 교환은 DAAD가 수행하도록 위임되었으며, 이를 위해 DAAD는 외국만을 대상으로 규정된 기존 회칙을 변경하였다. <표 5>는 1988년도 DAAD가 지원한 동서독 학술교환 현황을 보여준다.

<표 5> 1998년도 DAAD가 지원한 동서독 학술교류

구 분	서독(서베를린포함) 출신 장학생	동독(동베를린포함) 출신 장학생
단기체류(최장 30일)	24	106
연구체류(1~6개월)	5	20
총	29	126
교수/박사	1	111
박사과정/연구원	8	15
대학생	20	-
언어학/문화학	6	44
법학/경제학/사회학	13	10
수학/자연과학	1	45
의학/수의학	3	6
농업/임업/식품학	1	1
공학	4	15
미술/음악/체육	1	5

출처: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서울: 통일원, 1993).

학술분야 교류가 이루어지는 동안 동서독 양측이 발견한 사실은 이 분

25) Bundesminister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Information*, Nr.12 (1988.6.24), p. 2.

야에서의 교류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양측이 초창기의 단순한 접촉증대라는 목표를 넘어 상호 상대방의 전문분야 연구성과물에 대한 인정과 전문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서독측 학자들은 너무 국제적인 학술교류에만 익숙해져 있었고, 또 동독의 수준을 비하하는 자세마저 보이기도 했으나, 문화협정에 의한 교류를 통해 차차 서독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가 동독에서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서독의 학자들은 동독이 연구한 독문학과 역사학 분야에서의 성과물에 큰 관심을 가졌다. 동독이 요구한 자연과학 분야 교류와 관련해서는 군사전략적인 차원에서의 기술이전과 관련되지 않는 한 동독과의 학술교류는 정부의 독일정책 추진의 틀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²⁶⁾

한편 세계적인 긴장완화의 분위기와 서독의 신동방정책 추진을 배경으로 동서독은 1972년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도 교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를 근거로 1973년 11월 30일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회담을 개최하였다. 동 분야의 교류·협력은 1986년 5월 6일 문화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가능성이 더욱 커졌고, 마침내 1987년 9월 8일 양독간에 「과학·기술협정」(<표 6> 참조)이 체결되었다.

과학·기술협정은 학술분야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문화협정과 일부 중복이 되면서도 그 협력분야는 달랐다. 우선 과학·기술협정은 학술교류를 자연과학 및 기술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나, 문화협정은 인문·사회과학에 중점을 두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협정의 협력 대상기관은 대형 연구기관이나, 문화협정의 협력 대상기관은 대학교가 중심이었다.²⁷⁾ 또한 문화협정의 교류·협력사업은 일정한 학술분야에서 학술적인 성공을 목표로 하는

26) Manfred Ackermann, "Die Kulturbeziehungen seit Abschluß des Kulturabkommens", Maria Händcke-Hoppe, *40 Jahre innerdeutsche Beziehungen* (Berlin, 1989), pp. 141~152; Oskar Anweiler, "Innerdeutsche Beziehungen im Bereich von Bildung und Erziehung", *Vergleich von Bildung und Erziehung BRD/DDR(1990)*, pp. 671~675 참조.

27) Press-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Bulletin*, Nr.83/5(Bonn, 1987.9.10) 참조.

연구·기술정책적 측면보다는 학술분야에서 동서독 주민간의 접촉을 증대시키는 문화정책적·독일정책적인 측면에서 추진되었다. 한편 서독의 경우 과학·기술협정에 의한 교류·협력사업은 연방연구기술성이, 문화협정에 의한 교류·협력사업은 연방내독관계성이 각각 주관하였다.²⁸⁾

동독은 기본조약을 통해 양독관계를 정상적이고 선린적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독을 서독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독립국가로 보았으며, 이에 상응하는 독자적인 과학·기술체계의 확립을 원했다. 이러한 동독이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에 합의한 이유는 서독으로부터 과학·기술상의 기술 및 노하우(know-how)를 도입하여 동독경제를 건설하고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고수하기 위함이었다.

서독의 경우, 특히 기업들은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응용기술 부문에서 동독 콤비나트와의 협력강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즉 동독이 동구권과의 산업기술협력 분야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독간 과학·기술협력의 제도화를 환영하였다. 특수시설 생산업자들은 과학·기술협정 체결 이후 양독이 협력차원에서 환경보호, 원자로안전, 재생에너지, 오물제거, 리사이클링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경우 자신들의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았다. 서독기업들은 동독과의 협력관계가 장기적으로 동독의 경제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로써 서방시장에서의 동독제품 판매기회가 개선될 것이고, 이는 다시 동독과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서독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서독 경제계는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서독기업에 대한 동독지도부의 신뢰감을 강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밀접한 협력관계가 서방에 종속될 우려에서 비롯된 동독의 불신과 소극성을 해소시켜줄 수 있다고 보았다.²⁹⁾

28) Institut für Gesellschaft und Wissenschaft(IGW), *IGW-Report*, Heft 11(1987), pp. 3~4, 6~13 참조.

29) Gernot Gutman·Siegfried Mampel (eds.), *Wissenschaft und Forschung im geteilten Deutschland* (Berlin, 1988) 참조.

<표 6> 동서독 과학·기술협정 (1987.9.8)

<p>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 1972. 12. 21 동서독 기본조약을 근거로, - 1975. 8. 1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선언을 상기하면서, - 양독간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이 상호 이익이며, 인류복지를 개발·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소망에서, - 또한 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국제적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 협정을 체결함에 합의하였다.</p> <p>제1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고 그에 부응하는 계획과 대책을 협의하고 그 수행을 지원한다. 제2조 ①협력은 자연과학과 공학 및 정신과학과 사회과학 전 분야를 포함하며 전자의 경우 특히 자연과학과 공학에 관련된 제문제를 포함한다. ②양국 정부는 학술적, 기술적 연구 및 개발의 결과에 대한 정보와 출판물을 교환할 것과 그와 같은 목적하에 자료보관센터간의 협력을 규정할 것에 합의한다. ③양국 정부는 과학·기술협력의 수행상 서독당사자와 동독당사자가 상업적 소유권 보호 및 그 권한 집행을 위한 필요 규정이 국가간 입법의 범위내에서 조화있게 제정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이때 당사자들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작성한 권고사항을 근거로 한다.</p> <p>제3조 ①개별분야 또는 개별계획에 관한 협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로부터 당사자로 지명된 당해 기구간 개별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양국 정부는 서로 개별적 합의 발효에 관한 동의여부를 통보하며, 그 개별적 합의사항 수행을 지원한다. 제4조 ①이 협정의 수행을 위해 위원회가 구성되며 그 위원은 각국 정부가 임명한다. ②위원회는 특히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가. 협력분야 및 협력주체 선정 나. 협력당사자 임명 다. 제3조에 의거한 개별합의의 수행을 지원하고 그 내용 구성에 대한 총체적 조언 및 과학·기술협력상의 상업적 권리보호 조언 라. 학자교환을 포함한 협력의 조직상 방법과 재정적 세부사항을 조화있게 설명 마. 진행중인 협력업무의 수행을 지원하고 조정 바. 협력의 현황과 진행사항에 관하여 보고 ③위원회는 개별문제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전문감정인단을 동원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어느 일방 정부의 요구하에 최소 1년 1회, 각 사절단장이 합의한 장소에서 회동한다. ⑤위원회는 운영세칙을 작성한다.</p> <p>제5조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가. 정보교환 나. 심포지움, 회의, 전시회와 같은 학술행사의 조직과 그 수행 다. 자료수집, 연수, 교수, 연구목적의 학자 및 전문감정인의 교환 라. 연구계획의 합의 및 그 수행 마. 과학 기자재를 비롯한 연구자료의 상호 비치</p> <p>제6조 ①협력국의 실정법규와 기타 규정의 일치하에 수행된다. ②전 제1항에 열거한 전제조건의 범위내에서 양국정부는 기구, 연구소, 기업체, 공장, 학자간의 접촉을 고무하고 그 발전을 지원한다. ③합의된 분야의 협력 수행을 위해 각국 정부는 실정법규와 기타 규정과의 일치하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전제조건을 조성한다.</p> <p>제7조 1971년 9월 3일의 4대국협정에 준하여 이 협정은 확정된 방법과 함께 서베를린지역에 확대, 적용된다. 제8조 ①이 협정은 조인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0년간이며, 그 이후 협정 유효기간 종료 6개월전에 서면 해약이 없는 한 1년씩 연장된다. ②이 협정의 효력상실과 그때까지 체결된 개별합의는 무관하다. 이와 같은 개별합의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 협정의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p>
--

(2) 청소년 교류

동서독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그 사회적 역할은 매우 달랐다. 동독의 청소년단체는 철저한 국가통제하에 놓인 공산당 후보자당원의 교육장이었다. 동독에서 사회주의적 인간의 형성을 위한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은 탁아소 → 소년개척자(Junge Pionier, 초등학교 중심) → 독일청소년자유연맹(Freie Deutsche Jugend: FDJ, 중·고등학교) → 체육·기술협회(Gesellschaft für Sport und Technik, 18~21세) → 군대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 단체에의 가입은 명목상 자발성을 전제로 했으나, 이런 단체에서 열성적인 활동을 한 자들만이 공산당원으로 발탁될 수 있었고, 또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보장되었으므로 반강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서독에는 각기 다른 정치적인 이념, 세계관에 따라 전문이익집단의 산하에 40개 이상의 청소년단체가 존재했는데 가입은 전적으로 자유의사에 맡겨졌다. 이들 청소년단체의 활동은 국가에 의해 재정적으로 지원되었으나, 국가가 정한 목표를 수행하는 기구는 아니었다.³⁰⁾

동서독의 청소년 대책은 독일문제와 관련된 각각 다른 정치적인 목표설정 때문에 상이하였다. 서독은 상반된 체제하의 분단된 독일에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상호 소외현상이 일어나 민족적인 동질성을 상실해 갈 뿐만 아니라, 장래의 독일통일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긴장완화, 상호대화 등 양독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각 분야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짚어질 청소년들의 접촉이 향후 독일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양독 청소년들간에 사적 교류, 여행, 정치적 논쟁을 벌일 수 있는 단체들간의 공식적 모임 등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고, 이로부터 개인적 친분 관계가 맺어지도록 노력하였다. 양독 청소년들이 서로를 보다 잘 알수록 그리고 서로간에 보다 많은 대화가 오고 갈수록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 적대감 등이 효과적으로 제거 내지 해소될 수 있으며, 이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³¹⁾

30) Martin Hülsmann, *Drüben bei uns. Eine Begegnung mit der DDR* (Würzburg, 1986) 참조.

1972년 동서독 『통행협정』은 양독간 여행교류의 기본원칙을 설정하였으나 관광여행과 개인여행만을 취급하였을 뿐 청소년 교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청소년 교류에 관한 동서독간의 구체적 협정은 서독청소년연맹(Deutscher Bundesjugendring: DBJR)과 동독 FDJ간에 1980년 9월 20일 체결된 「청소년 여행에 관한 합의」, 서독 청소년여행 일선기관인 Jugendherbergwerk와 동독 청소년 여행전담사 Jugendtourist간의 1987년 9월 1일자 「단체여행에 관한 협약」, 1986년 문화협정 등이었다.

서독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이러한 동독과의 합의를 토대로 대동독 견학여행을 장려하였다. 서독의 교사들과 학생들의 관심은 계속 늘어나 서독 청소년의 동독여행 75%가 수학여행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25%는 청소년단체, 협회 및 기타 사회단체들에 의해 이용되었다. 서독정부는 청소년여행을 교통비 및 체류비 지원이란 형식으로 지원하였다.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참가자들이 여행에 앞서 국경에서 동독의 정치·사회적인 상황에 대해 충분히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교육용 교재는 전독 문제연구소나 정치교육센터에서 제공), 여행자의 수는 동독으로의 장기여행의 경우 최소한 7명, 그 외의 경우는 최소 20명~최대 60명이어야 하고, 여행그룹에 미성년자가 끼어 있을 경우 교사나 청소년지도자 등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³²⁾ <표 7>은 연도별로 서독정부 지원에 의한 서독 청소년·학생들의 동독 수학여행 현황을 보여준다.

31) Ulrich Bunjes, “Normalität stellt sich nur langsam ein. Zur Entwicklung des deutsch-deutschen Jugendaustausches”, *Außerschulische Bildung*(1989), pp. 27~230; Gerhard Kiersch, *Die jungen Deutschen. Erben von Goethe und Auschwitz* (Opladen, 1986) 참조.

32) Gisela Helwig, “Jugendaustausch zwischen beiden deutschen Staaten,” *Deutschland-Archiv*, 8(1984), pp. 804~806; Paul-Ludwig Weinacht (ed.), *Mit offenen Augen in die DDR. Anregungen für Klassenfahrten* (München, 1986) 참조.

<표 7> 서독정부 지원에 의한 서독 청소년·학생의 동독수학여행 현황

년 도	수학여행 그룹별						총횟수 (총인원: 명)
	대학생 그룹	%	청소년 그룹	%	학생 그룹	%	
1984	45	5.2	127	14.5	705	80.3	877 (22,000)
1985	34	3.5	160	16.7	709	73.8	961 (-)
1986	45	5.2	136	15.7	665	77.0	864 (22,551)
1987	64	5.7	171	15.2	889	79.1	1,124 (26,326)
1988	71	6.5	186	17.1	833	76.4	1,090 (26,812)
1989	62	5.8	189	17.8	811	76.4	1,062 (-)

출처: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서독 청소년단체 중 동독 청소년단체와 가장 활발한 접촉을 벌였던 단체는 신교 청소년단체였다. 신교 청소년단체간 교류는 동독의 신교단체가 국가의 통제하에 있어 많은 접촉을 꺼렸기 때문에 거의 서독에서 동독으로 방문하는 일방통행식 접촉이었다. 반면 구교 청소년단체는 동독지역에서 적당한 대화의 상대를 갖지 못해 접촉이 거의 없었다. 서독의 연방내 독관계성은 신교단체의 접촉에 대해 조건없이 재정지원을 하였다. 접촉의 방법과 대상선정에 대해서는 신교측의 재량에 맡겼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신교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했다.³³⁾

동독정부가 신교 청소년단체의 서독과의 접촉을 허용한 이유는 이러한 접촉을 통해 서독으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고, 교회를 통해서만 비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종교활동의 테두리

33) Deutscher Bundesjugendring (ed.), "Die unbekanntenen Nachbarn - Deutsch-deutscher Jugendaustausch", *Jugendpolitik*, 7(1986), pp. 3~7, 19~20 참조.

내에서 동독사회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동독청소년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탈출구로 이용함과 동시에, 동독청소년들이 서독의 체제와 접함으로써 그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이 부각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도 내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신교 청소년단체간의 교류는 접촉이 공개되면 될수록 동독측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차후의 접촉 회수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거의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가 없다. 한편 서독을 방문한 동독청소년의 대부분은 FDJ의 간부들이고 20~30세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기혼자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꼭 동독에 남아 있어야 여행이 허용되었다.

동독은 서독으로부터의 재정적·경제적인 반대급부를 의식하여 서독측의 청소년 교류 제의에 마지못해 응하면서도 동독청소년의 사상적인 오염을 우려하여 여러 형태의 차단조치를 취했다. 동독정부는 동독청소년의 서독 여행을 체제맹종을 조건으로 한 일종의 포상으로 체제순응을 위한 교육적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FDJ는 국가의 통제하에 양독간 청소년들의 만남을 감시하였다. 동독은 2개 민족, 2개 국가론에 의거하여 철저한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동독청소년을 다른 체제와 접촉케 함으로써 동서독 분리화를 가속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서독청소년의 동독여행은 동독에 존재하는 독재체제와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직접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생생한 정치교육이 되었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양독관계를 심화시키고 민족적 공동의식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도록 추진했던 의도와는 달리 청소년 교류는 상호 이질감만이 확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동독도 정치적인 목적, 즉 청소년단체 핵심간부에게 서독에서의 현실체험을 통해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요소를 체감시키려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동독이라는 국가의 정통성이 내부적으로 붕괴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언론·방송분야

동독언론인은 1950년대에 이미 서독에서 다른 외국언론인과 같은 조건

아래에서 활동할 수 있었으나, 서독언론인은 1972년까지 동독에 상주하며 활동할 수 없었다. 서베를린에 상주하는 서독언론인은 1972년까지 동베를린에서 행해지는 외신기자회견에 가끔 초청되기도 하였으나, 취재허용대상과 취재가능언론인의 선발기준은 항상 모호하여 동독정부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에야 서독언론인이 상주취재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상주특파원 외에도 문화·체육행사, 전당대회, 박람회 등을 취재하기 위한 단기취재여행 언론인의 동독방문도 가능해졌다.³⁴⁾ 1987년 5월 6일 동서독은 상대방 프로그램 매입, 공동제작, 상대방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 편집·사용, 정보제공 등과 같은 방송협력을 규정한 『방송협정』에 서명하였다.

서독은 언론·방송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첫째, 동독·동독정부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보도함으로써 동독정부가 언론·방송분야에서 스스로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둘째, 동독정부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지만 동독이란 확실적인 사회 내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서독의 언론인과 접촉을 시도하려는 이익집단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들과의 교류를 추진하였다. 셋째, 서독의 언론인에게 정부와는 다른 독자적인 시각으로 동독 체제를 소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³⁵⁾

그러나 언론·방송교류에 관한 양독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그 이유는 동서독이 언론의 자유와 대중매체의 역할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가졌기 때문이다. 서독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언론기관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여론의 전파를 정치적 의사형성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파악한 데 반해, 동독은 언론의 자유 또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목표에 봉사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언론·방송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 때문에 서독 언

34) Jean Paul Picaper, "Westliche Korrespondenten in der DDR", *Deutschland-Archiv*, 12(1974), pp. 1285~1288; Jürgen Döschner, "Zehn Jahre bundesdeutsche Korrespondenten in der DDR. Eine Zwischenbilanz," *Deutschland-Archiv*, 8(1984), pp. 859~861.

35) Elisabeth Noelle-Neumann·Jürgen Wilke (eds.), *Publizistik und Massenkommunikation* (Frankfurt/M., 1989), pp. 84~98 참조.

론인은 취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상주특파원은 군사시설과 민간인 통제구역을 제외하고는 동독의 전역을 여행할 수 있었지만 국가기관, 인민공유기업과 콤비나트, 협동농장을 취재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았다. 단기 취재여행자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여행이 허용되지 않았다.

동독상주 서독특파원의 보도에 의거한 서독언론·방송을 통해 동독주민들이 자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응하여 동독지도부는 특정 사안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 그 영향이 체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내정간섭이란 이유로 많은 제재를 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언론·방송이 동독문제에 대해 관심있게, 상세하게 보도하였기 때문에 서독텔레비전을 거의 시청하였던 동독주민에게 동독상주 서독특파원의 보도는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한편 동독에서는 모든 정보를 국가와 당이 독점하고 있었으므로 서독과 관련해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보도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³⁶⁾

양독간 국경은 인적·물적 교류를 물리적으로 차단하였지만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향하는 전파매체는 국경을 초월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양독간에 구조적으로 형성된 장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파매체를 통해 동서독주민간 문화, 언어, 역사적인 공통성이 보존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동독주민은 동독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보다 서독의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시청했다. 동독주민은 SECAM 방식인 텔레비전수상기에 PAL 방식의 서독프로를 시청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였고, 1970년대 초부터는 대형 공동안테나를 설치할 경우 케이블을 통해 위성수신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1985년에는 전 가정의 40%가, 1990년에는 전 가정의 2/3가 이러한 대형 공동안테나에 연결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³⁷⁾

36) Erich Böhme, *Deutsch-deutsche Pressefreiheit* (Hamburg, 1978), pp. 14~20; Anthony John Goss, "Die Darstellung des deutsch-deutschen Verhältnisses in der Fernsehberichterstattung beider deutscher Staaten", *Deutschland-Archiv*, 4(1980), pp. 403~405.

37) Christoph Wild, "Fernseh- und Hörfunknutzung in der DDR im Frühjahr 1990", *Media Perspektiven*, 9 (1990), pp. 558~572 참조.

동독주민의 서독방송 시청은 항상 동독 내에서 정치적 논쟁거리였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을 막아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서독측으로 향하는 안테나를 철거하는 운동을 벌이거나, 대형 공동안테나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설정하기도 했다. 또한 형법규정을 임의로 적용하여 이를 단속하기도 하였다. 즉 방송의 시청 그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았으나 시청한 정보를 퍼뜨리거나 공동으로 모여서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였다. 이 때 적용된 주요 동독 형법조항은 ‘전쟁선전·선동’(89조), ‘반국가적 선동’(106조), ‘공공활동 비방’(220조), ‘공무집행 방해’(214조) 등이었다. 아울러 방해전파를 발사하여 기술적으로 서독방송의 시청을 방해하려고도 하였다.

동독주민이 서독방송, 특히 텔레비전을 의식적으로 선호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청하였다는 사실은 동독지도부가 국내적·국제적 여건상 마땅히 방지할 만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관련된다. 아울러 정보와 전파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정한 국제법적 제 규정과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국가성을 인정받으려는 동독의 입장이 동서독간 정보·전파의 차단을 어렵게 만들었다. 동독이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정한 국제협약³⁸⁾에 서명을 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국제법적인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해온 동독이 노골적인 전파방해라든가, 동독주민의 수신 방해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³⁹⁾

이러한 여건 속에서 동독주민의 지속적인 서독텔레비전의 시청은 양독 관계에서 정치적인 의사형성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분단극복과 양독주민간의 공통적인 의사형성의 통로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영향력은 동독주민이 서독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정치적인 사건을 특집으로 다루는 보도특집을 주로 선호했다는 점에서 입증된다.⁴⁰⁾ 아울러 서독텔

38) 『UN 인권선언』(1948.12.10), 『인권과 기본권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1950.11.4),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1966.12.16), 『CSCE 헬싱키 최종의정서』(1975.8.1), 『UNESCO 미디어선언』(1978.11.28)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39) Ilse Spittmann, “Die neue journalistenverordnung - Honecker betreut Vertragstreue”, *Deutschland-Archiv*, 3(1972), pp. 228~230.

레비전의 현란한 상업광고는 동독주민의 물질적인 욕구를 자극하여 풍요한 서독사회를 동경하게 만들었다.

한편 서독 라디오방송의 경우 동독의 전 지역에 걸쳐 독일방송(DLF), 바이에른방송(BR), 헤센방송(HR), 북독일방송(NDR), 자유베를린방송(SFB)을 비롯하여 미국측에 편성권이 있던 베를린소재 Rias방송 등이 청취가능했다. 전반적으로 서독 라디오방송의 청취율은 매우 높아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이주민(Übersiedler) 250명을 대상으로 한 1985년 서독의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87%가 자기집에서 옆에 누가 있건 말건 서독라디오를 들었으며, 자기집 이외의 지역에서는 74%가 상관없이 서독라디오를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⁴¹⁾ 또한 동 여론조사에서 이주민들은 서독텔레비전 방송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높은 신뢰도를 표시하였다(<표 8> 참조).

<표 8> 동독이주민들이 평가한 서독텔레비전 방송의 정보 신뢰도

평가단위	신뢰도	답변비율
0	서독방송 완전 불신	9
1 ~ 3	서독방송 거의 불신	10
4 ~ 7	서독방송 거의 신뢰	56
8 ~ 10	서독방송 완전 신뢰	25

출처: Kurt R. Hesse, "Nutzung und Images des Westfernsehens bei DDR-Übersiedlern", *Media Perspektive* 4 (1986)

(4) 체육분야

양독간 체육분야 교류·협력의 과제와 목표는 동서독이 추구하는 독일정체에 따라 각각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서독의 기본입장은 "연방내독관계

40) 동독주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했던 서독 텔레비전프로그램은 동서독문제 주요 쟁점에 관한 보도특집인 "Kennzeichen D"(ZDF)와 보도특집인 "Monitor"(ARD)로 나타났는데, 이 프로그램은 서독 공영방송인 제2 텔레비전 "ZDF"와 제1 텔레비전 "ARD"가 대 동독용으로 각각 제작한 것이었다.

41) Kurt R. Hesse, "Nutzung und Images des Westfernsehens bei DDR-Übersiedlern", *Media Perspektive* 4(1986), pp. 265~272 참조.

성은 독일의 분단을 극복하고 양독간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체육교류를 지원한다”는 1978년 8월 3일의 제4차 연방정부 체육보고서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서독정부와 서독체육연맹(Deutscher Sportbund: DSB)은 양독간의 동질감을 강화하기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국민단합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체육분야 교류·협력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반면 민족이라는 개념을 사회주의 계급이론에 입각하여 이해한 동독은 동독 고유의 민족의식을 창출, 이를 확립시키고자 하였고 이러한 기본방침은 양독 체육관계에 대한 동독정부의 과제와 목표설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동독체육은 서방진영의 구축과 서독의 서방에로의 편입 등을 반대하는 캠페인으로서 양독 체육교류의 장을 동독측의 정치적 선동과 선전의 무대로 이용하였다. 즉 양독관계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동독체육은 서독 차단정책의 일환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동독체육의 정치성은 동독체육단체의 조직 및 구조를 살펴보면 명확해 진다. 동독의 체육, 정당, 국가는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동독의 체육문화는 어린이·청소년 체육, 체육특기자 양성, 근로자의 여가 및 휴양활동으로서의 체육, 그리고 훈련·연습·경기 전반을 모두 포괄하여 국가가 펼치는 범국민적 사업으로서 당의 지도하에 운영·감독되었다. 동독공산당 정치국과 당중앙위원회 산하 체육부가 국립체육협회 및 일반 사회체육단체들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⁴²⁾

한편 동독은 특기종목체육(Leistungssport)을 특별분야로 취급하여 동독공산당 산하 특기종목체육 중앙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하였다. 이 위원회는 동독 체조·체육연맹(Deutscher Turn und Sportbund: DTSB)의 직속 상부기관이기도 하였다. 체육 및 체육특기자에 대한 동독정부의 재정 및 사회보장정책 역시 체육과 정치간의 연관성을 잘 보여준다. 지원에 필요한 재정은 국고뿐만 아니라, 체육관련 단체인 동독 자유노조연맹(Freier Deutscher Gewerkschaftsbund)과 FDJ로부터도 염출되었다.⁴³⁾ 한편

42) Willi Knecht, *Wege nach Olympia - Entwicklungen des Sports in Deutschland* (Dortmund, 1980);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DDR Handbuch* (Köln, 1985), pp. 1250~1261 참조.

동독에서 체육의 또 다른 주요 과제는 조기 군사교육으로서의 기능으로 이를 통해 동독은 군사력 강화를 의도하였다.

체육의 정치성을 강조하는 동독이 양독간 체육교류를 통해 노렸던 효과는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동독주민으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특히 서독보다 우위에 있는 체육분야에서 교류하여 동독주민에게는 자의식과 자긍심을 불어 넣어주고, 대외적으로는 동독국가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동독은 양독간 체육교류에서 승리하는 데 큰 집착을 보였다.

체육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았던 동독이 실제로 이를 통해 국제적 명성을 획득할 수 있었으나, 양독간 체육교류를 통해서도 동독이 달성하고자 한 동독 고유의 민족의식 확립계획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서독 체육선수단에 대한 동독주민의 반응에서 잘 나타나는데 많은 동독인들이 동서독간 경기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서독과 사회주의 우방국간의 경기에서는 서독팀을 ‘우리팀’으로 부르며 서독을 응원하는 등 체제와 이념을 초월한 민족적 유대감을 보였기 때문이다.

동서독은 기본조약에서 체육분야에서도 협력관계를 개발·육성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추가의정서 제7조 8항에서는 각 체육단체들 간의 교류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43) 동독공산당이 체육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 것은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가 FDJ위원장이었던 시절에 행하였던 “체육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체육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따름이다”란 발언, 1957년 4월 28일 DTSB의 창립선언문에 “DTSB는 회원들에 대해 사회주의적 사고와 행동교육을 실시하며, 순수 체육정신 및 정치적 중립성 등과 같은 반동주의적-부르조아적 사상을 단호하게 배격한다”고 밝힌 데서 잘 나타난다.

<표 9> 동서독 체육협정 (1974.5.8)

<p>독일체육연맹과 독일체조체육연맹은 다음 사실을 확정한다는 데 합의하였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쌍방은 매년 양 체육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대표자들이 수립하고 독일체육연맹 회장과 독일체조체육연맹 회장이 확인하는 체육행사 개최 계획에 합의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2. 쌍방은 체육관계를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체육단체의 규정과 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서베를린에 관해서는 1971년 9월 3일자 4대국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규정할 것이다. 3. 쌍방은 재정문제 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피초청국은 행사장까지의 여행에 소요되는 왕복여비 및 수하물과 체육기재를 수송하는 데 드는 경비를 부담한다. b) 초청국은 합의된 참가자수에 대하여 체재일 동안의 호텔경비와 식비를 부담하여 1인당 매일 10독일마르크(DM) 혹은 10마르크(M)의 용돈을 지급한다. 수차에 걸친 행사의 경우 초청측은 처음부터 마지막 행사장소까지의 국내 수송비를 부담한다.

1974년 5월 8일 양독은 「체육협정」(<표 9> 참조)에 서명하고 매년 체육교류와 관련된 연간체육계획서를 작성하기로, 상호간의 체육관계를 IOC 및 국제체육기구의 결정에 의거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양독은 1986년 문화협정 제10조에서 체육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동독정부의 동서독 차단정책에 따라 체육교류 역시 많은 어려움이 따랐으나 1974년 체육협정 체결 이후 양독간 체육교류는 행사규모와 참석자수 면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체육교류가 우승에만 역점을 둔 동독의 방침에 의해 특정분야의 정상급 선수들 간에만 이루어져 교류종목은 극히 제한되었다. 또한 청소년들간의 체육교류 역시 DTSB가 FDJ의 관할사항으로 돌리는 바람에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일반주민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지역체육단체간의 교류도 동독이 이를 체제위협적이고 파괴적인 요소로 파악함에 따라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정상급 선수들간의 시합을 제외한 일부 중하급 단체차원에서 교류는 다소 이루어졌다. 동독이 체육교류를 제한한 또 하나의 이유는 국민들의 모범으로 인정되는 우수체육인의 서방탈주에 대한 우려 때문였다. 실제 양독간 체육교류시 동독의 유명선수들이 서독으로 탈주한 사건이 종종 발생하였다. <표 10>은 동서독 간에 이루어진 체육교류 현황

을 보여준다.

체육협정을 통해 양독간 체육분야 협조체계의 토대는 이루었으나, 체육교류를 통해 주민간의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민족화합에 기여하고자 한 서독의 의도가 크게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동독의 차단정책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고 선수간의 만남 또한 극히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제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통해 같은 독일인이라는 데 대해 양측 모두 인간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종종 확인되었다. 민족감정과 관련하여 동독의 우승에 대한 서독주민들의 반응도 이를 보여준다. 1972년 뮌헨올림픽 경기 이후 서독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동독선수들의 메달획득에 대해 서독의 조사대상자 54%가 '기뻐한다'고 대답하였고, 12%가 불쾌감을 그리고 34%가 무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체코, 스위스, 오스트리아, 동독선수 중 어느 편을 응원하겠느냐의 질문에 대해 47%가 동독을 응원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양독간 체육교류에서 유의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서독이 기타 사회주의국가들과의 체육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한 것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양독간 체육교류에 자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실제 서독은 동독보다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보다 활발한 체육교류를 가졌다. 또 하나는 서독의 방송매체가 동서독 체육교류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보도한 것이 동독정부에 대해 체육교류를 강화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표 10〉 동서독 체육교류 현황

년 도	교류계획 및 실시			참가인 원	무산된 경기	
	계획된 경기수	실시된 경기수	실시율		서독측	동독측
1974	40	37	92.5	486	2	1
1975	62	53	85.5	612	2	7
1976	64	61	95.3	623	2	1
1977	71	62	87.3	633	3	6
1978	75	74	98.7	867	0	1
1979	75	68	90.7	736	2	5
1980	77	56	72.7	627	12	9
1981	72	65	90.3	819	3	4
1982	80	78	97.5	919	2	0
1983	80	76	95.0	1081	2	2
1984	75					
	총 계			7,403	30	36

출처: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서울: 통일원, 1993)

(5) 종교분야

역사적으로 동서독의 신교교회는 분단되기 이전에 하나의 교회조직, 즉 독일신교연합회(EKD)로 존재했으며, 공동의 예배의식, 공동의 성서번역 전통을 가지고 있어 형식적인 분리에도 불구하고 동서독간 다른 분야의 조직체 분리와 같은 상호 이질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신학적 측면에서 상이한 국가 및 사회체제 아래에서도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Eins in Christus)였기 때문에 신자나 교회지도자들의 상호 의견교환, 방문, 물질적 지원 등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EKD는 1969년 동독신교연합회가 설립되어 분리되어 나갈 때까지 동독에도 전권위임자를 위임해 놓고 전 독일을 관할하는 신교연합단체였다. EKD는 분단 초기부터 민족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독일통일이 곧 동서독 교회의 소망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서독정부간 의견

차이를 해소하는 데 중개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동독주민의 대부분이 신교도였고, EKD만이 동서독주민으로부터 공히 신뢰를 받았으며, 동서독의 지도층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정이 작용하였다. 이 당시 교회는 공식문서에서 서독이 의식적으로 동독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사용한 용어인 ‘소련점령지역’ 또는 ‘중부독일’이나 국호에 따옴표를 사용하는 대신 동독의 정식국호를 사용했으며, 서독정치권의 전독일단독대표권 주장과는 거리를 두는 등 동서독정치권 양측에 신중함을 기했다.

EKD의 활동은 베를린장벽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동서독의 분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다. EKD는 분단극복의 일환으로 동서독이 참가하는 종교대회(Kirchentag)를 1949년부터 매년 혹은 격년으로 동서독을 번갈아가며 개최했다. 그러나 1961년 베를린장벽이 구축되기 직전 서베를린에서 동서독 합동종교대회가 마지막으로 개최된 후 더 이상 독일 전체의 만남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후 서독지역에서만 종교대회가 열렸다. 동서독 교회간의 접촉과 동서독 목회자 간의 여행은 동독신교연합회가 1969년 EKD로부터 분리된 후에서야 비로소 확대될 수 있었다.

서독에서만 개최된 제한된 종교대회에서 민족통일문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1980년대 초에 들어서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하는 가운데 평화운동집회 형식의 종교대회는 다시 동서독인들이 참석하는 독일인의 대화의 광장이 되었고 1985년 뒤셀도르프(Düsseldorf) 종교대회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 때부터 종교대회는 민족통일의 문제가 아닌 평화문제를 주제로 하여 상당히 국제정치적 성격을 띠고 동서독간의 안보정책적 경직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⁴⁴⁾

한편 동독에서도 종교대회 개최가 끊임없이 시도되었는데 비록 전국적인 신교도 모임은 없었지만 지역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호네커가 집권한 1970년대 이후부터 동독 정부가 교회세력을 이념적으로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시민사회의 잔재

44) Helmut Zander, *Zur Rolle der Kirchen in den Friedensbewegungen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Ein Vergleich für die Jahre 1978~1983* (Bonn, 1984) 참조.

라고 규정하고 교회의 사회체제 내에서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 작용되었다. 신도 수는 1977년 기준으로 신교도가 790만명, 구교도가 120만명으로 신교도가 월등히 많았으며, 1980년대 중반 서독의 추정에 의하면 신도 수는 동독주민의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카톨릭교회간 교류·협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카톨릭은 동독체제에서 교회의 구조가 바뀌기는 했지만 로마교황청의 감독과 보호 아래 기존 서독의 관구에 소속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원래의 공통귀속성을 보존할 수 있었다. 로마교황청은 동서독 분단 이후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교구의 운영과 주교회의 개최문제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였다. 분단 직후 첫 조치는 동독이라는 국가의 탄생에 부응하여 베를린 주교에게 동독지역 주교회의, 즉 『베를린 교구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1976년 4월 10일에는 이를 『베를린 주교회의』로 개칭하고 이 동독지역 주교회의를 서독지역 주교회의와 동급의 회의체로 인정하였다. 동독 카톨릭교회는 서독으로부터의 분리를 위해 바티칸을 상대로 외교적인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어느 정도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바티칸은 국가단위의 관구설정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관구설정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성서가 동일하게 번역되어 읽히는 동일언어 지역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동독 카톨릭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내 정치참여그룹의 정치적인 활동으로 인해 교회 자체의 활동마저도 할 수 없게 되지 않도록 매우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서독 접촉을 하였다. 이들은 현존하는 사회주의질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지키며 동독정부와 타협을 했다. 따라서 서독 카톨릭교회와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접촉과 교류는 동독정부의 의구심을 자극하여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 아래 단기적이고 간헐적이며 개인적인 접촉을 주로 진행하였다. 서독 카톨릭교회 역시 목회자의 동독 자유왕래가 동독당국에 의해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동독보다도 제3세계나 기타 동유럽국가에서 더 많은 활동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⁴⁵⁾

45) Giesela Helwig (ed.), *Kirchen und Gesellschaft in beiden deutschen Staaten* (Köln, 1982);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서독교회의 동독교회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독교회의 동독교회에 대한 연대의식에 기초한 물질적인 지원은 이미 분단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서독의 교회는 자체 채원과 헌금을 통해, 서독정부의 위임을 받아 정부예산으로 동독의 교회, 나아가 동독주민에게 지원을 행하였다. 신·구교단체 공히 추진한 대동독 지원은 동독교회 및 교회기관 유지에 절대적으로 긴요한 것이었다. 동독정부는 목회자의 봉급 지불 및 교회와 부속건물의 유지를 위하여 서독의 지원을 묵인하였다. 동독의 76개 교회부속병원은 서독의 지원 덕분에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보다 훨씬 양호한 의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서독교회의 지원으로 동독의 교회, 부속병원, 양로원 및 기타 기관의 수백만에 달하는 주민들이 분단에 따른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었으며, 물질적인 혜택과 더불어 복음이 전파되어 무신론적인 체제에서 교회가 생존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들이 실생활에 중요한 지원을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동독내 체제 저항세력 양성의 밑거름이 되었다. 동독공산당 정권의 안정에 일시적으로 기여한 듯한 이와 같은 지원이 오히려 동독정권의 안정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한편 서독교회의 동독교회 지원은 기독교적 연대의식을 통해 특이한 방법으로 추진되었다.⁴⁶⁾ 첫째, 현물을 통한 물질적 지원 형태이다. 재화를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동독 교회단체의 회원들에게 자아의 선물소포, 의료 및 기타 생활용품이 우편을 통해, 그리고 교회단체에게는 건축 자재 및 실내장식이, 병원에게는 대량의 현대적 의료기구가 현물로 전달되었다. 신교의 지원은 후견지원 및 자매지원을 맺은 교회 및 단체간에 서독의 교회단체나 EKD 산하 사회구호복지기구인 Diakonie의 중앙공급(Genex)⁴⁷⁾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957~90년간 현물이전 총액은 약 18억 마르크에 달하였다. 그 중 자매지원 형식을 띤 지원이 가장 많은

Beziehungen, *DDR Handbuch*, pp. 715~728 참조.

46) Amin Volze, "Kirchliche Transferleistungen in die DDR", *Deutschland Archiv*, 1(1991), pp. 62~66 참조.

47) Genex 유한회사는 1957년 동독정부에 의해 동독주민을 위한 선물용역회사로 설립되어 원래 동독에서 생산하였으나, 이후 주로 서방측 상품을 공급하면서 외환을 벌어들였다. Diakonie는 Genex의 해외지사를 통해 대동독 교회 지원용 물품공급을 맡주하여 Genex가 물품을 동독으로 반입하도록 하였다.

13억 970만 마르크를 차지하였다. 구교의 지원 역시 신교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매지원이나 재화의 직접공급, Genex 발주로 이루어졌다. 구교의 지원에는 사회구호복지기구인 Caritas가 주로 활동하였다. 1990년까지 구교의 현물지원액은 5~10억 마르크로 추정된다.

둘째, A형 교회사업: 동독 교회지원 목적의 원자재 공급을 통한 재정 이전 형태이다. 동독의 교회나 교회기구는 현물지원만 필요로 하였던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직원의 봉급과 교회사업 수행상 기타 지불에 필요한 돈도 서독 교회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동독의 외환관리법상 서독 마르크의 동독 직접이전은 불가능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57년 서독 신교지도자와 동독 대외무역성 장관 간에 ‘혼합이전,’ 이른바 ‘A형 교회사업’ (Kirchengeschäft A)이 합의되었다. 이 방식에 의하면 동독의 대외무역상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던 대외무역성은 서독으로부터 마르크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신에 물가의 현시세만큼을 동독 마르크로 환산하여 동독의 교회기구 회계장부의 대변에 기입하여, 이 범위 내에서 동독교회가 운영자금을 조달하도록 허용하였다. 재화 공급의 규모와 방법에 관해서는 서독교회의 대표자가 동독의 대외무역성과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동독에서 1966년 대외무역성내 외환확보 전담 회사인 KoKo가 신설된 이후부터는 이 기구와 상담하였다. 서독의 신·구교는 A형 교회사업을 통해 총 28억 마르크에 상당하는 원자재를 동독으로 공급하였으며, 그 중 21억 마르크를 신교가, 7억 마르크를 구교가 담당하였다.

셋째, B형 교회사업: 인도주의 목적(정치범 석방, 이산가족 재합류)을 위한 원자재 이전의 형태이다. 서독은 국가적 차원에서 동독의 정치범 석방과 이산가족의 재합류를 추진하면서 대가로 교회를 통한 물자지원방식, 이른바 ‘Freikauf’⁴⁸⁾를 택하였다. 서독정부는 인신매매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또한 외환을 동독에 직접 지급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교회를 통한 이러한 물자공급방식을 택하였다. 이 사업은 연방내독관계성의 위임을 받아 EKD가 특별사업으로 참여하였는데 실무

48) Ludwig A. Rehlinger, *Freikauf: Die Geschäfte der DDR mit politischen Verfolgten 1961~1989* (Berlin, 1991) 참조.

는 슈투트가르트 소재 Diakonie가 관장하였다. B형 교회사업도 A형 교회사업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나 전적으로 연방내독관계성의 예산을 통해, 철저한 보안하에 수행되었다. 동독측은 공급제품 결정시 1965년부터 소비제품보다는 외환절약 효과가 크고 국민경제 전체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산업용 원자재, 예를 들어 원유, 다이아몬드, 수은, 구리, 은, 주석, 팔라듐 등을 선호하였으며, 비밀협상에서 서독측이 응하지 않으면 정치범 석방을 하지 않겠다는 압력을 가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산업용원자재 중 국제현물거래시장에서 중개인을 통해 즉시 상품화될 수 있는 물자, 예를 들어 원유, 다이아몬드, 수은 등의 비중이 커졌다. 독일연방은행의 추계에 의하면 1963~1990년간 서독정부가 동독정부에 정치범 석방을 위해 지불한 대가는 총 34억 6천만 마르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 독일사례의 시사점

서독 신동방정책의 특징은 통일시각이 현실적임과 동시에 장기적이라는 데, 그리고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교류·협력, 특히 민족적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을 중시하는 데 있다. 신동방정책은 통일을 향한 전제조건이 양 독일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통일논의보다는 통일여건의 조성차원에서 양독관계의 실질적 개선이 중요하다는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출발하여, ‘접근을 통한 변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통일을 추구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 독일간의 교류·협력을 부단히 추진하였다.

신동방정책의 추진 이후 교류·협력, 특히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은 크게 활성화되었다. 1960년대 베를린장벽이 설치되는 등 냉전의 연장선상에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일시 제한되거나 차단될 때가 있었다. 그러나 브란트 수상은 양독간 교류·협력의 문제점과 한계가 근본적으로 양독정부의 공식적 접촉과 제도적 합의의 부재에 기인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양독일의 관계를 ‘규제된 대결’에서 ‘규제된 협력’으로 전환시킬 것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꾸준하고

주도 면밀한 양면 교류정책, 즉 정부 및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동독과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이 법적 제도화는 양독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독은 독일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공감대로 삼아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치적 논쟁은 가급적 줄이면서 민족문화 유산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상호접근을 통한 변화를 일관성 있게 추구하고 단계적인 접근방향인 ‘작은 걸음의 정책’(die Politik der kleinen Schritte)을 펴면서 동독의 반발을 줄여나가는 현실적인 정책노선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양독간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은 문화예술인의 교환방문과 공연이 주종을 이루면서 학술, 체육, 청소년, 언론·방송, 종교 분야 교류·협력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1986년 체결된 문화협정은 정부·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교류·협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문화 공동체의 형성을 내다볼 수 있게 하고 민족이질화라는 우려를 씻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교류·협력은 통일 이후에도 새로운 독일의 위상에 걸맞는 사회·문화적 통합노력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 독일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노력은 기존 교류·협력사업들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 이외에도 「문화기금」을 설치하여 구 동독지역 문화활동에 기여하도록 재정지원을 행하고, 언론기관을 재편하고 박물관과 도서관을 건립하는 한편 프로이센 문화재의 수집·보존을 위한 문화재보호재단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통일을 이뤄낸 궁극적인 추진력이 바로 동독의 주민들로부터 뿜어져 나왔다는 사실이다. 국민이 주체가 되고,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의 물질적 복지를 약속한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동독주민들이 겪었던 40여년 간의 체험을 통해 그들 마음 속에 형성된 근본적인 체제 비판과 거부, 정치·경제·사회복지 등 사회 모든 측면에서 서독의 체제가 훨씬 우월하고 인간적이란 현실에 대한 인식이 동독주민들을 움직여 베를린장벽을 1989년 11월 9일 무너뜨렸다. 동독주민들의 힘은 동독의 일부 지식인들이 주장한 새로운 사회주

의 건설, 그리고 급작스러운 사태발생에 서독 콜 정부가 과도적으로 밝힌 점진적 통일이란 두번째의 장벽마저 허물어 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1990년 3월 18일 선거를 통해 서독과의 신속한 통일을 확인하였다. 독일의 통일은 서독 민주사회를 자신들의 지향체제로 스스로 깨닫고 선택한 동독주민 의지의 산물이다.

이러한 동독주민의 선택과 판단은 바로 이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려는 정책을, 접근을 통한 점진적인 화해와 협력을 부단히 추구했던 서독 신동방정책의 산물이다. 동독과의 부단한 교류·협력을 통해 동독주민들은 그들의 체제에서 과연 동독정권이 주장하는 대로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인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히 보장되고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며 유린하는 그 어떤 사회악도 없는 현실적으로 가장 안정된 사회가 이룩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뼈아픈 자각과 각성이 전제되지 않았더라면 평화통일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교류·협력, 특히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 같은 민족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동포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신동방정책 아래에서 이루어진 동서독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한관계 전반에 걸쳐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한국정부가 국내·외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동독정권의 부정적 혹은 소극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서독이 대동독 교류·협력정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서독정부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긴장완화란 국제정치적 흐름 속에서 동독과 최소한 '적대적 협력' 관계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원칙으로 신동방정책을 정립하고 '접근을 통한 변화'란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러한 독일정책을 국제사회, 특히 독일분단의 관리와 극복에 관해 국제법적 권리를 가졌던 전승4개국에 용인하거나 지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교류·협력의 제도적 틀을 형성했던 동독

과의 기본조약은 물론 문화협정 등 분야별 협정은 서독정부의 이러한 국내·외적인 정치적 노력의 산물이었으며, 동서독간의 교류·협력은 이러한 제도적 틀의 확립에 따라 활성화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독일의 사례는 한국정부가 동서독과 남북한 상황의 차이를 감안하여 사회·문화 교류·협력정책의 세부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특히 동서독간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양독일 간에 합의된 교류·협력에 관한 법적 제도화에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 간에도 향후 협의될 수 있는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관련 협정과 주요 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추가의정서를 지금부터 준비해 놓아야 한다.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교류·협력의 활성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독일사례에서 보듯이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체제유지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성사되기 힘든 문제이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이념적 갈등의 골이 매우 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사회·문화의 정치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는 또 다른 교류·협력 활성화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한 추진방법, 분야선정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독일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추진방법에 있어서 서독은 동독이 교류·협력에 소극적이란 측면을 고려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집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공연, 전시회, 운동경기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 동독에서의 개최빈도와 서독에서의 개최빈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에서만의 개최조차 수용할 수 있다는 탄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교류·협력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경우에도 동독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서독이 좀더 많은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교류·협력의 유지와 지속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일방통행식의 교류·협력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가지되 차별적이나 상호적인 이해관계가 관철될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하였다.

다음으로 분야선정의 경우 서독은 가능한 한 동서독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는 부문, 동독이 상대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좀더 쉽

게 응해오리라고 여겨지는 부문(특히 체육교류·협력), 혹은 교류·협력을 통해 동독이 경제적으로도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부문(특히 공연·전시회 등 문화교류·협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서독은 민간차원에서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적·행정적 지원은 물론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서독은 민족적 동질감을 인식시키기 위해 청소년 교류를 재정적·정책적으로 지원하였다. 청소년 교류가 비록 동독현실에 대한 실망감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 측면이 있었으나, 분단현실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적 계기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동독체제의 선전을 위해 추진했던 동독의 경우에는 선발된 청소년들이 오히려 서독체제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중요한 사실은 동서독 청소년들 간의 만남이 상호 현실 및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무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서독정부의 지원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전문가들을 꾸준히 양성하는 데에서도 이루어졌다. 서독정부는 정부기관, 대학·연구소, 각 정당 및 재단, 민간단체 등에 속한 다양하고 폭넓은 전문가그룹을 지원·양성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통일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후의 과도기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활용하였다.

한편 서독 종교단체의 대동독지원은 특히 눈여겨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다. 종교단체에 의한 대동독지원은 수백만에 달하는 동독주민들이 분단에 따른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한 민족으로서의 동포애를 체감하게 할 수 있는 직접적 방안이 되었다.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린 동독주민들의 변혁을 향한 움직임이 동독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서독이 대동독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에서 현금지불을 억제하는 대신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청산결제방식⁴⁹⁾을 활용하였으며, 교회의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도 현금

49) 내독교역은 VE(Verrechnungseinheit)라는 청산단위에 기초하여 행하여졌다. VE청산단위는 양독의 통화권이 이분화되고 구매력 역시 서독마르크화와 동독마르크화 사이에 현저하게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양독간에 도입된 결제수단이었다. 양국은 국제결제수단으로 기능하는 서독마르크화도 아니고 전혀 교환능력이 없는 동독마르크화도 아닌 체제중립적인 청산단위로서 VE를 내독교

대신 물품지불을 선호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남북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은 물론 경험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외환을 북한이 군사분야에 투입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우리 국내적 우려를 감소시키는 데 많은 시사를 준다.

동독의 경우 서독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획득한 외환의 일부를 군사분야에 투입하였으나 상당부분은 체제유지를 위한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분야에 투입하였다는 사실이 통일 이후 확인되었다. 북한 역시 가장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남북협력의 획득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분야에 남북협력의 획득물을 투입할 가

역의 결제수단으로 채택하였으며, 이 제도는 제삼-마리크협정(1949)에서 도입되었다. 결제방법은 양국 중앙은행의 청산계좌를 통하여 외환이 아닌 명목상의 결제단위인 VE로 결제되었다. 프랑크푸르트협정(1948)에서 동서독은 “모든 상거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되는 거래상품의 가격은 DM통화지역인 서독 국내시장가격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상품가격의 결정을 서독시장가격으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상품거래에 있어서 환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IDM = 1VE = 1\text{동독마르크}$ 로 대금이 결제되며, 이는 청산단위 VE의 가치가 서독DM에 상응함을 의미한다. 대금청산은 거래당사자의 청산은행인 서독의 연방은행과 동독의 국가중앙은행 사이에 계정간 이체방식에 의한 청산계정(Clearing Accounts)에 의하여 처리되었다. 양측 은행에 별도계정을 두어 채권과 채무를 기장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정산한 뒤 그 차액을 외환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차감청산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감청산이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1962년과 1966년 2회만 차감청산이 이행됨) 1968년 이후 이 규정은 폐지되고 차감잔고는 신용화관의 형태로 공여되었다. 양독 중앙은행은 계정 속에 3종의 세부계정을 두었는데 「베를린협정」(1961)에 따른 내독교역의 물품목록에 대응하여 청산계정(1)은 물품목록(I), 청산계정(2)은 물품목록(II), 청산계정(3)은 용역거래, 청산계정(S)는 긴급부족상품의 거래청산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청산계정(1)에 속하는 물품은 경성상품(Harte Ware)으로서 그 대부분이 쿼터품목이며 매년 수량 및 금액별로 고시되고 거래범위가 제한되었다. 이 계정에 속하는 동독의 반출물은 갱목, 원목, 갈탄, 정유제품, 철강, 기계, 전기제품 등이며, 서독의 반출물은 철강, 비철금속, 광산물, 기계, 자동차 등이었다. 청산계정(2)는 청산계정(1)에 속하지 않는 모든 물품(농수산물을 비롯한 1차상품 및 소비재)에 해당하며 연성상품(Weiche Ware)으로서 농수산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쿼터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구성되었다. 청산계정(S)는 베를린협정에서 합의된 상품품목과 상관없이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만 긴급하게 구입할 필요가 있는 상품으로 한정되었다.

능성은 상존하므로 남북협력 시에는 서독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가능한 한 현금제공보다는 물자제공을 우선한다. 둘째, 남북한에 청산결제방식을 도입하여 송금과 결제기반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남북협력의 획득물의 군사적 전용을 제한한다. 남북한은 이미 기본합의서(1992)에서 청산결제방식의 도입에 합의⁵⁰⁾하였으나, 세부적인 사항, 즉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청산계정의 범위와 결산, 대월제도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합의 상태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국내적 준비(청산계정 운영을 위한 자금확보 등)를 바탕으로 북한과 청산결제방식을 도입한다. 셋째,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혹은 인도적 지원시 부득히 현금이 제공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것이 북한의 사회·문화분야 혹은 일반경제에 투입되고 군사분야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안전조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현물제공 시에도 품목과 수량에 관해 북한과 협상하며 이 경우 우리의 협상력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현물제공시 북한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에 대한 적극성 여부에 따라 바세나르협정의 적용(특히 이중용도 가능품목의 최종용도 판정의 경우)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정부는 물품지원시 그 최종용도의 통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되, 북한의 태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⁵¹⁾ 미국 성분이 포함된 상품⁵²⁾의 대북지원에 관해서는 정부가 미국 상무부와 사전 협의통로 및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중용도 품목을 생산 혹은 지원하는 민간기업은 북한에 인도된 물자 및 기술에 대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
- 50)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 1조 8항은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그리고 9항은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51) 현재 정부는 남북경협에서 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고려하여 신소재, 전자장비, 통신, 정보보안 등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관련 사업을 반출 제한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표 11> 참조).

Ⅲ. 정상회담과 사회문화 교류

1. 정상회담 이전 사회문화교류의 흐름

분단이후 30여 년 동안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한반도의 냉전 기류 속에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을 수 없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북한이 남북 언론인 교류(1957), 제17차 올림픽대회 단일팀 구성(1958), 남북 공동 영화제작 및 연극경연대회(1965), 기자 및 과학자 교류(1966) 등 수차례의 대남 제의를 한 바 있으나, 이는 통일전선전략 차원에서의 선전성 제안에 불과할 뿐 실천적 의지를 결여한 공허한 것이었다. 이후 사회문화분야에서의 남북 교류는 1980대 들어 남북체육회담, 적십자회담 등 당국간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사된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상호교환(1985)이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표 111> 전략물자 관련 사업의 반출에 관한 관계법령

해당법률	조항	내 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90.8.9, 최근 개정 98.10.23)	50조 1항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 준용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 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제정 90.9.25, 최근 개정 98.6.12)	5조 1항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상 전략물자의 반출입은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등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수출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
대외무역법	24조 3	전략물자의 수출 허가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48조 2~11	전략물자의 허가에서 전략물자거래 부적격자 등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전략물자 관련 품목의 규격과 성능

- 52) 미국은 수출관리령(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에 의거하여 미국 성분이 10% 이상 포함된 외국제품이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시리아, 수단, 크로아티아 등으로 수출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1988년 남한 정부의 「7·7 특별선언」으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⁵³⁾

7·7 선언으로 남북 교류의 적극화 의지가 대내외적으로 표명된 이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시행(1989),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발족(1989),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제정(1990), 「남북문화교류의 5대원칙」⁵⁴⁾ 발표(1990),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채택·발효(1992),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199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98) 등 일련의 법·제도적 정비 과정을 거치면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점차 활성화 추세를 나타냈다. 또한 1998년 2월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천명하였는 바, 이와 같은 새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의 근본 취지 및 목표에 따라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또 한 차례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가. 현황과 주요 동향

(1) 현황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전까지 진행된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학술분야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시행 이후 가장 활발히

-
- 53) 7·7 선언은 남북교류의 적극 추진, 남북한간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통한 관계개선과 평화정착을 목표로 하였다.
- 54) 문화교류과정에서 분단이전의 민족전통문화를 우선적으로 교류, 승부 및 경쟁적 분야의 배제, 전통문화의 원형을 변형, 또는 훼손하는 표현방식의 지양, 쉽고 작은 일부터 시작, 공동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경주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적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학술분야이다. 1990년대 초에 직접교류도 이루어졌다.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세미나(1991), 평양 동북아 경제포럼(1992), 제3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1992), 일본의 전후 처리문제에 관한 국제토론회(1993) 등이 그것이다. 이 외의 주요 사례들로는 성균관대학교의 정범진 총장의 방북을 통한 개성의 고려 성균관과 남북대학간 최초의 자매결연 및 학술교류 협의(1998), 「연변과 학기기술대학후원회」에 대한 나진·선봉지역 과학기술대학 건립 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한 협력사업자 승인(1998), 남북한 학자 및 조선족 학자들이 참가한 “새 천년을 향한 조선족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의 연변대학 창립 50주년 기념학술회의(1999.7, 연길), 제4차 남북 청년학생 통일세미나(1999.7, 베이징), 제4회 우리말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1999.8, 연길),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1999.10, 베이징) 등이 있다.

(나) 종교분야

1989년 6월 이후 정상회담 이전까지 학술분야 다음으로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종교분야이며 특히 개신교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개신교계에서는 1986년 6월 스위스 글리온에서 개최된 「남북평화통일협의회」를 통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북한의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단간의 접촉이 최초로 성사된 이래 남북 기독교간 교류협력이 꾸준히 지속되었으며, 1998년 이래로는 제3국 공동행사 중심의 접촉위주에서 벗어나 순수 종교교류 목적의 방북이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구체적 사례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부연회 대표단이 방북하여 평양교회 설립과 평양신학교 지원 방안 및 평양신학원 건립 등을 논의(1999)한 바 있다. 천주교계에서는 성베네딕도수도원 김상진 신부의 방북(1995, 1997)을 통해 나진·선봉지역 병원 건립을 협의했으며,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최창무 주교 등 위원 7명이 북한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회 초청으로 방북하여 장충성당에서 미사를 집전(1998)하기도 했다. 남북 불교인간 접촉은 1991년 미국 LA 관음사에서 개최된 「조국통일 기원 불교도 합동법회」를 통해 최초로 성사되었다. 이후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의 초청에 의한 조계

종 총무부장의 방북과 남북한 불교계 현안 및 북한 수재민 지원 방안 논의(1996), 남북 불교지도자들의 베이징 실무회담 개최를 통한 남북 불교계 협력방안 논의(1998),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의 초청에 의한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상임추진위원장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의 방북(1999) 등이 성사되었다. 남북 불교계는 최근까지 『부처님 오신날』에 남북한 사찰에서 공동발원문 봉독을 거행하고 있다. 천도교계에서는 1991년 네팔에서 개최된 제4차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총회에서 남북한 천도교의 최초의 접촉이 성사된 이래 남한의 당시 오익제 교령과 북한의 유미영 위원장에 의한 천도교 교류를 위한 공동합의문 발표(1993), 베이징 남북 천도교 지도자회담에서의 동학혁명 전적지 남북공동조사와 남북한 천도교 공동사업 논의를 위한 상설협의기구 창설 합의(1999) 등이 성사되었다. 이 외에 범종단차원에서는 북한측 제의로 『남북종교지도자 베이징회의』(1997)에서 남북종교인의 협력강화와 식량지원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종교인 북경 평화모임』(1999)에서는 남북 종교인이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종교인의 역할에 관해 논의하였다.

(다) 문화·예술분야

남북 정상회담 이전까지 문화·예술분야에서의 남북 교류는 주로 중국, 일본 등 제3국에서 간접교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향방문 예술단』 서울·평양 공연(1985), 『범민족통일음악회』 평양 공연(19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 서울 공연(1990), 한국문화재단의 『리틀엔젤스예술단』 방북 공연(1998) 등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이루어진 직접교류의 사례들이다. 특히 『리틀엔젤스예술단』의 평양 공연은 이전의 직접교류가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데에 반해 순수 민간차원의 공연으로서는 분단 이후 최초의 직접교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었다. 이 외에 남북 공연예술 교류의 주요 사례들로는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의 제1회 평양 『윤이상통일음악회』 참가(1998),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 평양 공연(1999),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주최한 제1회 민족통일음악회 평양 공연(1999) 등이

있다. 영화부문에서는 1990년 뉴욕의 「남북영화제」에서 남북영화인들간 최초의 교류가 성사되었으며,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로는 각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영화를 수입, 방영하기도 했다.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입격정」 등이 그것이다. 1990년대를 통해 사진 및 미술분야에서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구체적 사례로는 사진분야에서 「남·북한·중국사진전」(1994), 「97 국제 한민족 사진세미나 및 사진전」(1997) 등의 교류가 있었으며, 1998년에는 남북 공동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된 사진집, 「백두에서 한라까지-렌즈로 본 조국」이 발간되었고 서울 전시회도 개최되었다. 미술분야에서는 베이징의 「남북코리아 서화전」(1991), 오사카의 「코리아 통일미술전」(1993), 동경의 「남북평화미술전」(1997) 등의 교류가 있었으며, 1998년 이후로는 남북교역 차원에서 북한 미술품의 반입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1999년에 남한 미술계 인사 11명이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 사례가 있다.

(라) 언론분야

종래 남북 언론 교류·협력은 대부분 남한 언론인의 방북에 의한 제한적 취재 형태로 성사되어 왔다. 그러나 1997년 이래 남북 언론 교류협력이 다양화와 양적 증대 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주요 사례로는 중앙일보 사 부설 「통일문화연구소」, 북한문화유산조사단의 세 차례에 걸친 북한지역에 대한 문화유적 답사(1997~98), KBS의 북한의 생활상 및 백두산 자연다큐멘터리 제작·방영(1997), 경향신문사 부설 「한민족문화네트워크 연구소」의 북한 문화재 자료 D/B 구축을 위한 남북문화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방북(1998), 문화방송과 스포츠아트에 의한 북한 역사유물 및 명승고적 등에 대한 영상 프로그램 제작(1998), 서울방송의 북한 사회문화 실상과 이산가족 상봉 취재(1999), 통일농구단의 평양 경기와 「2000년 평화친선 음악회」 녹화(생중계) 방영(1999) 등이 있다. 또한 1998년 이후로는 각 신문사의 방북이 급증했으며, 동아일보·중앙일보·한겨레신문 등 국내 3개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이 최초로 실현(1998)되었다.

(마) 체육분야

체육분야에서의 남북 교류는 1990년대 초반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1990년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통일축구대회」를 비롯해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1991) 등이 직접교류의 형태로 성사된 바 있다. 그러나 1991년 8월, 북한 유도선수의 망명으로 인해 남북 체육교류는 제3국 개최 체육행사를 통한 남북 체육인 간의 접촉만이 지속되었을 뿐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며 1999년에 와서야 다시 활기를 띠게 된다. 구체적 사례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양 남북노동자축구대회 참가(1999.8), 현대 남녀농구단의 평양 통일농구경기대회 참가(1999.9), 북한 남녀 농구선수단의 서울 통일농구대회 참가(1999.12) 등이 있다. 특히 평양과 서울에서의 통일농구대회 개최는 1990년 이후 중단되었던 직접교류 형태의 남북 체육교류가 재개된 사례라는 점뿐만 아니라 북한 선수단의 서울 방문으로 1993년 이래 중단된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이 재개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었다.

(2) 주요 동향

남북 정상회담 이전까지 남북 사회문화 교류에서 나타난 주요 동향은 다음의 여덟 가지로 집약된다.

①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 인적 교류는 주로 남한 사람들의 북한방문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민간인들은 대부분 제3국을 통해서 북한을 왕래하였다.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1993년 말 이후 1999년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 통일농구대회 이전까지 한 건도 이루어진 바 없다.

②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까지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정부당국의 주도하에 성사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으며, 문화예술분야, 학술분야, 체육분야에서 수차례의 직접교류가 성사된 것 외에는 대부분 미국·일본·중국 등 제3국을 통한 간접 교류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8년 이래 특히 예술·체육분야에서 남북한간 직접교류·협력이 성사되는 추세이다. 직접교류·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진 주요 행사로는 리틀엔젤스예술단 방북

공연(1998),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 평양 공연(1999) 등이 있으며, 이외에 체육분야에서 남북 축구·농구경기가 성사되었다.

③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이전과는 달리 각 분야별로 교류·협력을 위한 대북 제의 및 교류·협력의 내용이 다양해졌으며 양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종래 전통예술공연 위주에서 미술·무용·교예·대중음악·영화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특히 한국문화재단의 리틀엔젤스예술단 방북 공연(1998)은 송년통일전통음악회 서울 공연(1990) 이후 8년만에 성사된 남북한간 직접교류였을 뿐만 아니라 순수 민간차원의 공연으로서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행사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었다. 언론분야의 교류·협력도 이전에는 대부분 남한 언론인의 방북에 의한 제한적 취재 형태로 성사되었으나, 1998년 이후로는 다양한 형태로 교류·협력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특히 각 언론사들의 북한 문화유적 답사 및 영상프로그램 제작 관련 방북이 많았으며, 북한 사회문화 실상 및 이산가족 상봉 취재를 위한 방북도 있었다. 특히 1999년 통일농구단의 평양 경기와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 공연실황의 녹화 방영은 남북 방송 교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 때에 남한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이 최초로 실현되었다. 1998년 이래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다양화와 양적 증대를 보인 것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고조된 남한 사회문화계의 남북 교류협력 열기와 북한의 실리추구 차원에서의 호응이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④ 남북기본합의서 타결과정에서 북한측이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 남북 언론 및 종교분야의 교류·협력이 1990년대 후반이래 점증하였다. 1997년 중앙일보사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으로 남북 사회문화 협력사업이 재개된 이후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언론 교류협력이 급증 추세를 나타냈다. 또한 1980년대 중반 이래 꾸준히 지속되어 온 종교교류도 1993년 북한의 NPT 탈퇴선언과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한동안 저조했으나 1997년 이후 종교인의 방북이 점증하는 등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종교교류는 대북지원성 교류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교류 전반에 걸쳐 개신교계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 사회문화 협력사업이 활성화되었다. 남

북 사회문화 협력사업은 19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이 있었을 이후 한동안 단절되었다. 그러나 1997년 중앙일보사의 북한지역 문화유적 답사사업에 대해 협력사업자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남북 사회문화 협력사업이 재개되었으며,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급증 추세를 나타냈다. 사회문화분야의 협력사업은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1997.6)된 이후 1999년 9월말 현재 14개 단체가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으며, 10개 단체가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북한측과 구체적 사업 추진을 진행하였다.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은 1991년의 2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 성사되었다.

⑥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단순한 상호교류 제의 및 접촉, 또는 일회적 행사로 끝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항구적·지속적 교류·협력이 합의되어 실행되는 것은 없었다. 이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제의에 대해 북한이 경제적 실리목적에서 선별적으로 호응한 것과 남한의 일회적 이벤트성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 추진 경향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⑦ 남북 사회문화 교류에서 가장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학술분야에서이다. 그러나 학술교류 역시 대부분 중국, 일본 등 제3국에서의 접촉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방북에 의한 교류는 미미한 정도였다. 남북한간 직접 교류는 4건에 불과하다. 또한 서울의 성균관대학교와 개성의 고려 성균관과의 자매결연(1998)은 남북대학간 최초의 자매결연으로 기록되었다. 학술교류에서는 특히 경제학 및 통일 관련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⁵⁵⁾

⑧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체육분야에서의 교류가 활성화되었으며 1999년에는 남북 농구단의 상호 방문에 의한 경기가 성사되었다. 또한 서울 통일농구대회 때에 경기 막간에 이루어진 평양교예단 공연은 체육과 문화·예술분야를 연계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55) 조한범 외,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 방안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31~35.

나. 사회문화 교류의 한계와 문제점

(1) 한계

정상회담 이전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근본적인 한계는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된다.

① 남북한간 침해한 정치·이념 및 군사적 대결구도

반세기 이상 지속된 침해한 정치·이념 및 군사적 대결관계 상태에서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은 남북한간 정치·군사적 쟁점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는 바, 북한의 NPT 탈퇴 선언(1993)과 핵 문제 발생 이후 수년간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실적이 저조했으며(1993년 이후 사회분야 전반에 걸쳐 북한주민접촉 신청 및 승인 건수가 1991년과 1992년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서해교전(1999)에 대한 보복조치로 북한이 “남한인사의 평양방문과 접촉을 제한 또는 중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은 이를 말해 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②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 태도

북한은 이른바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로 인한 체제붕괴를 우려하여 개혁·개방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현실적으로도 1980년대 말 이래 확산·심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황색바람 유입 방지에 고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연방제 통일이 되면 남북한간 사회·문화적 이질화는 자연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논거 하에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있어 북한은 여전히 정치·사상 우선의 논리를 견지해 온 것이다.

③ 남북한간 사회문화적 이질화

남북한은 이질적 사회문화에 대한 상호 인식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해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있어 시행착오를 반복했다. 문화·예술 및 언론·종교의 기능에 대한 상호간 인식 차이와 문화·예술의 내용·형식에 있어서의 상이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남북한은 상호 이해와 수용보다는 오해와 배척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2) 문제점

정상회담 이전에 이루어진 남북 사회문화 교류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의 네 가지로 집약된다.

① 일방통행의 교류협력과 북한 문화·예술의 일방적 남한 유입 및 수용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민간차원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내용상으로는 남한사람들의 북한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방통행의 교류협력이 대부분이었다.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이 1993년 말 이래 한 건도 없었음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또한 1998년 10월, 북한 드라마 「임격정」, 방영 이후 2000년 8월말 현재 총 16건의 문화교류가 있었으나 남한 프로그램의 북한 방영은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⁵⁶⁾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북한 문화·예술의 일방적 유입 및 수용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호이해와 신뢰형성을 위한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기본목적 및 의의에 크게 배치된다.

② 합의사항 이외의 비본질적 추가조건 제시

북한은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있어 당초 합의사항 이외의 비본질적 추가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은 남북 합의사항 이외에도 매 건당 고액의 대가를 요구하며, 교류협력 성사의 전제조건 내지 추가적 대가로서 대북지원을 요구하거나, 또는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비본질적 추가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현재에도 거의 모든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이 대북지원과 연계되어 추진, 성사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대로이다. 그러나 매 건마다 합의사항 이외의 추가조건을 제시하는 북한의 행태는 한 건 주의에 집착하여 거액을 지불하는 일부 남한의 사업자들에 의해 조장되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순수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주요 근원이다.

③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선별적 호응

북한은 통일전선기반 확대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

56) 『조선일보』, 2000. 8. 23.

협력을 이용하는가 하면,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외화획득을 위한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인식함으로써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제의에 대해 정치적·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주체로 나서는 단체들도 관변·어용 단체에 불과했으며, 대남 교류제의 및 접촉 대상도 재야단체 및 진보적 인사에 편중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한당국도 북한의 접촉 제의가 남한의 일부 단체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의 교류가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여, 북한의 정치성을 이유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승인을 거부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남북당국은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있어 상호간 정치적 의도 내지 목적을 지나치게 의식, 경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있어 소극적 태도를 탈피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활성화됨에 따라 북한은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외화획득을 위한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현저하게 드러냈는 바, 이는 남북 합의사항 이외에도 매 건당 고액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교류협력 성사의 전제조건 내지 추가적 대가로서 대북지원을 요구하는 행태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행태는 주로 문화·예술 및 종교분야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④ 교류협력의 주제선정 및 행사추진에 있어서의 일회성·이벤트성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상호교류 제의 및 접촉, 또는 일회적 행사로 끝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항구적·지속적 교류협력이 합의되어 실행된 것은 거의 없었다. 또한 그 동안 성사된 직접 교류협력의 대부분이 공연예술 중심의 이벤트 사업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제의에 대해 북한이 경제적 실리를 타산하며 선별적으로 호응한 데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 교류협력 주체 단체들 간의 지나친 공명심과 경쟁의식에 따른 개별적·경쟁적 대북제의 및 접촉 추진으로 인해 교류협력이 일회적 이벤트사업화되었음도 사실이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대북제의 및 접촉의 개별적·경쟁적 추진은 결과적으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저해한 주요 요

인이다.

⑤ 재정적 부족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재정적 대북지원과 연계되어야 지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정적 부족은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지속성 유지에 있어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2. 정상회담 이후 사회문화 교류의 특성

남북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산가족의 상봉이 15년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남이 이루어지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열려졌다는 점에서 이산가족의 극적인 상봉은 그 자체가 남북관계의 현주소와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철도, 도로, 개성공단 등 경험의 분위기도 점차 고양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분야가 문화교류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정상회담 이전에 소년예술단과 평양교예단이 서울을 방문하여 공연을 하였고, 정상회담 이후에는 8·15를 기념하는 음악회에 조선국립교향악단이 참여하여 단독공연과 KBS교향악단과의 합동공연을 남한주민들에게 선사하였다. 또한 남한의 언론사 사장단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KBS는 백두산 현지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생방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삼성의 탁구단은 평양에서 시합을 하였고, 시합장면은 생중계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면서 올림픽에 공동입장을 하기도 하였다.

과거와 비교해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문화교류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남한을 방문하는 문화교류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비교적 남북한 교류가 활발하였던 1990년대 초나 김대중정권 수립 이후에도 문화교류의 장소는 제3국이나 북한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최근 수년 동안의 문화교류는 남한측 인사가 평양을 방문하여 공연한 것이 중심이었다. 북쪽 사람들이 남한을 방문하여 공연을 한 것은 1985년도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할 당시 동반하였던 예술단 공연 이래로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은 비록 제

한적이기는 하였지만 남한 문화가 북한인민들에게 보여지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그 동안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⁷⁾ 이와 같은 형식 변화는 그 자체로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크게 보면 문화교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북한 문화의 남한 수용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가 문화교류에 직접 간여하는 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문화교류는 표면적으로는 민간이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 직전에 이루어진 소년예술단과 교예단의 방남에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며, 평양교향악단의 공연에도 정부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⁸⁾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이후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는 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셋째, 자본의 결정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평양교예단이나 평양교향악단의 공연에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지난해 정상회담 평양공연 등의 행사에 북한에 대한 일정한 사례비가 필요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나 이번 문화교류의 경우는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점이다.

넷째, 제3국이 아닌 남북한 현지에서 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과거 문화교류의 중심은 남북한보다는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제3국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문화교류는 남한(소년예술단·평양교예단·평양교향악단)과 북한(탁구시합·백두산 현지방송)에서 이루어졌다. 어느 곳에서 교류행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만은 아니다. 제3국의 문화교류는 참여자에 국한된 교류지만, 현지에서 이루어진 문화교류는 비록 충분한 인원은 아니지만 남북의 문화를 상대편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교

57) 물론 방송이나 책자 등을 통하여 북한 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직접 공연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공연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았고, TV에 중계되는 등 영향력이 대단히 컸다고 볼 수 있다.

58) 교향악단의 경우 KBS가 초청대상자였으나, 이미 한 민간단체가 4월에 북측과 방문공연에 계약한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인 분쟁도 야기되었다.

류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방송과 언론이 결합되는 등 문화교류가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의 결합은 근본적으로 문화교류의 경험을 확산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공연이나 행사를 직접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신문과 방송의 보도 혹은 중계를 통하여 일반시민들이 간접적이거나 문화교류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신문·방송과 같은 언론의 교류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문화교류의 성과를 확대시켰다는 점은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문화교류의 다양성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소년예술단, 교예단, 교향악단, 방송 그리고 체육에 이르기까지 정상회담을 전후한 각종 문화교류는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교류의 중심지가 남한이 됨으로써 과거에는 접하지 못하였던 북한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상회담을 통하여 문화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화교류가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성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문화교류가 폭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문화교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과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사회문화 교류가 활성화되어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문화교류가 활성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역으로 정치에의 예속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냉정하게 본다면 최근 이루어진 문화교류는 정상회담의 개최와 합의문 도출이라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힘입은 바 크다. 즉, 논리적으로 본다면 결국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요인에 좌우되었다는 점이다. 문화교류가 남북관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정한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현재의 남북관계가 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만큼 문화교류에서도 정부의 몫이 확대되어 민간부문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현 단계 남북관계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남북문화 교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문화의 자발성을 강조한다면 남북문화 교류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며, 국가가 개입하는 문화교류는 결과적으로 문화교류를 정치적 홍보로 이용함으로써 문화교류의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문화교류를 억제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셋째, 문화교류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문화교류에서 상품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출연료나 공연료 등의 사례는 어느 공연에나 필요한 지출이 될 것이나, 적절한 가격과 동떨어져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될 것인데 그 하나는 문화교류마저 대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앞으로 문화교류에서도 시장원리가 적용되어 상품성 있는 문화만이 교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반세기에 걸친 적대적 분단상황으로 상대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못하는 것이다. 남북이 경험한 분단은 단순히 둘로 나뉘어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해왔다. 남북한 사람의 만남이 곧 위법이었고, 당연히 상대문화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남한에서는 북한의 문화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보안법 위반이었고, 이는 반국가사범이라는 것을 의미하였다.⁵⁹⁾ 이와 같이 상대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커녕 경험도 전무한 상태에서 그리고 문화적 적개심을 유지한 채로 갑자기 상대문화를 접하게 되는 것은 일시적인 호기심 충족의 수준에 머무르거나, 과거의 문화적 편견을 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평양교예단의 공연을 보면서 북한 독재체제의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⁶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화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거리감 → 인간적 거리감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59) 북한의 경우는 다소 다르다. 남북한문화의 본질적인 차이 즉 남한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다양하였기 때문에 남한 문화 가운데 일부는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소개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황석영의 작품이 대표적이며, 이 밖에도 주로 민중문학 계열의 작품들은 북한주민들이 접할 수 있었다.

60) “교예단원이 실수하면 탄광에 끌려가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다”거나 소년예술단의 공연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가혹하게 훈련시킨 결과”라고 생각하는 식이다.

IV. 최근 남북한 문화의 변화

1. 정상회담 이후 남한문화의 변화

정상회담 자체가 남한문화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다. 우선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 증대로 북한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북한관련 프로그램이 TV를 통하여 방영되었고, 이 가운데에는 과거와는 달리 북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로부터 북한의 거리, 그리고 북한의 자연들을 보여주는 것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언어에서 건축물 그리고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북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북한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이해의 내용은 전혀 다른 방향이 될 수 있다. 보기에 따라 북한문화가 남한문화와 다르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북한문화가 남한문화와 공유하는 점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이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하나의 문화공동체를 이루었으나, 최근 반세기 동안 서로 다른 문화구조를 만들어왔다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급작스럽게 접하게 된 북한문화의 이해방식이 상호 모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 금기시 되었던 북한문화를 접하게 되었다는 것은 남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차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사회주의 문화 특히 북한문화는 이해나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과 타도의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북한영화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따져보기보다는 북한영화의 문제점을 먼저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의 다양성이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몫을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남북정상회담 자체 그리고 이후의 문화교류는 남한문화의 발전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접촉이 반복됨에 따라 북한문화에 점차 익숙해진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화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의 총체라는 차원에서 북한문화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곧 북한사람들과 그들의 삶에 대하여 익숙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갖고 있었던 북한사람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점차 뭉어질 수 있다.⁶¹⁾ 그리고 이러한 인식변환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한 화해협력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 점은 정상회담과 이후 문화교류가 남한의 문화체제에 끼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북한문화를 도외시하였으나 북한문화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한 민족(혹은 조선민족)이 이룩한 근대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족문화 특히 근대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분단 이후 지속되어왔던 전투적 문화, 전쟁문화를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분단과 전쟁 그리고 체제경쟁은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문화의 우열을 다투는 인식을 팽배하게 하는 중요 원인이었다. 문화의 내용보다는 문화 수용자 혹은 창조자의 정치적 입장이 우선시 되었고, 경쟁적 문화구조는 자신의 문화를 절대화하고 상대문화를 폄하하는 현실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남북한 사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남한 내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로 다른 문화의 공존이 허락되지 않았던 현실에서 공존의 문화가 가능한 기본적인 토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이 이룩한 문화적 성과가 남한문화에 건전한 자극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문화를 지향하였지만 나름대로 민족문화의 유지와 보수에 관심을 기울여왔다.⁶²⁾ 교예단의 공연에서 보였던 묘기

61) 북한사람들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이우영,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당대비평』 12 (2000 가을) 참조.

62) 김일성은 민족문화에 대해서 허무주의와 북고주의를 모두 배격한다고 하면서도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전하여야 한다(1949.10.15)” 『김일성 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북한문화에서 전통문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우영, 『북한 정치사회화에서 전통문화의 역할』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참조.

가운데 전통의 남사당 유희가 적용된 것이 적지 않으며, 조선국립교향악단의 공연에서는 개량악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남한에서 전통문화가 상대적으로 박제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통문화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북한문화가 남한문화에 주는 교훈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언어의 경우는 민족어의 보존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넷째, 상업주의적이고 지나치게 개인화된 남한문화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자본주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고 있으며, 상품성을 중요 가치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다양성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나 건전성이라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의 물화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자극적이고 퇴폐주의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는 경향도 없지 않다. 이에 반해 북한문화는 정치적 선전선동을 첫번째로 한다는 사회주의 문화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으나, 상업주의와 거리를 두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문화사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분단 반세기 동안 특히 근대 문화사는 남이나 북이나 모두 반쪽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한에서는 월북한 문화예술인들을 문화사에서 제외시켰고, 분단 이후 북한의 작품들은 일체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문화에 대해서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가치판단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였다.⁶³⁾ 또한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상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한계로 민족문화사는 불균형적으로 기술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화해 분위기가 고양되고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하였던 과거 문화유산에 접근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문화사 전반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섯째, 장르라는 차원에서 문화의 폭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거의 생명력을 잃었던 교예를 포함하여, 현실생활에서 소외되어 있던 수예

63) 남한에는 그 동안 신라문화를 특히 강조하여왔으며, 북한은 고구려문화를 중시하여왔다.

라든가 집단체조, 경험이 전혀 없는 가극 등 남한문화에서 희귀한 장르들이 새로운 범주로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르들이 남한에서 얼마만큼 수용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나 문화적 범주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일곱째, 문화예술 분야별로 기술적 자극을 받는 기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국립교향악단의 공연에서 연주인들의 진지한 자세는 남한내 연주인의 기량연마에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으며, 공연예술의 연출이나 무대 구성은 해당분야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덟째, 방송교류는 부분적으로 남북한주민들의 시선을 동일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분단체제는 이념의 차이, 관점의 차이를 동반하였지만 그 동안 남북한의 폐쇄체제는 남북한주민들이 동일한 대상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제한적이고 불균형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체육경기의 생중계와 같은 방송교류는 남북한 주민들이 동일대상을 동일시점에 볼 수 있게끔 한다.⁶⁴⁾ 이것은 의식의 통일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의식의 공유와 의사소통 대상의 확대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문화교류가 남한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북한 문화체제에 끼친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방송단 및 취재진이 방북하여 취재 및 방송을 진행함으로써 이미 북한문화도 남한문화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한을 방문한 예술단은 공연과정에서 남한문화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였으며, 이산가족 상봉단은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방송 시청을 통하여 다양한 남한 문화를 경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직 그 범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남한문화 전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을 경계하는 북한의 폐쇄적인 문화정책을 고려

64) 물론 남한에 생중계된 체육경기 혹은 부분적으로 방영된 집단체조가 북한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중계되거나 방영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생중계를 하는 동안 남한의 주민과 직접 관전하고 있었던 북한주민들은 시점의 공유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할 때, 남한 문화가 급속히 북한에 파급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인 문화전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북한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남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한문화와의 접촉을 통하여 남한체제와 남한사람들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도 변화가 가능할 것이고, 북한문화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는 데에도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상회담 이후 북한문화 변화

북한은 2001년 신년사인 공동사설을 통해 ‘사회주의 붉은기 진군’을 ‘선군(先軍)혁명노선’을 기본으로 하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자주정치, 단결의 정치, 애국애족의 정치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문화성도 2001년 문학예술작품의 창작방향을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사회주의 붉은기 진군 추진 고무’로 정했다고 2001년 1월 4일 밝혔다. 문화성 박종호 처장은 이날 조선중앙방송의 “공동사설에 대한 문화성 반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같이 말하고 김정일에 대한 그리움과 수령결사옹위 정신이 담긴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와 함께 거창한 전변의 세기, 창조적 세기인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람들과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투쟁기풍과 일본새(근무자세)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도록 고무추동하는 전통성이 높고 호소성이 강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보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특유의 ‘모기장론’을 펴기도 한다. 조만간 남북화해와 개혁개방을 하더라도 사상과 이념의 ‘모기장’만 잘 치면 괜찮다는 말이다. 즉 “이렇게 해서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근로자들을 가는 길 험난해도 영도자와 뜻을 같이하고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영도자와 생사를 같이하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다진 맹세 변치 않는 충신으로 사회주의의 견결한 수호자로 키우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김정일이라는 당 최고 지도부만 결심하면 주민들은 개혁·개방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다가 만약 외래 사조가 들어오더라도 주체문제라는 사상적 모

기장이 그를 막아주리라는 주장이다.⁶⁵⁾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문예정책의 변화 양상을 추정해 보기 위하여 회담 전·후 1년 동안 월간 종합예술지인 『조선예술』에 게재된 노래가사를 소재 및 주제별로 분석한 오양열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소재의 노래가 대폭 감소한 반면 당과 조국 소재, 자력갱생 주제, 총련부흥 주제의 노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민군대 소재의 노래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⁶⁶⁾ 특히 소재와 주제의 다양화가 엿보이고 탈이념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개방을 기본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있으면서도 경제분야에 비해 문화분야의 개방에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개방에 비해 문화개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많지 않고, 이른바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휩쓸고 지나갈 경우 김정일 가계(家系)의 우상화를 근간으로 하는 통치정책이 인민들에게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문화는 근본적으로 개인우상화 정책과는 양립이 불가능한 문화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북한 지도부가 우상화 주제의 문예물을 대폭 줄이고 개인보다는 당과 조국이라는 보다 합리적인 대상에 대한 충성물 창작으로 문예정책의 방향을 바꾼 것은 앞으로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는 자본주의 문화 유입에 대한 대비책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정책방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력갱생, 경제회생 주제의 문예물은 경제난에 의한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는 한 여전히 강조될 것이 분명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체제 수호의 첨병인 군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 앞으로도 인민군대

65) 김성수, “90년대 북한문학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 변화,” 통일문화정책 포럼 자료집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와 문화교류』, (서울: 문화정책개발원, 2001).

66) 오양열,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문예지의 변화 양상과 전망 - 『조선예술』 지에 실린 노래가사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소재의 문예물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아직 문화개방에 대해 소극적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전망으로는 문예물의 소재와 주제가 다양해지고 ‘사회주의적 내용’으로부터 벗어난 문예물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최근 북한 영화계의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에 제작 개봉된 『살아있는 령혼들』은 패전 일제가 1945년 8월 일본 교토항 부근에서 광복을 맞아 『우키시마마루』(浮島丸)를 타고 귀국하던 조선인 5천여명을 배를 폭파시켜 수장시킨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컴퓨터그래픽을 사용하는 등 허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 형식과 흡사한 점을 많이 띠고 있다. 또한 과거 북한영화에 비해 이념적 지향성이 상대적으로 옅다. 또한 외국 영화와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살아있는 령혼들』의 외국 보급에 적극적이다. 9월에 개최된 평양 영화제 기간 동안에는 일본의 저명한 영화감독인 야마다 요지(山田洋次, 69)가 연출한 『학교』 1~4부가 지난 17일 평양시 보통강구역에 있는 낙원영화관에서 상영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이 시작된 것을 계기로 『설녀』(雪女)가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 1991년도에 소개된 적이 있으나, 일본영화가 북한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2001년 6월 러시아에서 열린 제23차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 북한이 참가한 것도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 10여 년간 국제 영화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북한영화가 국제무대에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이번 영화제에서는 “스크린이란 거울에 비춰본 한반도”란 제목으로 남한의 『단적비연수』, 『기말』, 『유령』과 북한의 『달려서 하늘까지』, 『살아있는 령혼들』, 『푸른 주단우에서』등 모두 6편이 특별부문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극장에서 상영되기도 하였다. 모스크바 국제영화제는 남북한 영화계와 비교적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특히 북한 영화계와는 사회주의권 몰락 이전인 1990년경까지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했었다. 북한이 10여 년만에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 다시 참가하게 된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 긴밀화와 함께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신사고 정책』으로 대변되는 방침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1년 1월 15일부터 20

일까지 있었던 김 총비서의 상하이 방문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모스크바 영화제 조직위원회측이 이 영화제가 정치선전의 장(場)으로 이용됐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밝힌 점도 북한의 영화제 참가에 명분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번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의 참가를 계기로 앞으로 보다 활발하게 국제영화제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⁶⁷⁾

4월의 축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김연자 공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연자 공연은 조총련계 재일동포인 리철우(재일조선예술연구소 소장)가 기획한 공연으로, 유례없는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공연되었다. 그 환대와 호응의 구체적 양상은 ① 공연 전편이 약간의 편집만 이루어진 채 텔레비wus 녹화방송으로 이루어졌고, ②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접견과 만찬이 베풀어졌고, ③ 예정에 없던 함흥 공연이 이루어졌으며, ④ 『로동신문』에 세 차례나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며(4월 8일자에 다른 친선예술축전 기사가 실리는 위치에 박스로 게재, 4월 12일자 1면에 머릿기사로 사방 16cm 크기의 김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두 쪽지의 기사로 게재, 4월 13일자 4면의 절반을 차지하는 긴 길이로 세 명의 기자가 총괄적인 평가 기사를 게재), ⑤ 이후 다른 정기간행물에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고, ⑥ 김연자에 대한 남한의 세평에 비해 놀랄 만큼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김연자 공연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⁶⁸⁾ ① 곡목 선정, 의상, 농음 등 창법에서 민족적인 감정과 정서가 짙다. ② 자기의 고유한 창법이 있고 기교와 형식이 매우 세련되어 있으며, 음역이 대단히 넓고 음색·음정 등을 정확하게 보장하며 음악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잘 유지한다. ③ 가사의 발음이 정확하며 가사와 형상을 잘 밀착시키고 노래의 요점을 콕 찍어내며 박력 있게 부른다. ④ <내 나

67) 최척호, “남북영화교류와 북한 영화계 현황”, 통일문화정책 포럼 자료집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와 문화교류」(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68) 여러 지면에서 김연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집중적이고 상세한 분석을 함으로써 그 이후 다른 지면의 평가를 이끌고 있는 글은, 정영화·최창일·김영철, “뛰여 난 음악적재능, 명성 높은 독창가 - 민족의 자랑 일본에 있는 남조선가수 김련자의 공연에 대하여”(『로동신문』, 2001.4.13)이다.

라 제일로 좋아>, <도시 처녀 시집와요> 등에서 가사 내용이 감동적으로 전달되고, 일제시대 대중가요에서는 민족의 피눈물나는 과거를 뼈저리게 되새기게 하였다. ⑤ 단독으로 긴 공연을 흥미 있게 끝어나가는 건인력을 지니고 있다. ⑥ 무대진행이 순조롭고 좋은 ‘안삼불’을 보여준다. ⑦ 다양하고 활발한 서정적인 율동과 섬세한 얼굴 표정, 손 동작, 몸 동작 등은 노래의 감정정서를 돋우고 곡상을 강조한다. 이는 한 공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평가를 총동원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⁶⁹⁾

69) 이영미, “김연자 바람이 말해주는 것: 2001년 상반기 대중적 공연물 교류의 허와 실,” 통일문화정책 포럼 자료집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와 문화교류』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V. 사회문화 교류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

1.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의의와 중요성

통일의 선결 조건으로서 남북 화해는 상호간 꾸준한 접촉과 대화가 유지되어야만 가능하다. 동·서독간 ‘상호 접근을 통한 변화’를 일관성 있게 추구하고, 단계적 접근방법인 ‘작은 걸음의 정책’을 수행한 독일 통일의 예는 대표적 모범 사례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지하듯이 서독 정부는 동독 정부에 대해 정치적 대응보다는 비정치적 차원에서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정치적 관계개선을 모색했으며, 동독 정부도 실리추구 차원에서 동·서독 교류·협력에 호응함으로써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분단사를 마감한 것이다.

이와 같은 독일 통일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의의와 중요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간 공동적 사회·문화 기반을 구축하고 상호 의존관계를 수립한다는 데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근본 취지는 남북한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한의 ‘사회·문화 공동체’의 형성 기반을 구축하고, 남북한주민들이 서로간의 차이를 우열 관계가 아닌 대등 관계의 차이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이해를 도모한다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남북한간 이질화 극복 및 동질화를 위한 필수 선행 조건이라는 데에 커다란 의의와 중요성이 있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남북한으로 하여금 서로의 삶의 양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케 하며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게 할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문화적 이질화로 인해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간 문화·심리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북한 사회 변화 및 체제 개혁·개방 유도를 위한 비정치적 수단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는 데에도 의의와 중요성이 있다. 우리의 다양한 대북 접근을 일관된 정치논리로서 대응하는 북한에 대해 비정치적 접근수단으로서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북한을 직

접 자극하거나 정치적 대응을 야기함이 없이 북한 사회 변화 및 체제 개방·개혁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남북한간 사회·문화적 접근의 확대·강화는 남북관계에 있어 정치·이념적 논리의 상대적 약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의 중요한 실천 수단으로 공식화되어 있다.

2. 사회문화 교류의 저해 요소

가. 제도적 문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적인 제도적 차원의 문제가 적지 않다. 우선적으로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된다.⁷⁰⁾ 사회문화 교류는 인적인 접촉을 포함하여 상호간의 문화가 접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북한사람들과의 접촉은 물론이고 북한문화의 감상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회주의체제 북한의 모든 문화예술은 기본적으로 선전·선동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도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작품에 정치적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엄격하게 본다면 ‘이적 표현물’이 아닌 작품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어떤 북한 문학예술 작품을 접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상의 제7조 찬양고무죄⁷¹⁾에 해당할 수 있

70)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다.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는 강성만,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www.peacekorea.org/databank/sungman2html, 보안법 유지에 논리에 대해서는 이동부의 글 www.dblee2000.or.kr/korean/assembly_k/Q8.htm 참조

71) 제7조 (찬양, 고무 등): 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 삭제 ('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

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문화의 유입이나 유통 그리고 감상도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김대중정부가 들어선 이후 꾸준히 북한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북한문화 가운데 공개 가능한 범주를 확대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일반시민들이 북한문화를 접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공개하는 작품의 선정도 지극히 자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적 교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의 보안법 아래에서는 북한주민과의 접촉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접촉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재량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법리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⁷²⁾

불분명한 저작권 관련 법령의 경우도 사회문화 교류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의 경우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하고,⁷³⁾ 북한이 국

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72) 대표적인 사건으로 민변은 1995년 9월 굶주림에 처해 있는 북한 동포를 인도적으로 돕기 위해 자체 회원들을 상대로 모은 1천만원의 성금을 북한적십자사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하려는 계획으로 1996년 8월 25일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청을 하였으나 통일부는 그 해 9월 10일 “대북지원에 관한 정부의 방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려 법적인 소송으로 발전하였던 경우를 들 수 있다. 국가보안법과 교류협력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의 법리적 쟁점,” spn.snu.ac.kr/human/국가보안법/법리.html 참조.

73) 남북한 기본합의서 채택된 이후 1992년 개최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저작권 문제는 ‘합의한 항’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8차 고위급 회담의 부속합의서 채택과정에서 예술작품과 문화유물의 교환전시 등에 대해선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였으나 저작권의 보호나 자료실 설치문제에 대해서 부정에 가까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영준, 『통일문화 창조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타개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저작권이 남북교류에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한범, 『남북한 학술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0) 참조.

체적인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⁷⁴⁾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북한도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남한과 저작권 문제로 분규가 일어났던 적도 있다.⁷⁵⁾ 북한 저작권 보호에 관해서는 1996년 9월 서울지법이 “우리나라 주권은 헌법상 북한에까지 미치므로 북한이 UCC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북한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 북한 저작물에 대한 무단복제를 규제한 바 있다. 또 남북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쌍무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저작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는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교류는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 남북한간 사회문화 교류를 저해하는 또 다른 문제는 사회문화 교류와 관련된 정부부처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사회문화 교류는 통일부 교류협력국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접촉 승인에서 사후보고에 이르기까지 남북교류협력법을 근거로 통일부의 허가와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회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서는 문화관광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가 북한영화를 수입

74) 저작권은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저작권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www.copyright.or.kr/main.htm 참조. 현재 북한은 베른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2001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회의에서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문화교류와 대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75) 판권을 갖고 있는 대리인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서 KBS가 방영한 영화 「림격정」의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2000년 8월 법원은 KBS에게 판권을 소유한 미국교포에게 2억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또한 2001년에는 인터넷 자사 홈페이지에 영화 「살아있는 령혼들」을 올려 놓은 중앙일보를 대상으로 해당 영화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홍콩영화사가 고발한 경우도 있다. 북한에서 번역한 「리조실록」의 출판을 둘러싸고 북한이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한 적이 있다. 이 밖에 일제하에서 만들어진 다수의 노래들에 대해서 북한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등 앞으로도 문제가 될 여지는 많다고 볼 수 있다. 음악에 대한 북한의 저작권 주장에 대해서는 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051999062904400+19990629 참조.

하고자 한다면, 통상적인 외국 영화 수입과 방영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와 영화등급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동시에 북한 작품이기 때문에 통일부를 경유하여야 한다. 실제로는 지적 표현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과도 접촉하여야 한다. 민간이 아니라 정부부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되는데, 문화재를 교류한다고 하면, 사업주체가 문화재청이 되는 까닭에 문화관광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통일부의 허가과 관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학술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자치단체 등이, 기술교류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등이 관련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는 사회문화 교류는 양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방식이 통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⁷⁶⁾ 그러나 현재와 같이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업무 관할이나 절차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다면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이나 현재의 체제하에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쉽지 않다. 더구나 현재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비영리적인 사업으로 못박고 있으나,⁷⁷⁾ 실질적으로 최근 사회문화 교류에서 영리적 목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왔다는 점도 현재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제도의 적합성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교류협력기금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것도 현재 지지부진한 현실이다. 2001년의 경우 사회문화 분야 기금 지원의 목표를 30억으로 계획하였으나 11월 현재 사용된 금액은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 소요경비 지원 등 2건에 3억 5천여만원에 불과하다. 2001년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문화 교류도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나, 배정된 예산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금 운용의 방법상 문제에서도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일부 분야에서는 남북교류에 과다한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나 이를

76) 사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회문화 교류가 현재의 규정이나 절차에 부합하였는가의 여부도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전시적인 목적으로 정부가 주도한 사회문화 교류를 포함하여 ‘특별한 이유’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77) 「(사회문화분야)남북교류협력 실무안내」, www.unikorea.go.kr/ 참조.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본력이 있는 단체나 기관만이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사회문화 교류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기초자료의 부실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문화의 특성, 문화단체의 현실, 교류 가능한 단체나 기관 등에 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교류 사례와 문제점에 대한 정보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통일부 등에서 운영하는 자료실이 있으나, 자유로운 이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까닭에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용하기 불편하다. 따라서 교류를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혹은 개인은 독자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나. 사회·문화체제의 문제

사회문화 교류를 저해하는 요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현재 남북한의 사회문화체제라고 할 수 있다. 반세기에 걸친 남북한 대치상황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확대시켜 왔고,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사회문화 교류가 일천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사람이나 북한문화를 접해 볼 경험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직접 북한사람을 접촉할 기회를 가진 남한사람은 극히 적었고, 접촉 대상도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문화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였던 시절에 일반시민들이 북한문화를 경험하기는 지극히 어려웠다. 교육현장에서 북한문화를 경험하였던 적도 없었고, 이따금씩 있었던 문화교류에 직접 참여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북한사람이나 북한문화가 보통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반세기 동안 남북한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그 동안의 통일교육에서 반공교육이 가장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

반인들이 갖고 있는 반공의식, 반북의식은 뿌리가 깊다고 볼 수 있다.⁷⁸⁾ 또한 남한의 반공의식이나 반북의식은 단순히 북한의 정치체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한사람을 포함한 북한 체제의 모든 요소까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통일교육에서 반공주의를 극복하자는 논의가 활발하지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반공주의는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념적으로 반공은 아닐지라도 북한의 경제난 등으로 북한을 무시하는 풍조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문화를 남한의 체제전복을 노리는 무기(반공주의)로 보거나 촌스럽고 뒤떨어진 하류문화(반북주의)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상품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남한의 문화적 풍토이다.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하에서 문화도 하나의 상품이 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문화의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문화에서 상품성이 더욱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상품성이 없는 문화는 도태되는 반면, 보다 자극적인 문화가 양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외향적 사회발전 추진과정에서 서구문화를 으뜸으로 생각하는 문화제국주의⁷⁹⁾ 성향도 팽배하여, 팔리는 문화와 그렇지 않은 문화, 우월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익숙하지 않으며, 더구나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문화를 교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통일담론이 정치적 통합이나 경제제도의 통합에 편향되어 있다는

78) 남한사회의 반공주의가 얼마나 일상화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권혁범,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조한혜정·이우영, 「탈분단시대를 열며」, (서울: 삼인, 2000), pp. 29~65 참조.

79) 문화제국주의는 문화를 차별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특히 서구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보고 비서구 문화를 열등한 것을 보는 경향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사고는 정치경제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dward W. Said,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 김성곤·정정호 역 (서울: 도서출판 창, 1995) 참조. 사이드는 미국의 문화적 인식에 대해서 문화제국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문화제국주의적 사고는 미국 등 서구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해방이후 산업화와 사회발전을 서구화와 같이 생각한 남한도 문화제국주의에 함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점이다. 통일을 이야기하면 남북연합이나 연방제와 같은 통일방안이 항상 중심이 되었으며, 통일은 서로 다른 제도의 통합과 동의어로 생각하여왔다. 반면에 사회문화적 통합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여왔다. 따라서 남북교류에서도 당국자 회담과 같은 정치적 교류나 경제교류가 핵심이었고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통일논의가 권력 담당자나 전문가와 같이 소수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도 사회문화적 통합이나 사회문화 교류를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의 주체가 남북한사회의 구성원 개개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들이 통일논의의 중심이 된다면, 남북한주민들의 만남이 중요해지며 당연히 사회문화적 통합이나 사회문화 교류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3.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

가. 기본 방향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기본 방향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집약된다.

① 남북한은 상대방을 대결 및 경쟁의 대상으로가 아닌 공존·공영의 대상으로 보고 다각적인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제도화·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상호 선전 내지 심리전적 관점에서가 아닌 민족 화합 및 민족 동질성 유지 차원에서 추진한다. 둘째, 상호간 전시적 교류·협력, 이념 및 체제 홍보적 교류·협력, 또는 시혜 및 수혜적 입장에서의 교류·협력을 지양하고 남북 공동 발전을 지향한다. 셋째, 교류·협력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여 상호 체제적 모순이나 현실 상황의 취약점을 자극하지 않도록 상호 배려한다. 넷째, 상호불신과 대결논리에 입각한 등가교환의 상호주의를 지양한다. 다섯째, 궁극적으로 통일지향적인 것이어야 하지만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통일지향성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궁극적으로 상호 이질화 극복 및 동질성 회복, 나아가 상호 동질화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 사

회·문화 교류·협력은 남북한 사회 통합과 남북 문화의 조화라는 민족 화합의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상호 정치 논리를 배제하며 이념적 선입관 내지 편견에 의한 상호 문화적 배척 태도를 지양한다. 셋째, 서로의 사회·문화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넷째, 상호 문화적 차이를 우열 관계가 아닌 문화적 다양성의 차원에서 이해·포용하는 이질성 수용의 자세를 견지한다.

③ ‘남북한간 상호 이해 및 신뢰 형성을 위한 교류·협력’이라는 기본 취지 내지 목적 하에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문화’와 ‘정치’를 별개의 고유 영역으로 인식함으로써 남북한간 정치·군사적 쟁점 발생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교류·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정치·군사적 돌출 행위에 대한 과민 반응, 또는 즉각 대응을 지양하며, 일관성 있는 지속적 교류·협력의 확대·강화를 통해 상호 이해 및 신뢰 형성을 도모함으로써 북한 스스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 셋째, 교류·협력의 지속성과 일관성은 유지하되 남북한 사회·문화 변화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

④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북한 사회 변화 및 체제 개혁·개방을 자극·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있어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전향적이고 양보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북한의 정치적 우려를 불식시키며 스스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 둘째, 북한 사회 변화 및 체제 개혁·개방 유도를 위한 비정치적 수단으로서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최근 들어 점증하고 있는 남북한간 언론 및 종교 교류·협력을 보다 더 적극화한다. 셋째, 경제난 해소와 관련한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욕구에 부합하는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한다.

⑤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무계획적인 인적 교류 확대를 지양하며 중·장기적 전략 하에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관련 단체들간 조정·협의기구를 통해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실효성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한다. 둘째, 개별적·경쟁적인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추진을 지양한다. 셋째, ‘부속합의서’에

명시된 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교류·협력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협의, 실천한다. 넷째, 종합적·체계적인 중·장기적 사회·문화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나. 세부 추진 방안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은 다음의 여덟 가지로 요약된다.

①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이념적 요소를 배제하며 남북한의 상호 이익과 보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상호 수용 가능한 주제를 선택하며, 문화적 동질성이 부분적으로라도 상존하고 있는 분야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곧 남북한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주제 선정을 뜻한다.

②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한의 상호 이질화 극복 및 동질화를 위해서는 민족문화 중심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이는 특히 현실적으로 남북한 모두 ‘민족 문화의 계승 내지 창달’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 추구하고 있음을 증시한 데에서 비롯된 제안이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그의 저술 『주체문화론』(1992년 발간)에서 민족 문화 유산의 비판적 계승 발전이라는 기본 원칙에 의거하여 근대 문학, 실학과 문학 등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촉구하는 한편, 민요를 비롯한 민족음악 유산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봉건적·반인민적인 것으로 규정, 비판해 온 궁중 음악·무용 등 궁중 예술에 대한 신중한 대처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를 통해 이루어진 민족 문화 유산에 대한 북한의 재평가는 남북 민족문화 교류·협력 활성화의 가능성을 보다 더 높여주고 있다.

③ 북한의 열세적 입장과 소극적 태도를 감안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우선 실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북한이 나름대로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선호하는 분야이면서, 북한 사회·문화의 강점 내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우선 실시한다.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타결 과정에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적극적인 입장

을 보인 분야는 예술 작품과 문화 유물의 상호 교환 전시, 상호 예술단의 교환, 체육분야 교류·협력이었다. 둘째,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경험 이 있는 분야를 우선 실시한다. 셋째, 다수의 인적 교류에 소극적인 북한의 입장을 감안하여 교류 인원을 최소화하면서 교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한다. 이와 관련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야가 영화필름 교류이다. 영화필름 교류는 인적 교류를 확대하지 않고도 남북한간 상호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상호 이질화 극복 및 동질화에 기여하리라는 판단에서이다. 넷째, 북한이 교류협력의 경제적 득실을 타산하여 교류협력에 적극 호응하는 분야를 선택한다.

④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북한의 개방·개혁과 남북관계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물꼬가 트인 언론분야의 교류·협력을 제도화·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최근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의 확산·심화와 남북한간 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대중문화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주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 공연물을 확보해야 하며, 공연물 선정 시에는 분단 이전 우리 민족이 공유했던 정서를 적극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예로 가요 부문에서는 「낙화유수」, 「타향살이」 등 1930년대에서 40년대의 일제치하에서 유행했던 가요를 선정함으로써 민족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가⁸⁰⁾ 「신라의 달밤」, 「알뜰한 당신」 등 월북 작사자들의 노래를 선정함으로써 화해·협력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또한 연변가요로 알려져 북한에서 유행하고 있는 남한가요를 선정함으로써 남북한간 문화적 친밀감을 도모한다. 남북한 생활문화의 상호 인식 도모를 위한 대중문화 교류에 있어 특히 영화는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북한 영화산업의 수준과 김정일 위원장의 영화·예술 및 남한영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 등으로 미루어 볼

80) 북한의 월간 문학잡지 최근호는 김정일 위원장이 “광복 전에 유행했던 대중가요들은 시대적 및 계급적 제한성은 있으나 총체적으로 볼 때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요소가 많으며 민족적 정서가 짙게 구현된 민족문화유산”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고 밝히고 있다. 리동수, “광복전 대중가요와 민족문화유산,” 『조선문학』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8), p. 56.

때에도 남북 영화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기대해 볼 만하다. 1990년대 이래 가요와 영화를 비롯한 북한의 대중문화는 외피적인 것에 불과할 지 모르나 현저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 대중문화의 변화는 작품에서 사상성과 혁명성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서정성과 대중성을 강화하고 모든 장르에 있어 소재 및 주제를 다양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⁸¹⁾ 또한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하듯 2001년 『제1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공연에서는 미국의 친선예술단들이 미국 컨트리 음악과 팝송을 열창하였으며 이러한 공연이 북한 중앙TV를 통해 중계되기도 했다. 1990년대 이래 나타나고 있는 북한 대중문화의 변화는 2000년대 들어서도 현재와 같은 양상 및 추세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할 때, 남북 대중문화 교류·협력의 적극화는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 및 남북한 생활 문화의 상호 이해에 기여하는 바 클 것이다. 지난 4월 평양과 함흥에서의 남한 가수 김연자 단독 공연은 이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⑥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연관성이 있는 남북 단체 및 지역간 자매 결연을 추진하며, 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고 상호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남북 지자체간 교류·협력사업으로 우선 선정하여 추진한다.

⑦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원칙 수립 및 정치적 조정은 정부가 담당하고 실천 사항은 민간단체들이 집행하는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이는 곧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민간 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확대·강화 및 다변화를 위해 각종 규제 조치를 완화·철폐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며 정부 및 관변 단체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주도를 지양해야 한다.⁸²⁾

81) 임순희, 『북한의 대중문화: 실태와 변화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94~101 참조.

82) 국민의 정부에 의한 대북포용정책 실시 이후에도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주로 정부와 갈등관계에 있지 않은 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지적이

⑧ 정부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확대,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관련 정보·자료 제공 및 재정지원 등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관련 연구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속적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각종 합의서 및 협정 체결과 구체적 세부규범 마련을 적극화한다. 셋째,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를 지원한다.⁸³⁾ 넷째, 남북 기본합의서에 규정된 사회·문화 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가동을 유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노력한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사회·문화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며 교류·협력 활성화와 상충의 소지가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재검토하여 점진적으로 개정·정비한다.

4.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정책 방안

가. 관련 법 및 제도 개선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및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 다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방안이 구체화되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며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 관련 법·제도는 그 동안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사회문화 교류를 저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들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 관련 법 및 제도 개선의 기본 방안은 다음의 일곱 가지로 집약된다.

있다. 조한범 외, 『남북한 학술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pp. 72~73 참조.

83) 1991년 공식 설치된 이후 남북협력기금은 주로 쌀·비료 등 대북지원, 대북경수로건설사업 지원,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등 정부차원의 대북지원과 경제협력 분야에 집행되었다.

① 내용의 다양화와 양적 증대에 따른 현실성·실효성 제고

남북 정상회담이래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이전과는 달리 내용의 다양화와 양적 증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전에 소수 선별된 인원의 대북제의 및 접촉, 방문 등에 관해 규정한 현행 사회문화 교류 관련 법·제도 역시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현실성·실효성 있게 개선되어야 한다. 『남북 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과 시행령, 국가보안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서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와 상충되는 조항들은 개정, 또는 폐지를 적극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⁸⁴⁾ 국가보안법 가운데 특히 ‘고무·찬양·동조죄(제7조)’와 ‘불고지죄(제10조)’ 그리고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제2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와 관련해 현실성이 없는 조항들이며, 북한을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한 남북교류협력법과도 법체제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1990년 8월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역시 1991년 12월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와 상충적 요소들이 적지 않으며 헌법에도 위배된다.

② 사회문화 교류의 자율성과 독자성 확보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의의와 중요성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다.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한간 공통적 사회·문화 기반 구축 및 상호 의존 관계 수립, 남북한간 이질화 극복 및 동질화를 위한 필수 선행 조건, 북한 사회 변화 및 체제 개혁·개방 유도를 위한 비정치적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치 등이 그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다. 이와 같은 의의와 중요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지속성 있는 사회문화 교류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여기에서 관건은 사회문화 교류 추진에 있어 자율성과 독자성의 확보이다. 따라서 사회문화 관련 법·제도는 기존의 정치·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선에서 사회문화 교류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최대한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84) 지난 1992년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화해공동위원회」 산하기구의 하나로 「법률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합의했으며, 이 협의회의 기능에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문제 협의 해결(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4조)”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철폐문제 토의 해결(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부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되어야 한다.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③ 사회문화 교류 관련 법적 분쟁 처리 방안 수립

남북 사회문화 교류가 다양해지고 증대함에 따라 관련 민·형사 사건 발생의 개연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바⁸⁵⁾, 이를 처리하기 위한 관련 법제 정비를 서두를 필요성이 있다. 남한은 현행 헌법 전문, 제2조(국민), 제3조(영토조항), 국적법 및 국가보안법상 대한민국의 한반도 내 유일합법성(정통성)을 근거로 휴전선 이북지역에 대한 북한의 재판관할권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북한 역시 노동당규약 전문과 개정헌법 제1조, 국적법 및 형법상의 대남적대적 반국가사범 관련 규정들을 근거로 우리의 재판관할권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 교류 관련 민·형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특히 방북중에 있는 남한주민이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법적 처리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므로 관련 법제 정비 수립 및 강화의 필요성이 높다. 관련 법제 정비는 북한과의 신중한 협의를 요구하는 중요 사안이다.

한편 남북 사회문화 교류에 있어 가장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학술분야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학술분야에서 북한측 소유의 저작권과 관련한 시비와 함께 그 동안의 무단 사용에 대한 보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거나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한 분야의 경우에서 남한측의 무단사용 여지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⁸⁶⁾

④ 분야별 협정체결을 통한 사회문화 교류의 제도화 및 활성화

6·15 남북공동선언에 명시된 바, 남북한은 사회·문화를 비롯한 제반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실천방안을 적극 모색, 추진해야 하며, 방안 모색 및 추진에 있어서는 분야별 협정 체결을 통해 제도화를 도모해야 한다. 통일 이전 동·서독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확대되기 시작한

85) 왕래가 비교적 자유로웠던 동서독간 교류의 경우, 상당수의 서독주민들이 동독지역에서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일시적으로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김학성,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26-27 참조.

86) 조한범, 『남북한 학술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pp. 53~54.

것도 분야별 협정 체결 이후였음은 시사하는 바 크다.

⑤ 관련 법·제도의 세분화 및 구체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교류협력의 모든 분야에서 예상되는 제반 문제에 대한 포괄적 규율이다. 따라서 그 내용이 세부적·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추상적이므로 남북 교류협력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각 분야별 규율이 명확하지 않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교류협력의 유형을 남북교역과 남북협력사업으로 구분하고 협력사업을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제2조4호)”라고 규정하여 사회문화 협력사업의 다양성 및 개별적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

⑥ 경쟁적 계약으로 인한 폐단 방지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일회성의 이벤트 사업화하여 교류협력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저해한 주요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교류협력 주최 단체들간의 지나친 공명심과 경쟁의식에 따른 개별적·경쟁적 대북 제의 및 접촉 추진이다. 이와 같은 개별적·경쟁적 대북 접촉은 과도한 ‘입북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북한과 남한의 두 단체가 동시에 이중계약을 맺는 불상사를 초래함으로써 교류협력 주최 단체들 간의 갈등과 반목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가 무산되고 마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따라서 특히 공연예술 관련 교류협력에 있어 경쟁적 계약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⑦ 남북 사회문화 교류 관련 행정 절차의 간편화

남북 사회문화 교류 내용의 다양화와 양적 증대에 따른 현실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 관련 행정 절차를 대폭 간편화해야 한다. 실제적으로도 남북 사회문화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교류 참여자들이 요구하는 것들 중의 하나는 관련 행정 절차의 간편화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주민 접촉과 관련하여 접촉승인 처리기간의 재단축, 접촉승인 유효기간 연장, 안내교육 폐지, 접촉결과보고 방식 및 사후신고제도 개선 등이 요구되며, 북한방문과 관련해서는 방문승인처리기간 단축, 수시방북 증 및 방문기간 연장제도 개선, 방문결과보고 방식 개선 등이 요구된다.⁸⁷⁾

나. 분단 및 냉전문화 극복

사회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남한 내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반세기 동안의 분단구조는 북한체제나 북한문화에 대한 적대감을 심화시켜왔다. 이 결과 남한 내에 분단문화, 냉전문화가 구조화되고 내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구조를 타파하지 않는다는 사회문화 교류의 활성화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1) 국보법 개폐와 냉전문화 극복

자본주의적 발전은 일반적으로 계급·계층의 분화에 조응하는 사회세력의 성장을 보게 되며, 그에 따라 자본주의적 이념의 다양한 분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즉,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기회 균등의 원리가 반영되는 사회민주주의나, 환경·생태계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체제를 호소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만이 시장경제체제를 골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유일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단순화된 사상이나 폐쇄적인 사고구조로 인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체제에 대한 창의적인 상상력은 근원적으로 차단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색깔론’의 망령을 떨쳐버리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본다.

우리 사회의 산적한 개혁과제 가운데 특히, 재벌개혁의 당위성과 중요성은 오랫동안 강조되어왔다. 물론 재벌개혁의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개혁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입장과 그에 대한 비판적인 야당의 입장이 동일할 수 없다. 그러나 재벌개혁 자체를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재벌을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해체하려는 ‘반자본주의적 발상’이라면서, “그같은 경제개혁은 사회주의적 변혁이 아니냐”고 힐난식의 비난을 제기한 정당도 있었다. 이는 재벌개혁 문제를 ‘사회주의적 변혁’ 등의 자극적인 용어로 규

87) 조은석 외,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47~55, 74~78 참조.

정하여 정부의 개혁정책 자체를 색깔론으로 점화시키려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 더욱이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만 무장해제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김대통령 주변에는 사회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 아니냐”하는 등의 자극적인 용어를 구사하면서까지 개혁정책을 색깔론으로 변질시키고자 하는 모습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⁸⁸⁾

개혁이나 보안법 등의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한 상호 비판과 설득의 통로를 처음부터 외면한 채, 상대방의 정책이나 입장을 일단 색깔론으로 몰아붙이고 보자는 분위기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역사적·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색깔론을 통해 대중적 공포의식의 동원을 자극하는 냉전논리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사고의 경직성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사상의 자유 자체를 억압하고 질식시키는 국가보안법 자체에 근본 원인이 있다. 여기서 보안법 문제에 대한 법조인들의 견해를 인용해 보자.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의 상실이며 공산주의에 대한 패배감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그 체제의 우월성을 믿는 한 모든 사상과 이념을 학문과 언론의 자율적 논의의 장에 맡겨 두어야 한다. 공산주의 사상을 형벌로 극복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그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우리 사회에 독재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정착되고 사상의 자유로운 논의가 보장됨으로써 극복되는 것이다.⁸⁹⁾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토대로 다양한 이념적 주장이 공론적 영역에서

88) “8·15 대통령경축사 반응: 본질 흐리는 ‘색깔론쟁,’” 『동아일보』, 1999. 8. 19. 참조.

8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민주악법 폐기에 관한 의견서』 (서울: 역사비평사, 1989), p. 29.

검토되고 비판받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구현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안법 폐지 문제를 이해하는 입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언론개혁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인구는 전후세대가 차지하고 있다.⁹⁰⁾ 전후세대의 인구구성비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사회의 대북인식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의 경우, 교육과 언론매체에 의해 영향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가 21세기의 세계사적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민족통일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난 세기의 천연된 개혁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가 차원의 총체적 개혁을 위해서는 언론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개혁은 모든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개혁의 전제이고, 언론의 개혁 없이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전체가 성역 없는 개혁대상이 되어 정치권을 비롯하여 국가안보기관 등 권력기관마저 모두 공개와 투명화를 지향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는 달리 언론기관만이 유일하게 성역으로 남아 있는 불균형적 현상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문개혁의 역사적 의의는 한국 최후의 성역 개방과 민주화의 정착이라는 과제의 해결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신문개혁이 단행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고 민주적 가치와 규범이 자리잡아 나갈 수 있게 된다.

(3) 통일교육

통일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의 문화’를 창출하는 데 있다. 평화는 국가들 사이이든 시민사회 내이든 간에 그 자체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침윤된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잡아야 한다. 이를테면 ‘문화의 힘’을 통해

90) 1954년 이후 출생의 전후세대는 전체 인구의 75.5%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6) 참조.

서만 평화의 견고한 토대 구축이 가능한 것이다.

평화의 문화는 일견 강대국의 압제와 피침의 역사 속에서 고통받아온 약소민족의 도덕적 외침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대국의 탐바구니 속에서 침략과 압제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약자의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인류 평화에의 민족적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김구 선생의 이상과 의지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평화의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평화교육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통일교육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의 성패는 사실,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을 막론하고, 교육의 방법론 즉, 테크닉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 효율성과 관련한 토론식·강의식·자료활용·현장답사 등의 강의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통일교육의 답보 상태는 단순한 교육 테크닉의 문제라기보다는 통일에 관련된 인식론적 전환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당연히 현실유지적 세계관이나 안보중심적 체제논리와 급진적으로 단절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통일교육은 지식전달 교육이 아니다.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자각적 인식의 계기를 얻고, 타자와의 관계망을 통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재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통일에 대한 실천적 주체로 스스로를 자각하고, 그러한 자각적 존재들의 연대의 장으로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은 통일과정에서나 통일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실천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전통과 가치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통일교육의 핵심 내용은, 한편으로는 전쟁의 위기감이 사라지지 않은 특수한 분단상황을 고려한다면, '평화교육'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 재정립

기본적으로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정부를 포함한 정치적 집단의 사회문화 교류는 어떠한 경우거나 정

치적 의도를 포함하기 마련이다. 사회문화의 근본적으로 갖기 마련인 정치성과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남북 사회문화 교류가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문화 교류의 기본 목적 즉, 사회문화의 교환을 통하여 상호이해증진을 위해서도 최대한 사회문화 교류를 탈정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복잡한 남한의 정치적 지형상 남북문제를 항상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성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히 정부가 문화교류에 전면에서 나서는 것은 그 자체로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문화교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주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으나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정부의 통제도 근본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남한의 문화정책이 다원주의 문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문화정책의 방향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문화의 수용 여부도 가능한 시민사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문화 교류의 전반적인 틀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부터 정부와 민간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문화 교류와 통일 그리고 대북정책은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사회문화 교류의 실질적 주체가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반대로 민간부분의 입장이나 역량을 무시한 대북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일종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입장을 조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각종 법령의 정비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문화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정비하는 것 그리고 기존 교과과정 내에 북한사회문화를 포함하여 교육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 민간부분의 견해를 폭넓게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는 사회문화 교류의 물적 토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비용

이나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민간 부분의 사회문화 교류는 자본주의적 원칙에 따라 상업적 이익이 보장되는 분야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필요하면서도 상업적 이해에서 멀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⁹¹⁾ 기존의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거나 문예진흥기금을 일부 사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북한관련 정보 획득에 한계를 보이는 민간부문의 현실을 고려할 때,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정부의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민간부문들은 관련 집단간 의사소통의 통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체간의 무분별한 경쟁은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기는 커녕 사회문화 교류의 침체를 조장할 수 있다. 공동 관심사를 갖고 있는 단체 간의 정보교환과 분업체제의 구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민간부문은 특정집단의 이익에 부합하기 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문화교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사업수행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한 일반인들의 북한인식 및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91) 전통예술에 대한 지지정책을 참고할 수 있다.

VI.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 프로그램

1.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단계별 사회문화 교류 방안

분단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사회문화 교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북한 간에 화해 분위기가 고양되면 사회문화 교류가 활성화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사회문화 교류도 위축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사회문화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 교류가 남북관계에 일방적으로 종속되거나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통일이 단순히 체제나 제도의 통합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통일의 완성은 사회문화공동체의 형성이며, 사람들 간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을 위한 필요조건 가운데 하나가 된다. 이는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통일 이후 많은 사회문화적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문화 교류의 활성화 자체가 남북관계 개선이나 평화정착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개선의 출발점이 ‘핑퐁외교’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적대적인 관계를 개선하는 데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분야의 교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 적대감을 약화시키고, 평화를 정착하는 데 사회문화 교류가 기여할 바가 많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하며, 동시에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은 제도적 준비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사회문화교류 프로그램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첫째, 남북한관계의 진전이라는 상황과 부합하여야 한다. 적대적 상황

인가 아니면 화해협력의 상황인가 평화정책의 단계인가에 따라 사회문화 교류의 주안점과 구성은 다를 수 있다. 또한 남북한관계의 진전은 필연적으로 남북당국간 회담을 포함하여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동반한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사회문화관련 부속합의서가 체결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가속화되면 문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사회문화 교류의 기본 틀은 협정의 내용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남북관계 변화는 남북한 내부의 제도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화가 정착된다면 국가보안법 등의 개폐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문화에 대한 제한도 완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관계뿐만 아니라 남북한 내부의 현실도 사회문화교류 프로그램 구축과정에서 엄격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문화교류 자체가 화해협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1985년 이산가족 상봉단과 더불어 진행되었던 예술단 교환의 경우는 사회문화 교류가 상호이해 증진보다 남북한 이질화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 주민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화해협력 분위기를 고양하는 데 사회문화 교류가 통로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지만, 모든 사회문화 교류가 반드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사회문화 교류가 활성화되었지만 몇몇 교류의 경우는 교류를 추진하는 주체가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켜, 정치경제적 이해를 도모하는 등 교류의 결과보다는 교류 자체가 주는 이해에 좌우된 경향도 없지 않다.⁹²⁾ 특히 남북한 간에는 문화적 적대감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류의 실질적 성과를 치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회문화 교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류

92) 특히 김대중 정부 수립 이후 사회문화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특정 단체나 기업이 교류에 나서면, 경쟁관계에 있는 단체나 기업이 교류에 뛰어드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교류자체의 성사 여부가 중요해진다. 북한은 이를 고리로 교류의 반대급부를 더욱 많이 요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본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만이 사회문화 교류에 나설 수 있었고, 사회문화 교류의 저변은 취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의 내용이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현이 불가능한 교류는 의미가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남북한관계나 남한내부의 상황뿐만 아니라, 교류를 추진하는 주체나 교류 상대인 북한의 역량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 직후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하려고 하였던 경우가 있었는데, 북한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이었다. 이산가족의 상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남한에서는 이산가족하면 월남자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월남자들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를 배신한 사람들이 된다. 따라서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이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된다. 이 밖에도 교류 아이템을 남북한 실질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가 여부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⁹³⁾

넷째, 사회문화 교류의 개념을 확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문화 교류를 인적 교류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회문화교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인적인 접촉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북한소설을 남한에서 출판한다거나, 북한영화를 남한TV에서 방영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문화 교류가 될 수 있다. 최근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등 New Media를 통한 교류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류는 북한의 사정과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할 사회문화 교류 프로그램들은 남북한관계의 변화와 연관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대결단계

남북한이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체제경쟁을 하는 과정이다. 상대 체제의 붕괴를 추구하고, 교류를 하더라도 교류를 통해 자신들 체제의 우

93) 예를 들어 한때 윤이상 음악제를 남북이 개최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 당시는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음악제가 성사되지 못하였지만, 당시 남한의 어떤 오케스트라도 윤이상의 주요 작품을 완주할 수 있는 편성을 갖고 있지 못하여 기술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위를 과시하거나, 상대 체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적대적 대결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사회문화 교류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평풍외교와 같이 정치적 색채가 가장 얇은 체육분야가 적당하다. 남북한 간의 직접교류가 어렵다면 국제대회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의 중재를 활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공동의 이익을 구현할 수 있는 문제로서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교류 등도 적절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준비를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문화에 대한 연구, 교류 전문가의 양성, 교류 프로그램 구축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 교류 주체는 정부나 정부관련 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정부 간의 적대적 감정이 높다면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민간단체가 사회문화 교류의 물꼬를 틀 수도 있을 것이다.

② 협력단계

남북한이 부분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는 않지만, 공동이익이 구현되는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 제한적이거나 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사회문화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회문화 교류가 화해협력의 분위기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남북한당국은 내부적으로 사회문화 교류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협정의 체결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이 시기의 사회문화 교류는 두 가지 차원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하나는 남북한이 사회문화 교류를 통하여 유무형의 이익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계적인 상호주의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술교류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될 수 있

고, 북한 공연단의 공연으로 남한사람들이 북한문화를 경험하는 효과를, 북한이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면 이것도 상호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사회문화 교류를 통하여 분단 반세기 동안의 사회문화적 이질화가 증폭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거나 체제선전의 계기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무분별한 교류사업을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시민사회는 보다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계적으로 사회문화 교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을 강구하여야 한다.

북한이 체제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사회문화 교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 상대적으로 장점을 갖고 있는 분야나 북한에게 가시적으로 이익이 구현될 수 있는 분야의 교류를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재 보전이나 언어 분야가 전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과학기술분야의 교류가 후자에 해당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대편의 사회문화체제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학교교과 내에서 북한의 사회문화를 연구하는 과정을 포함하도록 하고, 북한문화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현재 통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실을 북한 문화체험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조하면서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여건을 확충하는데 집중하고, 민간단체가 점차적으로 사회문화 교류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평화공존단계

남북한이 상호체제를 인정함으로써 공존의 토대가 마련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의 사회문화 교류는 한편으로는 남북한 적대감을 해소하는 등 분단구조를 청산함으로써 대결구도로 복귀하려는 시도를 미연에 차단하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통일문화 구현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사회문화 교류는 광범위하게 실시될 수 있을 것이며, 인적 교류와 공동작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교환방문 공연을 포함하여 문학예술작품의 공동창작 그리고 인적 교류도 시행될 수 있다. 문학 예술인이나 학자 등이 상대지역에 장기 연수를 실시하고, 언론사들은 특파원을 상대지역에 상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체육분야에서는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하고, 국제대회의 공동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남북한문화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남북한 공동 문화사 정립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시행한다. 남북한 방송 시스템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대방 방송에 대한 자유로운 시청을 허용하도록 한다.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회적인 행사보다는 사회문화 교류의 정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광범위한 사회문화 교류가 문화충격으로 이어지거나, 상업주의 문화가 득세할 위험성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한의 자극적인 문화가 북한의 사람들에게 급속하게 전파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문화 교류의 지침을 작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공존단계의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문화재 교류와 같이 정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문화 교류의 지원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사회문화 교류의 내용이나 방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상업성이 없으나 필요한 교류사업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개입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민족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장기적인 차원에서 통일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공동의 문화적 기반을 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언어와 역사 등 분단기간 동안 이질화된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④ 남북연합단계

남북연합단계는 상이한 이념과 이질적인 정치·경제 체제 및 두 정부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협력기구를 형성하여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통합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⁹⁴⁾ 남북정상회의와 각료회의가 구성되는 등 남과 북이 실질적인 통합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문화 교류도 사회문화적 통합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단계의 사회문화 교류는 일차적으로 사회문화관련 공동 조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남북연합의 의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고유의 기구나 조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남북이 공동의 참여하는 단체가 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체육의 경우 남북한의 체육단체들은 기존의 조직을 유지하면서 남북체육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체육위원회가 국가대표의 선발 운용 그리고 국제대회 파견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분도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된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분야별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프로그램

개별적인 사회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앞에서 이야기한 남북관계의 발전 단계의 틀에 따라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표 12 참조>.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가 다소 경색되어 있기는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은 대결구도에서 협력관계로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협력단계와 평화공존단계 그리고 연합단계로의 진전을 예상하면서 분야별로 사회문화 교류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94) 남북연합에 대해서는 조민, 「제2차 정상회담 대비 남북한 통일방안 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01) 참조.

<표 12>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사회문화 교류

	대결단계	협력단계	평화공존단계	남북연합단계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대감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해분위기 정착 ○ 상대문화 접촉기회 확대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 교류의 양적 확대 및 정례화 추진 ○ 남북한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 통일문화 구현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관련 공동조직 구성 ○ 사회문화적 통합에 대한 실질적 대비
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관련 법률 및 제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법 등 교류저해 법령 개폐 ○ 저작권 등 관련법령 정비 ○ 남북문화협정 체결 ○ 사회문화교류창구 정비 ○ 사회문화교류협약(가칭) 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교류지원법 제정 ○ 사회문화교류 지원 기금 확충 ○ 문화유통기구 설립 ○ 사회문화교류지침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관련 공동조직의 남북 공동 조직 구축 ○ 사회문화관련 법령 및 제도 전면적 정비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징적 교류사업 ○ 국제대회 공동참여 ○ 교류전문가 양성 ○ 교류프로그램 구축 ○ 북한문화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문화 국내출판 사업 ○ 교류행사(음악회, 전람회 등) ○ 분야별 남북한공동연구 확대 ○ 상대편 각종 행사에 참여 확대 ○ 방송, 인터넷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술 문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교류행사의 정례화 추진 ○ 남북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 확대 ○ 국제기구에 남북한 공동진출 ○ 국제대회의 공동개최 ○ 민족문화사 복원을 위한 공동연구 ○ 공동창작 실시 ○ 언론인을 포함하여 상대지역에 장기 파견 및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단체의 설립 ○ 남북통신망 구축 ○ 각종 문화행사의 단일화 추진 ○ 통일문화사 추진 ○ 언어를 비롯하여 각종 부분의 표준화 추진
교류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도 ○ 민간단체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민간단체 공동 주도 ○ 정부는 기반확충, 민간단체는 실질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분야를 제외하고 민간단체가 중심 ○ 정부는 지원체제 확충에 치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민간부문이 역할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
기타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 활용 ○ 비정치적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사업이 상호이익에 부합하도록 추진 ○ 경쟁적 교류사업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충격 대비 ○ 상업화 경향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지향적인 사회문화 교류 추진

① 문학예술분야

	협력단계	평화공존단계	남북연합단계
공연 예술 (영화·연극·무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예술단 교환 방문 공연 ○ 대중예술인 교환 공연 ○ 평양영화축전, 부산영화제 등에 상대편 작품 초청 ○ 북한영화제 개최 ○ 북한연극제 개최 ○ 북한무용제 개최 ○ 북한영화 상설 상영관 확보 ○ 관련단체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영화합작 ○ 영화촬영소 공동 이용 ○ 남북 극단 합동공연 ○ 세계영화제 공동진출 ○ 영화공동배급 ○ 남북한 영화 및 연극 자료 교환 ○ 남북한 영화 및 연극사 서술 ○ 연기자 및 연출가 등 관련자 파견 ○ 전통무용사위 연구 ○ 공동 연수교육 실시 ○ 남북한 극단 자매결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영화인협회 구성 ○ 남북연극인협회 구성 ○ 공동심의위원회 구성 ○ 공동극단 구성 ○ 영화배급망 구축
일반 문학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문학전집 발간 ○ 북한문학예술관련 강좌 개설 ○ 북한미술전 개최 ○ 북한음반 발매 ○ 북한문인 초대 강연회 ○ 북한문학예술관련 학술 세미나 개최 ○ 남북한간 저작권 보유 실태 조사 ○ 관련단체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문학전집 발간 ○ 공동문학지 발간 ○ 공동 미술대회 개최 ○ 공동 음악대회 개최 ○ 공동 문학창작캠프 운용 ○ 전통악기 개량사업 단일화 ○ 예술인대회 개최 정례화 ○ 남북통합예술사(음악·미술·문학) 서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예술교육학교 운영 ○ 남북문학인협회 구성 ○ 남북음악인협회 구성 ○ 남북미술인협회 구성 ○ 통일예술사 서술 ○ 공동미술관 건립

② 체육분야

협력단계	평화공존단계	남북연합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대회 동시입장 ○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 참가 ○ 국제기구 협력강화 ○ 태권도시범단 교류 ○ 씨름 등 민속경기 교환 ○ 훈련용품 지원 ○ 체육과학서적 지원 ○ 북한체육 실태조사 ○ 북한체육관련 세미나 개최 ○ 관련단체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경기 정례화(전문선수 및 일반시민 참여 경기) ○ 국제경기대회 공동주최 ○ 지도자 교환 파견 ○ 공동 훈련실시 ○ 전국체전 및 공화국선수권 대회 등 주요 대회 상대 선수단 참여 ○ 프로리그 등에 개별선수 영입 ○ 체육시설(경기 및 훈련시설) 공동사용 ○ 체육경기 교차 중계방송 실시 ○ 체육과학 공동연구 ○ 민속경기 통합 방안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위원회 공동조직 구성 ○ 산하경기단체 공동조직 구성 ○ 체육대학 등 체육관련 교육기관 자매결연 ○ 비무장지대 체육시설 건립 ○ 공동훈련시설 건립 및 운영 ○ 국가대표 공동선출 ○ 생활체육 조직 통합 ○ 국내대회 통합 추진 ○ 프로리그 통합운영(북한지역팀 구성 지원)

③ 방송·언론분야

협력단계	평화공존단계	남북연합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교류가이드라인 작성 ○ 상대지역 현지취재 허용 ○ 북한언론현황조사 ○ 북한제작프로그램 방송 ○ 언론사교류 ○ 기자회견 등 관련단체 교류 ○ 북한취재가이드북 제작 ○ 방송시설 등 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 방송청취 허용 ○ 상대방 신문배포 허용 ○ 언론사 상주특파원 배치 ○ 공동제작 프로그램 확대 ○ 상대방 기자에 취재권 보장 ○ 방송통합을 위한 기술적 문제 논의 ○ 국제언론기구 공동 진출 ○ 방송시설 공동이용 ○ 언론인 교차 연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통신사 설립 ○ 방송송출 방식 통합 ○ 언론 관련 단체별로 공동조직 구성(언론협회·기자협회·PD협회·언론노조 등) ○ 기자들의 교차 배치 ○ 공동배급제 실시 ○ 공동 취재규약 실시 ○ 출입처 상호 개방

④ 학술분야

협력단계	평화공존단계	남북연합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학문 성과 국내 개방 ○분야별 학술교류 ○북한학자 초청세미나 ○분야별 북한 연구성과 정리 ○학회별 교류 ○연구관련 기자재 지원 ○남북한 언어 실태조사 ○연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공동세미나 정례화 ○역사 등 학문별 남북한 쟁점 관련 공동연구 실시 ○공동저서 출간 ○남북한 학자들이 참여하는 분야별 공동연구 추진 ○학술지 상호개방 ○학자 교환 연수실시 ○연구자료 공유 ○학문적 업적 상호인정 ○학위 인정 ○학문 용어 통합 연구 ○언어 통합방안 공동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학회 구성 ○공동연구소 설립 ○공동학술지 발간 ○분야별 남북한 쟁점 합의 ○대학·연구소 등에 상대방 학자 충원 ○언어 통합 추진 ○국어사전 편찬 ○학문용어 통합 ○역사서 서술 ○단위 표준화 추진

⑤ 문화재 및 관광분야

협력단계	평화공존단계	남북연합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한 문화유물 및 문화재 실태조사 ○문화유물 교환 전시 ○무형문화재 공연 실시 ○관련단체 교류 ○교차 관광 실시 ○관광특구 지정 ○관광절차 정비 ○북한 관광지 개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문화유산 공동 신청 ○문화재 복원 공동 실시 ○무형문화재 교류 정례화 ○무형문화재 통합 연구 ○남북한 연계관광 코스개발 및 운용 ○교차 관광지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보 등 주요 문화재 재지정 ○문화재 통합관리 ○관련 분야 공동조직 구축 ○남북공동 관광공사 설립 ○자유관광 실시

⑥ 청소년 및 여성 분야

협력단계	평화공존단계	남북연합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청소년 실태조사 ○청소년 단체 교류 ○청소년의 상대지역 방문 ○북한문제에 대한 남한 청소년의 관심 확대 ○북한여성 실태조사 ○정신대문제 관련 남북한 입장 조율 ○여성단체 교류 ○여성 대상 북한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공동캠프 시행 ○청소년 문화교류 정례화 ○청소년 교환 연수 실시 ○청소년 시설 상호 이용 ○분야별 여성교류 확대 및 정례화 ○정신대문제 등 여성문제에 공동대처 ○남북한 여성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 청소년 단체 설립 ○공동 청소년 훈련 시설 건립 ○청소년 및 여성 관련 국제기구에 공동 진출 ○공동 여성단체 설립

VII. 맺음말

사회문화 교류는 남북한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평화를 정착하는 데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통일 이후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통일 이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통일 한국을 건설하는데 사회문화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지난 기간 동안의 사회문화교류의 과정을 돌아볼 때, 사회문화 교류도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지만, 사회문화 교류가 역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화를 정착하고, 화해협력의 시대를 다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사회문화 교류의 다양화와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지라도 교류의 효과는 접근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반세기 동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남과 북은 상대 체제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그리고 문화체제에 대해서도 상호비판만 하여 왔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사회문화 교류는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보다는 서로의 거리감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작정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사회문화교류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 동안 사회문화 교류를 저해하였던 각종 제도적 장치,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정비하는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문화 교류가 남과 북의 사람들이 만나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대 체제나 사람들에 대하여 공부하거나 상대편 문학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 요소나 문화적 요소가 만나는 것도 유의미한 사회문화 교류라는 점을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문화 교류의 폭은 대단히 넓어질 것이며, 동시에 남북관계의 경색여부에 관계없이 사회문화 교류는 꾸준히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문화 교류가 지향하는

바가 상호이해 증진이라고 한다면 상호주의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안 한다고 남한도 안 한다는 식의 편협한 상호주의는 특히 사회문화 교류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세기 동안 독자적으로 구축된 남북한 사회문화체제를 고려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사회문화 교류과정에서 부작용은 불가피하게 과생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부작용을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부작용을 통제될 수 있는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하는 사회문화교류의 성격, 남북관계, 남과 북의 사회문화적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교류를 추진한다면 부작용은 줄어든거나, 최소한 발생한 부작용들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 교류는 다른 교류협력사업과 달리 심리적 태도나 사회적 분위기 등에 더욱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상대 사회체제를 어떻게 보느냐, 상대 주민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상대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태도에 따라 같은 교류사업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교류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상대체제와 주민 그리고 상대 문화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는 사회문화 교류 과정의 부작용을 축소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교류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사회문화 통합과정에서 필요없는 갈등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

부록: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 약사

1970	1971.7.4.	남북공동성명
	1971.8.29~9.2	남북적십자회담(평양), 남북조절위원회
	1971.2.27	탁구단일팀 구성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탁구회의
1980	1984.4.9.	제1차 남북체육회담
	1984.9.29~10.4	북적 수재물자 인도·인수(관문점, 인천항, 북평항) -쌀 5만석, 천 50만m, 시멘트 10만톤, 의약품 14종 등
	1984.11.15	남북경제회담
	1985.9.20~23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서울·평양 동시 교환 방문 -상봉가족: 65가족 92명
	1986.9.20	제1차 글리온 회의(스위스, 글리온)
	1988.7.7.	「민족자존과 통일변영에 관한 특별선언」 발표
	1988.10.4.	「7·7 특별선언」 경제분야 후속조치 발표 -대북교역 허용 등 대북경제 개방조치
	1989.3.31	통일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설치
	1989.6.12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제정
	1989.7.29.~8.12	기본지침 제정이후 최초 민간차원의 방북 -재일 대한기독교회 이대경 목사
1990	7.10~13	제1차 기독교자 동경회의(일본, 도쿄)
	8.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정
	8.4	최초 방북 불허 조치 -신창균 범민련 부의장 등 12명, 범민족대회(8.6)
	9.4~7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서울) -북한 연형묵 총리 등 90명 남한 방문
	10.9~13	남북통일축구대회(평양, 5.1 경기장) *2:1 북측 승리 -정동성 체육부장관 등 76명 체육분야 최고 방북

1990	10.10~14	뉴욕남북영화제 개최(미국 뉴욕)
	10.14~24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범민족통일음악회 (평양)
	10.21~25	남북통일축구대회(서울) *1:0남측승리
	11.9	정부, 『남북교류협력에관한시행규칙』 (총리령) 공포
	11.14	북한 『문예총』 대변인, 남한 『예총』의 문화예술교류 창구단일화제의 거부 성명
	12.8~13	평양민족음악단, '90송년통일전통음악회 참가(서울)
1991	2.12	제4차 남북체육회담 -제41회세계 탁구선수권대회 및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 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합의
	3.16	최초의 남북협력사업 승인 및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일본)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3.25~5.9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일본)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여자 단체전 우승)
	5.1~5	환동해국제예술제(일본, 쓰루가)
	5.6~6.28	제6회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포르투갈)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8강 진출)
	5.27~29	남북코리아서화전(중국, 북경)
	7.9~12	제2차 기독교 동경회의
	9.17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10.28~11.4	남북한 불교대표자 연석회의 -LA 관음사, 남북 불교인 최초 접촉 성사
	11.25~29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개최 -북한 여성계 인사의 최초 남한 방문
	12.10~13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서울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1992	5.5~8	남북연락사무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남북사회문화 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 합의
	5.18	「군사」, 「경제 교류·협력」, 「사회문화 교류·협력」 공동 위 구성 및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 개시
	6.16~17	「기계화를 위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남북회의(파리) *한글로마자 표기안 합의
	7.19~25	북한 김달현 부총리 최각규 부총리의 초청으로 서울 방문 -대우자동차, 포항제철 등 산업시찰 -대통령 면담(7.24)
	8.17~18	「통일예술축제」 남북합동공연(러시아, 사할린)
	9.1~6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3차 토론회(평양) -이우정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등 30명, 여성계 인사 최초방문
	10.20~22	제3차 기독교 동경회의
1993	3.19	이인모 노인, 판문점 통해 송환
	4.14~21	대학생 대표 최초 북한주민접촉 승인 -박현규 목사, 조두현 서울대총학생회장 등 6명, 미 버클리대 주최 제2차 한반도 통일문제 심포지엄 참가
	10.24~25	동아시아 경기대회 협의회 제7차 회의 (평양)
	11.7~8	일본전후 처리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평양)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인사 2명 방북
	11.8~10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제2차 산업·지원·환경분야 전문가 회의 (서울)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3명 참가
11.11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발족 -정계·법조계·종교계·언론계 인사 170여명으로 구성	

1994	5.31~6.2	제4차 기독교 동경회의
	6.28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 체결
	9.26~30	남북최초의 사진교류(중국, 연길) -이명복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등 5명, 『뉴코리아나 국제사진전』 개최
	11.8	『남북경제협활성화조치』 발표
	11.24	남북경협 후속조치 발표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국내기업과 경제단체의 북한지역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남북한 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등 3개 지침을 확정 발표
1995	3.28~31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4차 기독교 국제협의회 (일본, 교토) -남북기독교인, 광복절 판문점 공동예배 합이
	6.24	남북한 대북쌀제공 계약서 합의(북경) -대한무역진흥공사, 조선삼천리총회사
	6.26~29	미주평화통일 회년대회(미국, 로스앤젤레스)
	7.19~24	광복50주년 기념 미주대회(미국, 신시네티)
	8.22~28	소망교회 광선회 목사 방북
	10.27~11.2	남북해외 천주교인 뉴욕세미나(미국, 뉴저지)
1996	1.29~2.2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국제 에큐메니칼 협의회(마카오)
	2.26~29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 회의(북경)
	4.29	(주)대우, 북한남포공단에 첫 합영공장 설립 발표
	5.13	LG그룹, 대북임가공 컬러 TV 첫 반입
	6.5~7	제5차 기독교 동경회의
	8.5~7	한국어 언어학자 한·북·중 국제학술대회 개최(장춘)
	8.29	대우, 북한 남포공단에 직원 첫 상주

1997	2.5	개신교 주요 교단, 북한동포후원연합회 결성
	5.6	대한불교조계종, 조선불교도연맹측과 부처님 오신날 불교도 공동발원문 합의
	6.27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정
	10.7~10	남북한 비행정보구역(FIR)통과 항공노선 개설을 위한 남북한 당사자 회의 개최(태국, 방콕) -대구↔평양 항공교통 관제시간 관제통신망 구성·운영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12.10	「통일문화연구소」 북한문화유적답사·조사 협력사업 승인
1998	2.25	김대중 대통령 취임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의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대북3원칙 제시(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적극 추진)
	4.28~5.5	정범진 성균관대 총장 방북 -북한 고려성균관과 학술교류 협의
	5.2~12	리틀엔젤스예술단 평양공연(3회) 방북 -한국문화재단 박보희 이사장 등 66명
	6.5	나진과기대 설립추진 협력사업 승인
	6.16~23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금강산 관광교류사업 협의차 방북(판문점 경유)
	6.22	현대-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간 「금강산관광을 위한 계약서」 체결
	8.11	문규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 등 9명 방북 -북한 주도의 8.15 통일대축전 참가 등으로 물의 야기
	9.1	북한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 SBS에서 최초 방영
	9.7	현대3사(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에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협력사업 승인
	9.9~11	북한영화 「임꺽정」(5부작), KBS에서 방영
	9.13~10.24	김진경 연변과학기술대 총장, 평양 치과병원 설립협의차 방북중 북한체제 진북 협의로 억류
	9.26~10.2	박재규 경남대 총장 방북, 북한 김책공대와 학술교류 협의

1998	10.2	『금강산관광선의 안전운항및해난구조위원회』 구성 -통일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
	10.20~27	김병관 동아일보 회장 방북, 언론교류 협의 및 문화유적 답사, 취재 협의
	10.29	현대-북한 아태평화위 『금강산관광사업에관한합의서』 등 체결
	10.31~11.7	윤이상 통일음악회, 평양 개최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최학래 사무총장 등 14명 방북
	11.10~17	권근술 한겨레신문사 사장, 인도적 대북지원 및 언론교류 협의 방북
	11.12	현대전자사업·한국통신·온세통신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승인
	11.14	『금강산관광에따른환전지침』제정(재정경제부고시)
	11.16	『금강산관광객의북한방문절차에관한특례』고시 제정
	11.17	금강산관광지원 통신망 개설(6회선) -한국~일본IDC~인텔셀~평양~원산~온정~장진
11.18	현대 금강산 관광선 첫 출항	
1999	1.4	김대중 대통령 안보관련 3대방침 발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 남북화해협력 지속 추진,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강화
	1.15	현대3사에 협력사업 변경 승인 -금강산관광사업→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 관광개발사업비 2,500만불 최초 송금
	2.28	금강산 공연장, 휴게시설 완공
	6.20	금강산 관광객 1명, 북한측에 억류
	6.21~8.4	금강산관광 중단
	6.25	억류 금강산 관광객 귀환
	7.30	현대-북한 아태위, 금강산 『관광세칙』 및 신변안전보장 관련 『합의서』 채택
	8.10~14	통일염원남북노동자 추구대회 개최(평양) -이갑용 민주노동 위원장 등 37명 방북
	9.27~10.1	남북통일농구대회 개최(평양) -현대 남녀 농구단 등 79명 방북
	10.23	외국인 16명, 금강산 시범관광 시작
	10.30~11.4	라진로템제약회사 협력사업 협의차 방북('98.9 이후 나진선봉지역 첫번째 방북) -김형식 한민족복지재단 사무총장 등 3명

1999	10.26~27	제5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회의(북경)
	11.9~16	김정배 고려대 총장, 단군문제 관련 학술교류 협의차 방북
	11.15~19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 9명, 2002년 월드컵 북한 참여문제 등 협의차 방북
	11.20	금강산 온천장 개장
2000	3.9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 발표
	3.9	금강산 유람선(풍악호), 부산 다대포항 첫 출항
	4.10	남북정상회담 개최 공동발표(서울, 평양)
	5.24~30	북한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
	5.29~6.11	북한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6.13~15	남북정상회담(평양)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7.28	통일탁구대회 개최(평양)
	7.29~3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8.5~12	언론사 사장단 방북
	8.14	남북연락사무소 업무재개('96.11 이후 업무 중단)
	8.15~18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방문(서울, 평양)
	8.18~24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 서울 공연
	8.29~9.1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9.2	비전향장기수 63명 송환(관문점)
	9.11~14	북한 김용순 특사 방한
	9.15	남북선수단, 시드니 올림픽 개최식 공동입장
	9.18	경의선 철도·도로 복원사업 기공식(임진각)
	9.22~27	조총련 동포(50명) 1차 남측 고향방문
	9.22~28	백두산 관광단(109명) 방북
	9.25~26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제주도)
	9.27~30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제주도)
	10.1	제81회 부산전국체육대회 성화채화(금강산 옥류동 무대 바위)
	10. 2~5	관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한 남북 신문교환 실시
	10. 9~14	우리측 방문단(42명), 노동당창건 55주년행사 참관
	11.11~19	영화인 등 10명 방북
	11.17~22	조총련 동포(119명), 2차 남측 고향방문
	11.30~12.2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방문(서울, 평양)
	12.11~14	민주노총, 남북노동자 통일토론회 개최(금강산)
	쌍12.12~16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12.15~17	금강산 가극단 공연(서울)
12.19~20	남북한 및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관련 국제학술회의(연길)	

2001	2. 1~2	춘향전 방북 공연(평양)
	2.22~24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회의 개최(연길)
	2.26~28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방문(서울, 평양)
	3. 1~6	일제의 조선강점 불법성에 대한 남북공동 자료전시회 개최(평양)
	3.10~14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방북
	3.24	고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 북측 조문단 서울 방문(서해 직항로)
	3.28	조총련계 양규사 선수, 국내프로축구단 입단
	4. 6~11	조총련 동포(80명), 3차 남측 고향방문
2001	4.30~5.2	노동절 남북공동행사 개최(금강산)
	6. 2~5	민족웃 전시회 개최(평양)
	6.5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운영 협력사업(자) 승인
	6.8	현대-아태간 관광대가 조정, 육로관광, 관광특구지정 관련 합의서 체결
	6.14~16 6.15	민족대토론회 개최(금강산)
	6.14~24	남북공동사진전 백두에서 한라까지(평양)
	6.19~22	김운용 대한체육회장 방북(평양)
	6.20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현대-한국관광공사 컨소시엄 구성 합의·발표
	7.17~19	남북농민통일대회 개최(금강산)
	7.21	금강산 현지 투자설명회 개최
	7.31	통일염원 6.15 금강산렐리대회 개최(금강산)
	8.15	국제 금강산 모터사이클 투어링 개최(금강산)
	8.14~23	남북공동사진전 백두에서 한라까지(서울)
	8.15~21	2001민족통일대축전 참가(평양)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김영준. 『통일문화 창조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타개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김학성. 『동·서독 인적 교류 실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_____.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독일의 분야별 실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민주악법 폐지에 관한 의견서』. 서울: 역사비평사, 1989.

이우영. 『북한 정치사회화에서 전통문화의 역할』.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임순희. 『북한의 대중문화: 실태와 변화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조 민. 『제2차 정상회담 대비 남북한 통일방안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1.

조은석 외.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0.

조한범. 「남북한 학술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0.

조한범 외.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0.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서울: 통계청, 1996.

통일원. 「동서독관계발전에 관한 보고 및 문서」. 서울: 통일원, 1992.

_____.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서울: 통일원, 1993.

_____. 「사회문화공동위수첩」. 서울: 남북회담사무국, 1995.

_____. 「10년간의 독일정책: 1969~1979년간 동서독관계발전 중심」. 서울: 통일원, 1992.

_____. 「통일백서 1997」. 서울: 통일원, 1997.

Griffith, W. *The Ostpolitik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ambridge, 1978.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DDR Handbuch*. Köln, 1985.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n Beziehungen, *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icht und Dokumentation*. Bonn, 1973.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Innerdeutsche Beziehungen. 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80~1986: Eine Dokumentation.* Bonn, 1986.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n Beziehungen, *Zehn Jahre Deutschlandpolitik. 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69~1979: Bericht und Dokumentation.* Bonn, 1980.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Das Kulturabkommen.* Bonn, 1990.

Bundesminister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Information,* Nr.12. 1988.6.24.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ed. *Verträge zur deutschen Einheit.* Bonn, 1991.

Egon Bahr. *Sicherheit für und vor Deutschland.* München, 1991.

Elisabeth Noelle-Neumann·Jürgen Wilke eds. *Publizistik und ·Massenkommunikation.* Frankfurt/M., 1989.

Erich Böhme. *Deutsch-deutsche Pressefreiheit.* Hamburg, 1978.

- Ernst Martin. *Zwischenbilanz. Deutschlandpolitik der 80er Jahre*. Stuttgart, 1986.
- Ernst Nolte, *Deutschland und der Kalte Krieg*. München/Zürich, 1974.
- Gerhard Kiersch. *Die jungen Deutschen. Erben von Goethe und Auschwitz*. Opladen, 1986.
- Gernot Gutman·Siegfried Mampel eds. *Wissenschaft und Forschung im geteilten Deutschland*. Berlin, 1988.
- Gesamtdeutsches Institut ed. *Merkblatt 21: Ausfuhr von Kunstwerken, Dokumenten und Antiquitäten ("Kulturgut") aus der DDR*. Bonn, 1989.
- Giesela Helwig ed. *Kirchen und Gesellschaft in beiden deutschen Staaten*. Köln, 1982.
- Helmut Zander. *Zur Rolle der Kirchen in den Friedensbewegungen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Ein Vergleich für die Jahre 1978~1983*. Bonn, 1984.
- Institut für Gesellschaft und Wissenschaft(IGW), *IGW-Report*, Heft 11. 1987.
- Joachim Nawrocki. *Die Beziehungen zwischen den beiden Staaten in Deutschland. Entwicklungen, Möglichkeiten und Grenzen*. Berlin, 1988.

Ludwig A. Rehlinger. *Freikauf: Die Geschäfte der DDR mit politischen Verfolgten 1961~1989*. Berlin, 1991.

Manfred Jäger. *Kultur und Politik in der DDR*. Köln, 1982.

Martin Hülsmann, *Drüben bei uns. Eine Begegnung mit der DDR*. Würzburg, 1986.

Peter Bender. *Die Neue Ostpolitik und ihre Folgen*. Vom Mauerbau bis zur Vereinigung. München, 1995.

Paul-Ludwig Weinacht ed. *Mit offenen Augen in die DDR. Anregungen für Klassenfahrten*. München, 1986.

Press-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Bulletin*. Nr.83/5. Bonn, 1987.9.10.

Werner Weidenfeld·Karl-Rudolf Korte eds. *Handwörter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1.

Willi Knecht. *Wege nach Olympia - Entwicklungen des Sports in Deutschland*. Dortmund, 1980.

Willy Brandt. *Begegnungen und Einsichten. Die Jahre 1960~1975*. Hamburg, 1976.

Wolfgang Seiffert. *Das Ganze Deutschland*. München/ Zürich, 1986.

2. 논문

- 권혁범.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조한혜정·이우영. 『탈분단시대를 열며』. 서울: 삼인, 2000.
- 김성수, “90년대 북한문학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 변화,”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와 문화교류』 (서울: 문화정책개발원, 2001).
- 김일성.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전하여야 한다(1949.10.15).” 『김일성 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리동수. “광복전 대중가요와 민족문화유산.” 『조선문학』.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8.
- 백낙청.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 손기웅. “베를린선언의 의의와 과제.” 통일연구원. 『베를린선언과 남북관계』.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오양열,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문예지의 변화 양상과 전망 - 『조선예술』지에 실린 노래가사를 중심으로,”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와 문화교류』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 이영미, “김연자 바람이 말해주는 것: 2001년 상반기 대중적 공연물 교류의 허와 실,”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와 문화교류』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 이우영.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당대비평』 12. 2000 가을.

이장희. “통독정책으로서 동서독간 문화협정.” 『국제법학회논총』, 33권 2호. 1988.

최정호. 『분단국의 통일과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인의 통합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1.

최척호, “남북영화교류와 북한 영화계 현황”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와 문화교류』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Amin Volze. “Kirchliche Transferleistungen in die DDR.” *Deutschland Archiv*, 1. 1991.

Anthony John Goss. “Die Darstellung des deutsch-deutschen Verhältnisses in der Fernsehberichterstattung beider deutscher Staaten.” *Deutschland-Archiv*, 4. 1980.

Christoph Wild. “Fernseh- und Hörfunknutzung in der DDR im Frühjahr 1990.” *Media Perspektiven*, 9. 1990.

Deutscher Bundesjugendring ed. “Die unbekanntenen Nachbarn - Deutsch-deutscher Jugendaustausch.” *Jugendpolitik*, 7. 1986.

Gisela Helwig. “Jugendaustausch zwischen beiden deutschen Staaten.” *Deutschland-Archiv*, 8. 1984.

Ilse Spittmann. “Die neue Journalistenverordnung - Honecker betreuert Vertragstreue.” *Deutschland-Archiv*, 3. 1972.

Jean Paul Picaper. “Westliche Korrespondenten in der DDR.”
Deutschland-Archiv, 12. 1974.

Jürgen Döschner. “Zehn Jahre bundesdeutsche Korrespondenten
in der DDR. Eine Zwischenbilanz.” *Deutschland-Archiv*,
8. 1984.

Klaus-Eberhard Murawski, “Die Kulturbeziehungen zwischen
der BRD und DDR”, Erika Lieser-Triebnigg ed. *Kultur
im geteilten Deutschland*. Berlin, 1984.

Kurt R. Hesse. “Nutzung und Images des Westfernsehens bei
DDR-Übersiedlern.” *Media Perspektive* 4. 1986.

Manfred Ackermann. “Die Kulturbeziehungen seit Abschluß des
Kulturabkommens.” Maria Händcke-Hoppe. *40 Jahre
innerdeutsche Beziehungen*. Berlin, 1989.

Oskar Anweiler. “Innerdeutsche Beziehungen im Bereich von
Bildung und Erziehung.” *Vergleich von Bildung und
Erziehung BRD/DDR*. 1990.

Ulrich Bunjes, “Normalität stellt sich nur langsam ein. Zur
Entwicklung des deutsch-deutschen Jugendaustausches.”
Außerschulische Bildung. 1989.

3. 기타

강성만.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www.peacekorea.org/
databank/sungman2.html](http://www.peacekorea.org/databank/sungman2.html).

“국가보안법의 법리적 쟁점.” spn.snu.ac.kr/human/국가보안법/법리.html.

『(사회문화분야)남북교류협력 실무안내』. www.unikorea.go.kr/.

이동복. www.dblee2000.or.kr/korean/assembly_k/Q_8.htm.

www.copyright.or.kr/main.htm.

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051999062904400+19990629.

『동아일보』. 1999.8.19.

『로동신문』. 2001.4.13.